



제 5 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5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 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목록은 언론조정·중재 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 및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시) 표기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내 ‘처리내용’ 중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금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조항 :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이하 ‘결정’으로 표기함)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행강제금 조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결정(쌍방 동의)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
- 처리결과 내 ‘이행방법’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에 적시된 피해구제 보도 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제 1 장 : 조정사건 전체 목록

2013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부천○○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신문 : 『[기고] 부천시 ○○재단 대표이사 ‘스스로 물러나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일자 11면) • 인터넷 부천신문 : 『<기고> “부천시○○재단 대표이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부천○○재단측, 특정 대선 후보지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부천신문 2013년 1월 17일자 2면, 인터넷 부천신문 1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2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5회』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8일자 20:50) • iMBC : 『[다시보기]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시중에 판매되는 원액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iMBC 기사삭제,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iMBC 기사삭제]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초상 및 음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2013경기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인천광역시 ○○군 ○○기자실 對 수도권일보, 인터넷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군청출입 사이버기자 행태 비난 빗발』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2년 10월 8일자 15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군청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신청인 단체가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상품권 등 물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수도권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군청 출입기자 기업체 상품권 요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3년 1월 31일자 15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월 30일자)

2013대전조정1~2		(반론·손배청구) 1. (사)충남○○○부모회 ○○지회, 2. 한○○ 對 파워뉴스
조 정 대 상	『“공갈·협박 문자…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대전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전국○○○○○○노동조합 ○○○○지역본부 對 대전일보, 인터넷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 『○○의료원 알고도 은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7면) • 인터넷 대전일보 : 『마취과의사 척추환자 상습시술 조직적 은폐』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구성원이 지역의료원 마취과의사의 해임과정에서 해당의사를 두둔하고,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물리적인 행사에 나서겠다는 식의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대전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노조 ○○○○지역본부 압력 행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2013서울조정3		(정정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고양시 풍동 백마교 밑 가건물 강제철거 ‘눈치보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고양시의원인 신청인이 백마교 밑 불법가건물 철거를 반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전국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고양시 백마교 밑 가건물 강제철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2013서울조정4~5, 62~71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⁴⁾ , 와우넷 ⁽⁵⁾ , bnt뉴스 ⁽⁶²⁾ , 헬스코리아뉴스 ⁽⁶³⁾ , 인터넷 일요시사 ⁽⁶⁴⁾ , Citydaily(시티데일리) ⁽⁶⁵⁾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⁶⁶⁾ , 인터넷 엠티엔(MTN) ⁽⁶⁷⁾ , 뉴스웨이 ⁽⁶⁸⁾ , 인터넷 SBS E ⁽⁶⁹⁾ , 뉴스엔 ⁽⁷⁰⁾ , 데일리그리드 ⁽⁷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한국 : 『○○○○○ 박○○ 교제설 논란 덮고 국내 컴백 집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 와우넷 : (1) 『송○○, 박○○ 폭로 “난 너한테 도대체 뭐였니…아는척도 하지말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 박○○, 11살 연상女 결별 폭로 논란 “이용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조정 대상

- **bnt뉴스** : (1) 『“송○○ 교체논란” 박○○ 출국, 일본서 프로모션 진행 예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송○○, 박○○ 폭로 “난 너한테 도대체 뭐였나…아는척도 하지말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박○○ 측 “송○○과 일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박○○ 공식입장 “송○○과 교체 사실무근, 업무적 관계일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5) 『송○○ 박○○ 반박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에 협박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헬스코리아뉴스** : 『박○○ “송○○ 디자이너과 친분은 있지만 교체는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박○○ 해명 “송○○과 교체? 사실무근”…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Citydaily(시티데일리)** : (1) 『송○○ ○○○○○ 박○○ 연인 선언 아닌 결별폭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박○○ 송○○ 디자이너와 열애 논란에도 일본 프로모션 감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박○○ 해명, 송○○ 글에 ‘사적으로 만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송○○ 페이스북 2차 해명글 두고 네티즌들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1) 『송○○ 폭로 “내가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었나?” 분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박○○ 해명 “송○○과 사적 만남 없었다. 이런 글 황당” 반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박○○ 디자이너 송○○과 관계 전면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송○○ 반박글 “막무가내로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1) 『박○○ 출국, 논란 뒤로 한 채 日 프로모션 일정 소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박○○ 해명, 송○○과 교체사실 사실 아냐, ‘업무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 폭로? ‘난 대체 뭐였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송○○, 박○○ 관련 글 삭제 후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웨이** : 『박○○, 송○○ SNS 글 “한밤의 해프닝” 공식 입장 전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SBS E** : 『박○○ 측, “송○○과는 업무관계일 뿐”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엔** : (1) 『송○○ 박○○ 비밀관계 폭로 “오랜 열애 배신감..이용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2) 『박○○ “송○○과 연인사이 아니었다, 오해있는 듯”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송○○ 심경 “박○○ 관련 추호의 거짓없다…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박○○ 측 “송○○과 교체 100% 사실 아니다” 해명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데일리그리드** :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폭로, “나를 찌질이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6~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 對 전자신문, 이티뉴스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 『SCM(공급망관리) 토종 솔루션 양대산맥...엇갈린 행보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일자 13면) • 이티뉴스 : 『토종 SCM 솔루션 양대 업체 희비 갈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공급망관리(SCM) 솔루션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수주실패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10~1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은수미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은수미 민주당 의원 ‘음주 국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12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새누리 반대하면...” 민주당의원 ‘음주국정’ 발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음주 질의를 벌여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에 최신뉴스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후로는 10일 동안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행 결과	『“은수미 민주당 의원 음주국감 물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1월 23일자 6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3일자)

2013광주조정1~2 (정정·반론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전광일보	
조정 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황당한 전학조치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전학조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행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황당한 전학조치 물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2~13 (정정·손배청구) 1. 김○○, 2. 김△△ 對 KBS-2TV	
조 정 대 상	의뢰인 K 프로그램 『[53회] 위기의 K - 365일 물 새는 집?』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0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이 살고 있는 신청인 2 소유의 집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신청인들과 누수문제로 분쟁 중인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 이행방법 : [기사삭제] KBS미디어의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동영상 전체를 삭제함
2013서울조정14~15 (매체별 손배청구) 장○○ 對 이데일리(신문), 이데일리(인터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데일리(신문) : 『야후의 쓴소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7일자 1면) • 이데일리(인터넷) : 『“韓 소비자 지나치게 까다롭다”...야후 前 임직원 작심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왜곡 편집하여 기사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 5~6 참조)]
2013서울조정16 (정정청구) 1. ○○○○○○주식회사, 2.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고발하고 헐박당안” 농어촌공사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9일자) (2) 『폐기물 업체 단속정보 미리 알린 나주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농업용수를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 회사가 해당 사실을 고발한 한국농어촌공사를 헐박하였고, 관할 시청으로부터 업체단속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2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장하나 對 문화일보 ^(17~18) , 인터넷 문화일보 ^(19~20, 17~18과 병합) , 네이버 ^(21~22) , 다음 ^(23~2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잡은 민주당의 반안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39면) • 인터넷 문화일보·네이버·다음 : 『[사설]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잡은 민주당의 반안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인터넷 문화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2013서울조정25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블랙아웃 사고낸 KBS경인방송, '1년' 재허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경인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 블랙아웃 사고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7 참조)]

2013대구조정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변○○ 對 경북일보, 인터넷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동구청, 서기관 승진인사 관련 '시골'』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2년 12월 26일자 8면, 인터넷 경북일보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구청의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구청 노동조합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두고, 신청인이 “노조가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성하려는 의도” 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북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지역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동구청 승진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3년 1월 18일자 6면, 인터넷 경북일보 1월 17일자)

2013서울조정26~27 (정정·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조 정 대 상	『양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모해위증 '소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3~4 참조)]

2013서울조정28~29 (정정·반론청구) (주)○○교육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1) 『초등학교 학습지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발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2) 『○○교육 “학습지에 친일요소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초등학교 사회 학습지가 일제 강점기 한국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 사회가 발전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국·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조정대상기사 (1), (2)를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30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할인 가능한데 굳이 정가구입 ‘수상한 포돌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8면)
신청인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순찰차에 태블릿PC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할인가 대신 정가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므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 순찰차 태블릿 PC예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8면)
2013서울조정31~32 (정정·손배청구) 조○○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시청자 제보] 뒷집 스토커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여자』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14일자 08: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실재하지 않는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고,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손해배상 375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보도 및 신청인 관련 촬영분을 ‘재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자료화면’ 등 그 방식을 불문하고 사용하지 않음
이 행 결 과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위층 스토커 때문에 집 밖에 못 나오는 여자’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5일자 08:30)
2013서울조정33 (정정청구) 정동영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동영, 트위터에 ‘노인 폼하 발언’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15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난 제17대 총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 폼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일간지 보도내용을 발체 인용한 것을 직접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4~35 (매체별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박근혜 시대 - 인사가 만사다 ② 국정원장』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2월 24일자 A1~3면, 동아닷컴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붕괴 임박론’ 및 ‘2011년 5월 김정은 방중(訪中)’ 등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2면) • 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 본보 2012년 12월 24일자 A1·2·3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p>2013서울조정36, 39~40</p>	<p>(매체별 손해청구) 이○○ 對 인터넷 경향신문⁽³⁶⁾, 네이버⁽³⁹⁾, 다음⁽⁴⁰⁾</p>
<p>조 정 대 상</p>	<p>『○○계약, 내부제보자 입 막으려 이런 짓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p>
<p>신청인주장</p>	<p>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p>2013서울조정37~38</p>	<p>(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 지리산○○○○○○○○보존연합 對 오마이뉴스</p>
<p>조 정 대 상</p>	<p>『인○○의 지리산 별장, 계속 유지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p>
<p>신청인주장</p>	<p>신청인 단체가 관리중인 유적지가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 모 씨의 개인별장이고, 문화재 보존 가치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p>이 행 결 과</p>	<p>『[정정 및 반론보도] ‘인○○의 지리산 별장...’ 보도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p>
<p>2013서울조정41~43, 828</p>	<p>(매체별 손해청구) 이○○ 對 쿠키뉴스⁽⁴¹⁾, 네이버⁽⁴²⁾, 다음⁽⁴³⁾, 디지털 보사⁽⁸²⁸⁾</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 리베이트 제약회사 내부제보자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 네이버·다음 : 『“끝까지 고소, 대한민국서 살 수 없게 하겠다”... ‘리베이트 ○○계약’ 내부제보자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2일자) • 디지털 보사 : 『○○ 리베이트 공판 또 연기... 진실 공방 본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p>신청인주장</p>	<p>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디지털 보사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강원조정1 (손배청구) 광○○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생방송 투데이 강원 프로그램 『투데이 시사』 연말 음주사고 천태만상』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18:30)
신청인주장	연말 음주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인 신청인이 피해자로 작성한 진술서를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삭제] G1 강원민방-TV 홈페이지 내 조정대상보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함
2013서울조정44~46 (매체별 정정청구) (주)○○○○○○서비스 對 컨슈머타임스 ⁽⁴⁴⁾ , 네이버 ⁽⁴⁵⁾ , 다음 ⁽⁴⁶⁾	
조 정 대 상	『○○디스크 · ○○박스는 ‘야동’ 유통채널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비스하는 웹 하드가 유해정보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란물 유통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47 (손배청구) 흥○○ 외 2인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조○○ 죽었으니 나도…” 암 투병 50대 주부 자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이 자살한 사건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모방자살인 것처럼 보도하고 유가족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써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3서울조정48~49 (매체별 손배청구) 빗○○○ ○○○○ 對 디원TV, 서울신문STV	
조 정 대 상	(1)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1화 - 고독한 추격』 제하의 보도 (디원TV 2012년 12월 24일자 10:20, 서울신문STV 12월) (2)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9화』 제하의 보도 (디원TV 2012년 12월 24일자 10:20, 서울신문STV 12월)
신청인주장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디원TV · 서울신문STV : 향후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화, 9화)가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함, CJ E&M(주)은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화, 9화)가 향후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50 (반론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내쫓는 4대강사업 막읍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흑두루미 도래지인 해평습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강정생태하천이 대학교수인 신청인의 자문에 따라 조성된 곳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8 참조)]

2013서울조정5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범죄예방등 민생치안 매진” 취지 무색?』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노래방 업주인 동문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5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시대일보	
조 정 대 상	『경찰관은 팔이 밖으로 굽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노래방 업주인 동문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찰관은 팔이 밖으로 굽어야 한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2013서울조정52~53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1. 이○○, 2. 김○○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주말뉴스 7 프로그램 『남녀 3명 승용차서 숨진채 발견...동반자살 추정』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2일자 19:00) • 인터넷 TV조선 : 『남녀 3명 승용차서 숨진채 발견...동반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집단지사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유가족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54 (정정청구) ○○○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p>(1) 『광주 미혼모보호시설, 미혼모 상대로 진술서 작성 요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1일자)</p> <p>(2) 『광주 ○구, 프로그램 불참한 미혼모 ‘체벌’ 경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p>
신청인주장	미혼모보호시설인 신청인 기관이 입소자에게 입양과 양육에 관련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프로그램에 불참한 입소자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p>2013서울조정55, 82~85, 91~118, 294, 297~298</p>	<p>(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스포츠서울닷컴⁽⁵⁵⁾, 인터넷 채널A⁽⁸²⁾, 인터넷 경향신문⁽⁸³⁾, 노컷뉴스⁽⁸⁴⁾, 뉴스1 코리아⁽⁸⁵⁾, 뉴스토마토⁽⁹¹⁾, 뉴스핌⁽⁹²⁾, 뉴시스⁽⁹³⁾, 매경닷컴⁽⁹⁴⁾, e머니투데이⁽⁹⁵⁾, 메디컬투데이⁽⁹⁶⁾, 인터넷 서울경제⁽⁹⁷⁾, 아시아경제닷컴⁽⁹⁸⁾, 아이뉴스24(inews24)⁽⁹⁹⁾,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¹⁰⁰⁾, 이데일리(인터넷)⁽¹⁰¹⁾, 연합뉴스⁽¹⁰²⁾, 인터넷 일간스포츠⁽¹⁰³⁾, 조선비즈닷컴⁽¹⁰⁴⁾, 조세일보⁽¹⁰⁵⁾, 인터넷 파이낸셜뉴스⁽¹⁰⁶⁾, 뷰티한국⁽¹⁰⁷⁾, EBN⁽¹⁰⁸⁾, KBSi⁽¹⁰⁹⁾, 인터넷 K-TV⁽¹¹⁰⁾, 인터넷 MBN⁽¹¹¹⁾, 인터넷 SBS CNBC⁽¹¹²⁾, 인터넷 이지경제⁽¹¹³⁾, 투데이코리아⁽¹¹⁴⁾, 인터넷 일간투데이⁽¹¹⁵⁾, e중앙뉴스⁽¹¹⁶⁾,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¹¹⁷⁾, 인터넷 네트워크신문⁽¹¹⁸⁾, SBSi⁽¹¹⁹⁾, 상조매거진⁽²⁹⁷⁾, 인터넷 한국일보⁽²⁹⁸⁾</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서울닷컴 : 『“유족 울린’ ○○○○○○○, 고객 돈 부실 관리 공정위 철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채널A : 『[뉴스A] 내가 든 상조업체도 흑시? 가입 10만 명 ‘불안 불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고객 돌려줄 장례비 적립도 않고… 몸집만 불린 상조업체』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노컷뉴스 : 『선수금 못 채운 채 무작정 몸집이 큰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1 코리아 :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회사 3개업체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토마토 : 『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 ‘방치’..상조회사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핌 : 『○○○○○○○○,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시스 : (1) 『공정위, ○○○○○○○ 등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공정위, 선수금 보전한 것처럼 속인 상조회사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매경닷컴 : 『공정위, 고객 돈 부실 관리·거짓 광고 상조업체…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e머니투데이 :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메디컬투데이 :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 3개 상조업체 고발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1) 『선수금 보전 안한 상조업체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공정위, ‘고객돈 관리부실’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선수금 보전도 안하고 회원 넘겨버려?”…공정위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아이뉴스24(inews24) : 『“회원인수 과정서 불법”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이데일리(인터넷) : 『고객 선수금 제대로 인수하지 않은 상조업체, 공정위에 ‘철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연합뉴스 :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일간스포츠 : 『공정위, 고객 선수금 속인 상조회사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조선비즈닷컴 : 『선수금 속이고 피해보험계약 건너뛴 상조업체 3개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조세일보 : 『불안한 상조업체, 선수금 속이고 미등록 불법영업』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공정위, ‘고객 돈 부실관리’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뷰티한국 :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 한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N : 『공정위, ○○○○○○○○ 등 3곳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KBSi : (1) 『‘선수금 예치’ 위반, 상조업체 첫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선수금 예치’ 위반, 상조업체 3곳 첫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 인터넷 K-TV : 『‘고객 돈 부실 관리’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 인터넷 MBN : 『부실 상조 ‘깜짝 마’...예치 은행 권리 강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SBS CNBC : (1)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이지경제 :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투데이코리아 : 『공정위, 선수금 관련 서류조작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일간투데이 : 『공정위, “상조업체 인수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e중앙뉴스 : 『상조업체 고객 장례비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상조업체 제재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1일자) •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 『공정위, 장례비 누락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SBSi : 『상조업체 고객 장례비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상조매거진 : 『공정위, 선수금 속여 예치한 ○○○○○○○○ 등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선수금 자료 속인 상조업체 3곳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p>신청인주장</p>	<p>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서울닷컴 · 인터넷 경향신문 · 뉴스1 코리아 · 뉴스토마토 · 뉴시스 · 매경닷컴 · 메디컬투데이 · 인터넷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닷컴 · 아이뉴스24(inews24)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이데일리(인터넷)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조세일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뷰티한국 · EBN · KBSi · 인터넷 K-TV · 인터넷 MBN · 인터넷 SBS CNBC · 인터넷 이지경제 · 투데이코리아 · 인터넷 일간투데이 · e중앙뉴스 ·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 SBSi ·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채널A : 조정불성립결정 • 노컷뉴스 · 뉴스핌 · 연합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e머니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조선비즈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27 참조)] • 상조매거진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뉴스핌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 섹션 산업정책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e머니투데이 : [후속보도] 홈페이지 정책분석 섹션 경제정책뉴스 목록 상단에 후속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연합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주요뉴스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 뉴스핌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e머니투데이 : 『‘○○○○○○○○’ 관련 추가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연합뉴스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상조매거진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2013서울조정56, 222~225, 250, 260~262, 285, 435	(매체별 손배청구) 박○○ 對 뉴스토마토 ⁽⁵⁶⁾ , 조선닷컴 ⁽²²²⁾ , 세계닷컴 ⁽²²³⁾ , 아시아경제닷컴 ⁽²²⁴⁾ , 인터넷 주간현대 ⁽²²⁵⁾ , MK뉴스 ⁽²⁵⁰⁾ , 뉴시스 ⁽²⁶⁰⁾ , 노컷뉴스 ⁽²⁶¹⁾ , 동아닷컴 ⁽²⁶²⁾ , 온라인 중앙일보 ⁽²⁸⁵⁾ , 뉴스엔 ⁽⁴³⁵⁾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토마토 : 『파혼당하자 협박..‘화성인 바이러스’ 출연 여성CEO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조선닷컴 : 『파혼에 앙심’...협박 일삼은 30女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세계닷컴 : 『“사과해라” 30대 여성 사업가, 파혼 남성 협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피눈물 흘리길 바라” 협박한 여사장의 최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 인터넷 주간현대 : 『파혼남성에 ‘피눈물 흘리길 바란다’ 협박 이메일 보낸 4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 MK뉴스 : 『“결혼하자더니...” 여성CEO 파혼男 협박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뉴시스 : 『파혼에 앙심’...협박 일삼은 30대女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노컷뉴스 : 『파혼 당하자 협박’ 여성 사업가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동아닷컴 :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엔 : 『30대女, 의사와 파혼하자 “피눈물 흘리기 바란다” 섬뜩 이메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갑작스런 파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차량 등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토마토 : 조정불성립결정 • 조선닷컴 · 세계닷컴 · 아시아경제닷컴 · 인터넷 주간현대 · MK뉴스 · 뉴시스 · 노컷뉴스 · 동아닷컴 · 온라인 중앙일보 · 뉴스엔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57~60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이○○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정대상	『○○ ○○문화수련원 국고 횡령 규모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월 16일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문화수련원 원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61 (손배청구) 최○○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152회 - ‘변태사진사’ 그는 왜, 여중생결에 서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8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발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몰래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경기조정6~7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OBS경인TV,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OBS경인TV : (1) 『박○○ 해명 “연인사이? 업무적인 관계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에 “다른 사람 맘에 두고 날 만났나”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 측 해명에 “난 추호의 거짓도 없이 말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과 비밀연애 주장한 송○○, 그녀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과 진실공방 휩싸인 박○○, 그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 디자이너 송○○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독특한 연예뉴스] 박○○, 11살 연상녀 송○○과의 염문설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송○○ 박○○ “사졌다” vs “업무적 관계일 뿐이다”... 과연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기조정8~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오○○ 외 21인 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조용한 마을에 승마장 조성 안 될 말”』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월 16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남양주시 승마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해당마을 주민인 신청인들이 승마장 공사 업체에 도로 지분을 분배해 달라는 등 터무니 없는 사항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남양주시 ○○읍 ○○리 승마장 조성’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2월 13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3일자)

2013대구조정5~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정대상	『○○ ○○문화수련원 국고 횡령 규모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월 16일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문화수련원 원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72~7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이데일리(인터넷)	
조정대상	『투윤, 휴대폰 번호 공개.. 매시간 수백 통화 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돌 스타 투윤의 전화번호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후속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010-○○○○-○○○○)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함 [기사수정] 조정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투윤 중 지윤의 전화번호는 <010-○○○○-○○○○>임을 재공지함으로써 잘못된 전화번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후속기사를 게시함
이행결과	『투윤, 휴대폰 번호 꼭 확인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3일자)
2013전북조정1~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기독교○○○○교회○○○○교회 對 전민일보, 인터넷 전민일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민일보 : 『신축현장 인근 ‘주민 집 무너질 판』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자 8면) • 인터넷 전민일보 : 『삼학동 주택가 신축현장 인근 주민 집 무너질 판』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가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 집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74~7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전국○○○○노동조합 ○○○○분과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정대상	『아찔한 짝퉁 덤프트럭...8t 청소차 불법개조해 27t 신고 질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A14면, 동아닷컴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청소용 차량 차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과적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손배청구 : 각 취하 ※ 이행방법 : [동아닷컴에 정정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섹션 뉴스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경기조정10~1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구리시, 왕숙천 체육공원 위탁계약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1월 25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구리시가 왕숙천 체육공원 경비와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78~8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1:00) • SBSi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SBS-TV에 정정보도, 신청인 1에게 각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연대하여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SBS-TV 2013년 2월 19일자 11:20)

2013경기조정14 (반론청구) 이○○ 對 성남투데이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남시의회 이○○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2) 『“성남 여성장애인 성추행 이○○ 시의원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3) 『여성장애인 성추행 ‘이○○ 의원’ 윤리위 제소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성 장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유튜브에 게시한 “이○○(새)시의원의 장애인 성추행 관련 규탄 시위” 제목의 동영상 삭제 완료함 ※ 이행방법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동영상을 삭제함
이 행 결 과	『“성남시의회 이○○ 의원”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2013서울조정86~8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1) 『국회에서 대선 개표방식 시연회 열어줬더니...“시연회 자체가 조작” 생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1면), (2) 『국회서 개표 시연해줘도... “이건 쇼”라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5면) • 조선닷컴 : 『선관위가 개표 보여줘도... “이건 쇼”라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선 전자개표 시연회가 조작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행사장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조선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 결과	• 조선일보 : 『국회 대선 개표방식 시연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2면)
2013서울조정90 (정정청구) 박○○ 對 중앙일보	
조정 대상	『전(박○○) 현직(진익철) 구청장 갈등 “서초구는 만신창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1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서초구청장 재임시절 5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현 구청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인터뷰 기사 보도 약속, 조건부 후속보도 약속) ※ 이행방법 : [조건부 후속보도 약속]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될 경우 무혐의 사실을 충실하게 지면에 반영하기로 함
2013대구조정9~10 (정정·손배청구) 진○○ 외 6인 對 매일신문	
조정 대상	『안동 ○○의용소방대, 공공 유용 ‘말뚝’』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의용소방대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결과	『[알려왔습니다] ‘안동 ○○소방대 공공 유용’ 경비 자체 회칙 근거 지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6면)
2013광주조정3~4 (정정·손배청구) 양○○ 對 연합뉴스	
조정 대상	『여수경찰 총체적 기강 난맥 노출…‘조직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전직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사행성 오락 게임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5~8 (매체별 정정청구) 1. 천안동남경찰서, 2. 정 ○ 對 꼴통뉴스⁽⁵⁾, 뉴스 소통⁽⁶⁾, 천안매일-천안투데이⁽⁷⁾, 충남도민일보⁽⁸⁾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꼴통뉴스 : (1)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퇴거 확인서 작성?” 이주 종용?』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2)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 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9일자) • 뉴스 소통 : (1) 『[단독]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퇴거 확인서 작성?” 이주 종용?』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2) 『[단독]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9일자)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매일-천안투데이 : (1)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이주중용 했다.”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2)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전쟁터 ???』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 충남도민일보 :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p>신청인주장</p>	<p>천안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이 해당 주민들에게 퇴거확인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꼴통뉴스·뉴스 소통·천안매일-천안투데이·충남도민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꼴통뉴스·뉴스 소통·천안매일-천안투데이·충남도민일보 : 추후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꼴통뉴스·뉴스 소통·천안매일-천안투데이·충남도민일보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꼴통뉴스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 뉴스 소통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 천안매일-천안투데이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 충남도민일보 : 『[천안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19~126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SBS-TV^(119~120), SBSi^(121~122), 네이버^(123~124), 네이트^(125~126)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20:00) • SBSi·네이버·네이트 : 『[단독]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p>신청인주장</p>	<p>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SBSi에 추후보도, 손해배상 7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SBSi·네이버·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SBS-TV : 추후보도문을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에도 전송하여 노출되도록 함 ※ 이행방법 • SBS-TV : [SBSi에 추후보도] SBSi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박스처리하여 추후 보도문을 별도로 게재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추후보도문]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관련』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20:00) • SBSi·네이버·네이트 : 『[추후보도] 경찰이 폭력배 동원 돈 갈취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27~134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연합뉴스 ^(127~128) , 네이버 ^(129~130) , 다음 ^(131~132) , 네이트 ^(133~134)	
조정대상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네이버·다음·네이트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9~11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연합뉴스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 연합뉴스 : 『‘지인 돈 뜯은 경찰’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35~142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YTN ^(135~136) , 인터넷 YTN ^(137~138, 135~136과 병합) , 네이버 ^(139~140) , 다음 ^(141~142)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YTN24 프로그램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00:00) • 인터넷 YTN·네이버·다음 :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인터넷 YTN :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네이버·다음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2013서울중재12~13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YTN·인터넷 YTN : [인터넷 YTN에 추후보도] YTN이 <YTN24>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한 후 2일 이내에 이행한 보도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YTN24 프로그램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9일자 00:00) • 인터넷 YTN : 『‘추후 보도문’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43~150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뉴시스 ^(143~144) , 네이버 ^(145~146) , 다음 ^(147~148) , 네이트 ^(149~150)	
조정대상	『‘조폭 동원하고… 뺑소니 무마하고…’ 돈 뜯어낸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계약관계 포털사에 추후보도문 전송,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네이버·다음·네이트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4~16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 뉴시스 : 『‘돈 뜯은 경찰’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51~156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한국일보 ^(151~152) , 네이버 ^(153~154) , 다음 ^(155~156)	
조정대상	『뺑소니 사고 피의자에게 돈 뜯은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57~164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MBN ^(157~158) , 네이버 ^(159~160) , 네이트 ^(161~162) , 동아닷컴 ^(163~164)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경찰 진화 나서』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네이버 2011년 5월 30일자, 네이트 5월 31일자) • 동아닷컴 :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2013서울중재21~23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동아닷컴 : ▷ 추후청구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기사삭제(2013서울중재24 참조)]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165~168 (매체별 손해청구) 홍○○ 對 SBS-TV ⁽¹⁶⁵⁾ , SBS ^(166, 165와 병합) , 네이버 ⁽¹⁶⁷⁾ , 다음 ⁽¹⁶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스페셜 프로그램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7일자 23:05) • SBSi : 『[다시보기] SBS 스페셜 -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 네이버·다음 :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학교 내 따돌림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SBSi : 조정성립 (내용 : SBSi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기타 합의사항 • SBS-TV·SBSi : SBSi의 조정대상기가 매개된 포털에도 기사를 삭제하도록 조치함 ※ 이행방법 • SBS-TV·SBSi : [SBSi 기사삭제] SBSi 홈페이지 내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삭제하고 관련 동영상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더 이상 방송되지 않도록 함
2013대구조정11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상주 올리는 '부실 상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9 (정정청구) ○○어린이집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단독] 어린이집 결핵 집단 감염』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0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어린이집 소속 교사와 원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내용 : SBS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에 반론보도] SBS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SBSi : 『「어린이집 결핵 집단감염」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7일자)
2013경기조정15~16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전국매일,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전국매일 : 『상조업체 고객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YTN : 『 '회원 인수 과정서 위법' 상조업체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70~171 (정정·손배청구) 현○○對 월간조선	
조 정 대 상	『[뉴스추적] 朴元淳 서울시장, 북촌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호 164~171면)
신청인주장	박원순 시장의 지인인 신청인이 한옥게스트하우스 관련,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朴元淳 서울시장, 북촌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호 399면)

2013경남조정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 주식회사對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조 정 대 상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3년 1월 23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인 절삭유 등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3년 2월 22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72 (정정청구) 부산영도경찰서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조 정 대 상	『경찰, ○○중 ○○조선소 농성자 생필품 반입까지 원천봉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모 중공업 회사의 조선소 농성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필품 등의 반입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경찰, ○○중 ○○조선소 원천봉쇄”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73~174 (정정·손배 청구) 윤○○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스몰캡돋보기] 증시에 진출한 S라인의 대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얻었던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되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7~18		(정정 · 손해 청구) 주식회사 ○○기업 對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조정대상	『설비 납품비리...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전력설비 납품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해 로비를 벌였고,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요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의 기사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후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함	
이행결과	『K사 설비 납품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75		(정정청구) (주)○○○○○○○○○ 對 KBS-2TV
조정대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골목이 아프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0일자 23:20)	
신청인주장	신청인 가맹점이 본사의 목인 아래 계열사 영업점간 거리제한을 어기고 동일 가맹점 인근에 출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골목이 아프다」 관련, ○○○○ ○○○ 측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0일자 23:05)	
2013서울조정176~187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1. 고○○, 2. 최○○ 對 미디어오늘 ^(176~178) , 인터넷 미디어오늘 ^(179~181, 176~178과 병합) , 네이버 ^(182~184) , 다음 ^(185~187)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시청 기자실서 '대낮 폭행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다음 : 『'대낮 폭행신고'... ○○○시청 기자실에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들이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 등을 하여 기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 ▷ 정정 · 반론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 네이버 · 다음 : ▷ 정정 · 반론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2013서울중재17~20 참조)] ▷ 손해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 2013년 2월 20일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송고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기사를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특정 내용을 삭제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시청 기자실 폭행 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3년 2월 2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88~189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국무예신문	
조 정 대 상	『회장의 ○○태권도 ‘명품화’ 방침에 전무이사가 걸림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지역 태권도협회의 전무이사인 신청인이 지역선출 대의원을 요직에 배당하고, 기술심의 위원회 등 주요자리에 신청인의 측근들이 배치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서울조정190 (반론청구) ○○○건설(주)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소송 선고 앞두고 용인시 긴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른 건설회사가 제기한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용인 ○○지구 소송 왜 이렇게 많나했더니』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일자)

2013서울조정191~192 (정정·손배청구) ○○○코리아(주)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캔에 소변보며 23시간 근무...그런데 사장은 수억원 슬쩍?”』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대학 교내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대학 측과 맺은 표준 계약서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대 주차관리 위탁 업체 부당이득 취득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2013충북조정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강○○ 對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 공무원, 미화원 규정 위반 모르쇠』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3년 2월 1일자 7면, 인터넷 충청매일 1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환경미화원인 신청인이 규정을 위반한 채 청소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93~20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 김○○ 對 주간한국 ^(193~194, 197~198) , 인터넷 주간한국 ^(195~196, 199~200)
조정대상	『김○○ 회장, 가짜 국가유공자?』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3년 2월 4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인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고 신청인이 상이군경회 정관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치 활동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서신 발송)
2013서울조정201~20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뉴스투데이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시민일보 인터넷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목포시 13개 장애인 단체 “목포지역신문 왜곡보도 규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2) 『목포시의회 서○○ 의원 “왜곡보도...언론을 빙자한 폭력행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3) 『목포시의회 동료의식 상실한 ‘냉혈 집단’ 비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1일자) (4) 『목포시 ○○○○장애인연대 “악의적인 목포주간신문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6일자) • 시민일보 인터넷 : 『목포시의회, 장애인의원 활동보조금 놓고 시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목포투데이를 발행하는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예술전시회 사업이 자체자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시행됐고 특혜 시비와 실효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시민일보 인터넷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1), (2)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 시민일보 인터넷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뉴스섹션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목포투데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p>2013서울조정205~208, 211~214</p>	<p>(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윤○○, 2. 윤△△ 對 인터넷 엠티엔(MTN)^{(205~206, 207~208)(병합)}, 인터넷 한국일보^{(211~212, 213~214)(병합)}</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TN : 『[단독]푸틴 둘째딸 한국인과 크레타섬에서 약혼식』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푸틴 딸, 그리스에서 한국인 남친과... 깜짝』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1의 아들인 신청인2가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약혼식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T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고, 기사삭제,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MTN·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조정대상 기사가 게재된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에도 요청하여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신청인 2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 사이의 결혼을 신청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함 ※ 이행방법 • 인터넷 MTN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인터넷 한국일보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TN : 『‘푸틴 둘째딸 한국인과 크레타섬에서 약혼식’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푸틴 딸, 그리스에서 한국인 남친과...깜짝’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p>2013서울조정209~210 (정정·손배청구) 윤○○ 對 이데일리(인터넷)</p>	
<p>조정 대상</p>	<p>『[특징주] 한러 가스관 사업 기대 고조..관련株 ‘강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p>
<p>신청인주장</p>	<p>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약혼식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조정대상 기사가 게재된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에도 요청하여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신청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 사이의 결혼을 신청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함</p> <p>※ 이행방법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p>이행 결과</p>	<p>『「한러 가스관 사업 기대 고조..관련株 ‘강세’」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p>

2013경기조정19~22 (정정·손배청구) (병합) 부천시 ○○○ ○○봉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신문 : (1) 『“회원 명부조작 지원금 받아냈다”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1면), (2) 『제보자 A씨 “공무원들 준다며 27만원 상당 선물 구입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3면) • 인터넷 부천신문: (1) 『부천시 ○○○ ○○ 봉사단 ‘轉入佳境’-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2) 『부천시 ○○○ ○○ 봉사단 ‘轉入佳境’-②』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부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급조된 단체이며, 봉사활동을 빌미로 돈벌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15~216 (정정·손배청구) 극단 ○○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박근혜 취임 앞 ‘박정희 미화’ 공연 공립극장 대관에 연극인들 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극단의 공연작품에 대해 서울연극협회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문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박근혜 취임 앞 ‘박정희 미화’ 공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서울조정217~22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강서양천신문,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조 정 대 상	『[기자 수첩] 콧대 높은 양천시설공단』 제하의 기사 (강서양천신문 2013년 1월 14일자 3면,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 이사장이 예약을 안했다는 이유로 지역인사의 면담신청을 문전박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치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제목은 [] 안에 표시하여 1개월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콧대 높은 양천시설공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강서양천신문 2013년 3월 11일자 2면,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3월 4일자)

2013충북조정5 (정정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담임교사인 신청인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013서울조정221 (손배청구) 방○○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여자 화장실 몰래 훔쳐보다 걸리면 무슨 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내 여성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다 붙잡힌 남성에 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이 기사의 게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함과 더불어 조정대상기사가 매개된 포털 사에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함
2013서울조정226~2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 프로그램 『7회 - 대장 건강을 다룬 ‘변비 vs 장 트러블’편』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5일자 23:50) • 인터넷 TV조선 : 『[다시보기] 7회 - 대장 건강을 다룬 ‘변비 vs 장 트러블’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시중에 행해지는 커피관장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받고 의료기기로 정식 등록된 신청인 회사의 제품 이미지를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반론보도]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표시하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인터넷 TV조선 홈페이지의 <홍혜걸의 닥터콘서트> 다시보기코너에 게시된 해당VOD 말미에 “본 방송 중 판넬자료로 사용된 ○○○○제품은 장내 가스 제거 제품으로, 커피관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삽입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228~231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한국일보 ⁽²²⁸⁾ , 인터넷 한국일보 ^(229, 228과 병합) , 네이버 ⁽²³⁰⁾ , 다음 ⁽²³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 주가조작' 김○○ 前대사 구속 방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1면) • 인터넷 한국일보·네이버·다음 : 『○○○ 주가조작' 김○○ 전 대사 구속 방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한 신청인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발표 직전에 친인척 명의로 회사주식을 사들여 수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25~26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한국일보·인터넷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인터넷 포털에서도 이 기사를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한국일보·인터넷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또한 최초 게재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10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232~233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한○○ 對 MBN, 인터넷 MBN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MBN뉴스8 프로그램 『신입생만 카드 안 돼』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3일자 20:00) • 인터넷 MBN : 『꿈수 부리는 대학 “신입생은 카드 안 받아요”』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거부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인의 발언을 동의 없이 녹음·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p>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MBN 기사수정, 부제소)</p> <p>※ 이행방법 : [기사수정] 인터넷 MBN의 조정대상기사 내 동영상상 삭제함과 더불어 MBN의 조정대상보도 동영상상 매개된 포털 사에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함</p>
2013경기조정23 (정정청구) 남양주시부정부패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對 증부일보	
조정 대상	『“부정부패 특위 조사 못받아” 남양주시·의회, 갈등 심화』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4일자 6면)
신청인주장	남양주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계획서에서 특정한 사안이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처리 결과	『“남양주시 부정부패 특위 조사계획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7면)

2013경기조정24~2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남○○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학생·교사 참가 유럽연수 “시의회가 거길 왜 따라가?”』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3년 1월 24일자 5면, 인터넷 중부일보 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남양주시의회 시의원인 신청인이 학생·교사 참가 유럽 연수에 참가한 것은 외유성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34~235 (매체별 정정청구) 박○○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주민회사 만들자더니.. 온 마을 ‘발각’』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5일자 20:00) • SBS-i : 『“회사 차리자” 공군 대령 한마디에 마을 ‘발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을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건설회사의 경영 부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신청인만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SBSi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반론보도] <모닝와이드 1부>(06:30)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2단 자막으로 게시함 • SBSi :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시를 완료하고,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토요일 특집 모닝와이드 (1부) 프로그램 『<주민회사 만들자더니.. 온 마을 ‘발각’>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9일자 06:00) • SBSi : 『<주민회사 만들자더니.. 온 마을 ‘발각’>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9일자)

2013서울조정236~237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투데이 (1부) 프로그램 『명절 노린 ‘위조지폐 주의보’...진짜-가짜 감별법은?』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9일자 06:30) • iMBC : 『[다시보기] 명절 노린 ‘위조지폐 주의보’...진짜-가짜 감별법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명절 현금거래가 많아지면서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도하면서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iMBC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iMBC 기사삭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중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238~239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교통환경신문	
조 정 대 상	(1) 『석연치 않은 ○○개별협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2) 『○○개별협회 이○○, 후보 자격 있는가? 없는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모 운송사업협회 제4대 이사장인 신청인의 제5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교통환경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교통환경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처 리 결 과	『○○개별○○운송사업협회 이○○ 전 이사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교통환경신문 2013년 3월 7일자, 교통환경신문 3월 11일자 5면)
2013서울조정240~24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정○○ 對 JTBC,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프로그램 『40회 - ‘기적인가? 사이비인가? 예수님을 보는 아이들’』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9일자 21:55) • 인터넷 JTBC : 『[다시보기] 40회 - ‘기적인가? 사이비인가? 예수님을 보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제보자의 아이를 감금하고 가족을 버리라고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인터넷 JTBC : 신청인이 조정대상 방송과 관련해 제기한 일체의 민원을 모두 취하함 ※ 이행방법 • JTBC : [기사삭제]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프로그램 중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다시보기’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함 • 인터넷 JTBC : [기사삭제]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의 동영상에 ‘다시보기’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함
2013서울조정244~2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정○○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9회] 제로맨이 간다 - 대한민국 진짜 온천은 없다?』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7일자 20:50) • iMBC : 『[다시보기] 불만제로 UP 9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온천이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쓰는 불법 온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9~10 (매체별 정정청구) 농림수산물부 對 대전KBS-1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농림부가 대기업 지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8일자 21:00) KBS미디어 : 『[뉴스9](속보)농림부의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신청인주장	농림수산물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했고, 선정된 업체에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KBS-1TV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KBS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KBS미디어 : [정정 및 반론보도] 대전KBS-1TV의 조정대상보도를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서 삭제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대전KBS-1TV의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및 다시보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5일자 21:00) KBS미디어 : 『[뉴스9]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대전조정11~12 (정정·손배청구) 서○○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대학 ‘학점분쟁’ 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9일자 1면)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로 폐강위기에 처한 교수의 수업을 들으라고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면)
2013서울조정248~249 (정정·손배청구) ○○정보(주) 對 소비자고발신문	
조 정 대 상	『“○○ 알바생 고용 의혹” 잇따라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결혼정보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맞선파트너로 소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알바생 고용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2013전북조정5~10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이○○○ 對 전라일보, 인터넷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일보 : 『“공장 악취 때문에 골이 다 아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4면) • 인터넷 전라일보 : 『“악취 때문에 골이 다 아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스티로폼을 제조하는 신청인 회사에서 악취가 발생해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반론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전라일보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인터넷 전라일보의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라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일보 : 『[알려왔습니다] 스티로폼 재생공장 악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4면) • 인터넷 전라일보 : 『스티로폼 재생공장 악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서울조정251~252		(매체별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보 : (1) 『해상작전헬기 美 시호크 탈락』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1면), (2) 『美와 군수지원 밀약 의혹… ‘잡음’ 막으려 급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7면) • 세계닷컴 : (1) 『[단독] 해상작전헬기 美 시호크 탈락(세계일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5일자) (2) 『[단독] 美와 군수지원 밀약 의혹… ‘잡음’ 막으려 급선회?(세계일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방위사업청이 해상작전헬기로 영국산 ‘링스와일드캣’을 최종 선정할 이유가 미국산 ‘시호크’ 생산업체와의 이면계약 문제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면)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해상작전헬기 美 ‘링스 와일드캣’ 선정 배경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2일자) 	
2013서울조정253~25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케이티○○○○○○○ 對 뉴스도마토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MSO와 ‘채널 바터’.. “방송생태계 교란행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 『○○○○○○ ‘담합 탈선’.. 방통위는 ‘수수방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3) 『양문석 위원 “○○○○○○등 ‘채널 바터’ 뿌리뽑아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4) 『○○○○○○, 특정 SO 무더기로 놓고도 담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자사 채널을 3개씩 맞교환(바터)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을 위태롭게 만들어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MSO 채널 바터’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제주조정1		(정정청구) ○○정보기술(주) 對 KCTV
조 정 대 상	KCTV 종합뉴스 프로그램 『통합관제센터] 검증도 안하나?』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3일자 19: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CCTV통합관제센터에 납품하는 통합저장장치(스토리지)가 관제센터 측에 이미 설치된 타사의 서버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강원조정2		(정정청구) 조○○ 對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홍천 ‘○○ 아파트’ 분양시기 유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전 대표인 신청인이 입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강원조정3~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황○○ 對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민일보 : (1)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5면), (2)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12면) (3) 『시의원이 조례 개정 수혜…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10면) (4) 『[기자수첩] 경사도 완화…李下不整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12면) (5) 『경사도 완화 시의원, 윤리규범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10면) (6)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12면) (7) 『“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12면) (8) 『“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8면) (9) 『원주시의원 6명 규제완화 땅 소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12면) (10) 『윤리특위 회부 초미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0면) (11)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수용여부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면) (12) 『“원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면) (13) 『亂 개발에 앞장서는 원주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7면) (14) 『“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땀 난개발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12면)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1)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2)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3) 『시의원이 조례 개정 수혜…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4) 『[기자수첩] 경사도 완화…李下不整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5) 『경사도 완화 시의원, 윤리규범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6)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7) 『“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8) 『“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9) 『원주시의원 6명 규제완화 땅 소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10) 『윤리특위 회부 초미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1) 『“원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 『亂 개발에 앞장서는 원주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13) 『“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땀 난개발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인 신청인이 해당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55~2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對 KBS-2TV, KBS미디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2TV : 굿모닝 대한민국 (1부) 프로그램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1일자 06:00) • KBS미디어 : 『[방송보기] 굿모닝 대한민국 (1부)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 미용목적 등의 보톡스·필러 시술이 모두가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KBS-2TV에 반론보도]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에 반론보도,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 부분에 위 반론보도문을 전체 화면의 1/4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자막으로 20초 이상 계속 표시함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KBS-2TV의 조정대상보도(VOD)의 말미에 반론보도문 내용을 삽입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2TV :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5일자 06:00)

2013경기조정26~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對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S경인TV : (1) OBS 뉴스 M 프로그램 『[단독] ○대, 교수 임용 비리 말썬...‘철회’』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3일자 19:45) (2) 『○○○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9:45) (3) 『“○대 임용 비리 빙산 일각”...뒤틀린 커넥션 뒷선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9:45) (4) 『○○○대, 비리검증 ‘뒤틀린’...연구자 사실상 ‘생매장’』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5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1) 『[단독] ○대, 교수 임용 비리 말썬...‘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2) 『○○○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3) 『“○대 임용 비리 빙산 일각”...뒤틀린 커넥션 뒷선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4) 『○○○대, 비리검증 ‘뒤틀린’...연구자 사실상 ‘생매장’』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에서 진행 중인 교수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OBS경인TV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S경인TV : OBS 뉴스 M 프로그램 『○○○대 교수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대 교수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57~258 (정정·손배청구) (주)케이티○○○○○○○ 對 뉴스토마토	
조정대상	(1) 『‘채널 담합’ ○○○○○○, 손해보는 계약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2) 『‘무리한 주파수 쪼개기’..○○○○○○○ ‘HD’, 불편한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채널 담합 등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3서울조정259		(정정청구) 기독교○○○○교회 ○○○교회 對 기독교성결신문
조 정 대 상	(1) 『선교사 파직, 정치적 희생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1면) (2) 『[1 1면에 이어서] 선교사 파직, 정치적 희생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9면) (3) 『“유○○·여○○ 전·현직 해선위원장 의도갖고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1면) (4) 『▶1면에서 이어] 전·현직 해선위원장 의도갖고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가 교회헌금으로 설립된 학교재산을 성도들을 속이고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중단 약속)	

2013대전조정13		(반론청구) ○○마취통증의학회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의료원 알고도 은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7면)	
신청인주장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척추질환 환자에게 진료영역을 뛰어넘는 시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마취과 의사, 척추질환 환자 상습 시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8일자 7면)	

2013대구조정12		(정정청구) 손○○ 對 뉴스일번지
조 정 대 상	『구미시의원의 이상한 입장정리 - 오비이락(烏飛梨落)』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대구공항공리무진 버스가 거래하던 주유소를 구미시의회 의원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변경한 것을 두고 모종의 밀약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구미시의원의 이상한 입장정리]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63		(정정청구) 서초구청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부) 프로그램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청원경찰 돌연사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6:00)	
신청인주장	서초구청이 구청장 차량 주차안내를 늦게 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동안 징벌성 옥외근무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박스에 흰자막으로 표시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20초~30초 동안 계속 표시함 [조건부 후속보도] 반론보도 중 사망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조사결과 오보로 밝혀질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별도의 정정보도를 방송하며, 방송시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내용과 방식을 정하되, 위원회의 조정합의 양식에 준함	
이 행 결 과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2부) 프로그램 『청원경찰 돌연사』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2일자 17:00)	

2013경기조정28~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부천시 ○○○ ○○봉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신문 : 『참여했던 회원 및 임원들 ‘정산서류 조작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1면) • 인터넷 부천신문 : 『○○○ ○○봉사단 ‘轉入佳境’-③』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사유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하므로 정정 및 반론 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p> <p>※ 이행방법 : [인터넷 부천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종합뉴스섹션 지역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264~26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테크 對 채널A,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뉴스 프로그램 『구직자 울리는 ‘꽃뱀 다단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0일자 22:00) • 인터넷 채널A : 『[뉴스A]女 손에 이끌려 찜질방 갔더니...구직자 울리는 ‘꽃뱀 다단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불법 다단계업체의 피해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건물 외관을 방송했으나 신청인 업체는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p> <p>[채널A에 반론보도]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반론보도,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함</p> <p>[인터넷 채널A에 반론보도] 채널A에서 반론보도 후 인터넷상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꽃뱀 다단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07:50) • 인터넷 채널A : 『[아침뉴스] 강남일대 ‘꽃뱀다단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66		(반론청구) (주)○○○○산업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47회] 가격의 자격 - 놀이매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19:3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매트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제품은 국가인증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 :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내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인터넷 게시판 내 ‘알려드립니다’ 코너 중 [247회 ‘가격의 자격-놀이매트 편’ 관련 정보] 하단부분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알려드립니다] 247회 ‘가격의 자격 - 놀이매트 편’ 관련 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p>2013서울조정267~268, 726~731</p>	<p>(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흥○○ 對 중앙일보⁽²⁶⁷⁻²⁶⁸⁾, 뉴데일리⁽⁷²⁶⁻⁷²⁷⁾, TV조선⁽⁷²⁸⁻⁷²⁹⁾, 인터넷 TV조선⁽⁷³⁰⁻⁷³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취재일기』 불행한 죽음을 희화화한 진영의식』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37면) • 뉴데일리 : 『사람 죽었는데..前 통진당 흥○○ “RT사실이면 땡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일자) • TV조선 : 뉴스와이드 참 프로그램 『김○○의 @세상』 박근혜 보좌관 사망』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3일자 12:50) • 인터넷 TV조선 : 『김○○의 @세상』 안철수 해단식…SNS에서도 ‘와글와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p>신청인주장</p>	<p>통합진보당 전 부위원장인 신청인이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보좌관의 교통사고 사망소식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땡큐’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TV조선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인터넷 TV조선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 TV조선 : [반론보도] <TV조선 뉴스 1>(13:45~14:40)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함 • 인터넷 TV조선 :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시 완료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불행한 죽음 희화화한 진영의식』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면) • 뉴데일리 : 『[사람 죽었는데..前 통진당 흥○○ “RT사실이면 땡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 TV조선 : TV조선 뉴스 1 프로그램 『<전 통진당 부위원장, ‘땡큐’ 악성 트윗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1일자 12:50) • 인터넷 TV조선 : 『[‘통진당 부위원장, 땡큐 악성 트윗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p>2013대구조정13~14</p>	<p>(반론·손배청구) (사)○○○○진흥원 對 경상매일</p>
<p>조 정 대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주시, ‘215억짜리 시설’ 연간 1,927만 원대 임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2) 『○○한옥마을, 민간업자 배불리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3) 『경주시 ‘○○한옥마을’ 계약 해지키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일자)
<p>신청인주장</p>	<p>경주시 내 한옥마을 민간위탁사업자인 신청인이 영리에만 급급해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p>
<p>이 행 결 과</p>	<p>『[경주○○한옥마을 민간업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p>

2013서울조정269 (정정청구) 김○○ 외 3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빙판길에 미끄러진 마을버스 보고 놀라 넘어진 60대 사망』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의 가족구성원이 빙판길에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는 모습에 놀라 넘어져 사망했다고 보도됐으나, 고인은 빙판길에 미끄러진 마을버스의 앞 범퍼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경남조정5~6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신문 : 『“인터넷 쪽지 논란 교감” 비위 제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5면) • 인터넷 경남신문 : 『“돈은 좀 그렇고 주유 상품권으로 해라” 교감의 ‘인터넷 쪽지’ 비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교감인 신청인이 인사იდ동의 대가로 교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경남조정7~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교원성과급 등급, 내가 많이 생각해서 준 거 알죠?”』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3년 2월 27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과상여금 평가에 대한 생색내기용으로 교사들에게 인터넷쪽지를 보낸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270~271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조○○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장사 안되는데 ‘5년 계약’에 묶여 ... 점포 망해도 월세 ‘자동 입금’』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3월 2일자 A3면, 한경닷컴 3월 1일자)
신청인주장	상가장기계약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치킨전문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과거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272 (정정청구) 신○○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10분 거린데.. 9만6천 원』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6일자 20:00)
신청인주장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콜밴’ 차량의 횡포를 보도하면서 ‘일반 택시’ 차량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사항이 언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도 전혀 적시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신청인에 관한 것이라는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3경남조정9 (정정청구) 경상남도 對 창원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포기?』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6일자 21:00)
신청인주장	경상남도가 지역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73~27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 지주단체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네이트	
조 정 대 상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대해 무리한 지원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강제금 (2013서울중재36~37 참조)] • 네이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 28~29 참조)]
2013서울조정277~278 (매체별 반론청구) ○○○○○○교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1) 『검찰, 조○○ 목사 ‘100억대 배임’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1면), (2) 『조○○ 목사가 사실상 주도 정황 증여세 줄이려 서류조작 하기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10면) • 인터넷 한겨레 : (1) 『[단독] 검찰, 조○○ 목사 ‘100억대 배임’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2) 『[단독] 조○○·조○○ 부자 배임·탈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 소속의 목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될 방침이라고 보도됐으나, 검찰의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279~284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한국일보 ⁽²⁷⁹⁾ , 인터넷 한국일보 ⁽²⁸⁰⁾ , 네이버 ⁽²⁸¹⁾ , 다음 ⁽²⁸²⁾ , 네이트 ⁽²⁸³⁾ , 줌 ⁽²⁸⁴⁾	
조 정 대 상	『대한민국 대학생들 고위층 막말에 둔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3월 4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네이버·다음·네이트·줌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석사학위논문 연구결과, 화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막말에 대한 청자의 실망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한국일보·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12면)

2013부산조정1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갑작스런 파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차량 등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286~287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157회 - 공포의 민원왕! 그는 왜, 하루 4번 이웃을 고발하나?』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찰시험에 불합격하여 복수심에 6천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88~289, 295~29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김○○ 對 미래일보, 인터넷 미래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일보 : (1) 『“가짜 유공자”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1면) (2) 『해군 본부 전역 명령'에는 진해병원 소속, 모든 서류는 '서울병원'으로 기록 '가짜증명'』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4면) (3) 『포탄 파편, 북부총상으로 공상 '거짓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도 조작 의혹 짙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5면) • 인터넷 미래일보 : 『[심층취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 회장, '가짜 유공자'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인 신청인이 가짜 국가유공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290~291 (정정 · 손배청구) 1. 문○○, 2. 구○○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1) 『부산 의료사고, 싸늘한 시신을 대학병원으로 옮겨...』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2) 『부산 의료사고, 엠블런스 기사가 남편한테 “이미 죽었다”고...[전문공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3) 『부산 의료사고, “혈액병지 들고 왔다갔다...물어도 모른다고 변명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4) 『부산 의료사고, 충격적 사실은 한해 평균 4만명이 봉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 이미 사망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내용 :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 반론 ·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삭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를 24시간 동안 게재한 이후에는 관련 조정대상 기사를 모두 삭제하여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이 행 결 과	『[부산 ○○○○병원 '산모 사망사건', 무혐의 내사 종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대구조정15 (반론청구) 이○○ 對 대구MBC-TV	
조 정 대 상	대구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송전탑 보상금 검은 거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7일자 20:35)
신청인주장	청도군의회 의장인 신청인이 한전의 지원금으로 설립된 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장학회 기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292 (반론청구) 관악경찰서 對 인터넷 엠티엔(MTN)	
조 정 대 상	(1) 『[단독] 정신줄 놓은 경찰? 폭행 사망 50대 부실수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2) 『“억울한 장파열 죽음, 형사들은 뒷짐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50대 남성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 재수사에 나섰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e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엠티엔(MTN)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센터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e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코너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엠티엔(MTN) : 『관악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 e머니투데이 : 『[관악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2013서울조정293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TV 출연 유명 건강전도사 알고보니 가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출연한 사람이 가짜 건강전도사 행세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에는 그런 사람이 출연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2면)

2013서울조정299~301 (매체별 반론청구) 엄○○ 對 YTN ⁽²⁹⁹⁾ , 인터넷 YTN ⁽³⁰⁰⁾ , 뉴스1 코리아 ⁽³⁰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1) 뉴스오늘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7:58) (2) 뉴스오늘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8:58) (3) 뉴스현장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0:58) (4) 뉴스12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1:58) (5) 뉴스&이슈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2:58) (6) 뉴스&이슈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3:58) • 인터넷 YTN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 뉴스1 코리아: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냐”』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의붓딸이 신청인한테 성폭행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인터넷 YTN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기사삭제 (2013 서울중재30~33 참조)] • 뉴스1 코리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34~35 참조)]
2013서울조정302 (정정청구) 광산구청 외 4인 對 민중언론 참세상	
조정대상	『광산구청 직원, 건설노조 조합원 폭행 논란...1명 중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구청 직원이 건설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건설노조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이행결과	『“건설노조 조합원 폭행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2013경기조정32 (정정청구) 성남시 對 성남일보	
조정대상	『이재명 시장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판교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입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성남시의 부채상환 노력이 예산 절감이 아닌 허구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p>
이행결과	『“이재명 시장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2013대구조정16~1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해운(주)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업체인 경쟁 유도 선사지정제 도입 목소리』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3년 2월 12일자 10면, 인터넷 영남일보 2월 12일자)	
신청인주장	포항항 예선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예인작업 사용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임의로 예선을 배정해 선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경기조정33		(정정청구) 씨티21뉴스 對 i-김포뉴스
조 정 대 상	『김포시의회, 의회 광고료로 시민세금 제멋대로 사용』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김포시의회가 지역신문사들에게 지급한 광고료를 지적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언론사를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수집된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중재부가 결정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대전조정14~15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김○○ 對 청양신문, 인터넷 청양신문
조 정 대 상	『청양군의회 총무위 파행 ‘빈축’』 제하의 기사 (청양신문 2012년 12월 10일자 2면, 인터넷 청양신문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청양군의회 총무위 위원장인 신청인이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보도했으나, 회의를 파행시킨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청양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청양군의회 총무위 파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청양신문 2013년 4월 1일자 2면, 인터넷 청양신문 4월 1일자)	

2013대전조정16~19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금강일보 ⁽¹⁶⁾ , 중도일보 ⁽¹⁷⁾ , 충청투데이 ⁽¹⁸⁾ , 보령신문 ⁽¹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일보 : 『보령시 불법 산림훼손 방지 주민들 원성』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8면) • 중도일보 : 『보령 ○○리 임야 수년간 불법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6면) • 충청투데이 : 『보령시 녹장행정 산림자원 훼손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8면) • 보령신문 : 『市녹장행정 수년간 불법 산림훼손 방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간이화장실과 쉼터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p> <p>• 금강일보·중도일보·충청투데이·보령신문 : [PR보도] 신청인의 숲길조성사업을 홍보하는 기사를 2013년 3월말까지 게재함</p>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일보·인터넷 금강일보 : 『발걸음마다 묻어내는 문화의 향기』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3월 27일자 18면, 인터넷 금강일보 3월 27일자) • 중도일보·인터넷 중도일보 : 『자연 속 문학힐링 ‘시와 숲길’ 공원』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3년 3월 27일자 16면, 인터넷 중도일보 3월 27일자) • 충청투데이·인터넷 충청투데이 : 『보령 주산면 “詩가 숲을 이루다”』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3월 27일자 18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3월 27일자) • 보령신문·인터넷 보령신문 : 『보령시 주산면 ‘시와 숲길’ 인기』 제하의 기사 (보령신문 2013년 4월 3일자 2면, 인터넷 보령신문 3월 26일자) 	
2013서울조정303~311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윤○○ 對 중앙일보 ⁽³⁰³⁻³⁰⁵⁾ , 온라인 중앙일보 ⁽³⁰⁶⁻³⁰⁸⁾ , 민주일보 ⁽³⁰⁹⁻³¹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빈자의 성인” ○○공동체 설립자 강남에 30억 땅』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12면) • 온라인 중앙일보·민주일보 : 『강남서 한웃 주위 살던 ○○왕, 재산이 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집단공동체 설립자인 신청인이 구성원들이 수거해온 옷을 빼돌려 팔아 큰 재산을 형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온라인 중앙일보 : ▷ 정정·반론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민주일보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p>※ 이행방법</p> <p>• 온라인 중앙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통상적인 활자와 크기로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온라인 중앙일보 : 『윤○○ ○○공동체 설립자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3월 29일자 14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29일자) • 민주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공동체 구성원 한웃 빼돌려 강남 30억 땅 산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p>2013충북조정6~11</p>	<p>(병합)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對 충청일보^(6~7 정정·손배청구, 10 정정청구), 인터넷 충청일보^(8~9 정정·손배청구, 11 정정청구)</p>
<p>조 정 대 상</p>	<p>(1) 『서산 간척지 부실시공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12월 16일자) (2) 『서산 간척지 재정비 부실공사 강행』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2년 12월 24일자 4면, 인터넷 충청일보 12월 23일자) (3) 『서산 간척지 재정비 부실시공 여전』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1월 14일자 4면, 인터넷 충청일보 1월 13일자) (4) 『서산 간척지 방수제 도로 ‘침하’』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1월 28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1월 27일자) (5) 『한국농어촌공사 도 넘은 기강해이』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3월 11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3월 10일자) (6) 『서산 간월호 준설 수질악화 우려』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3월 18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3월 17일자)</p>
<p>신청인주장</p>	<p>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서산간척지 재정비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호내 골재를 채취하려는 꼼수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일보 : 『(반론보도문) 서산 A간척지 재정비 사업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2면) • 인터넷 충청일보 : 『서산 A간척지 재정비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p>2013대전조정20~21</p>	<p>(정정·손배청구) 김○○ 외 8인 對 충청신문</p>
<p>조 정 대 상</p>	<p>(1) 『불법 쓰레기 매립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1면) (2) 『통장, 주민위에 군림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1면)</p>
<p>신청인주장</p>	<p>지역의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인 신청인들이 회의록을 조작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불성립결정</p>

2013서울조정312~321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對 문화일보 ^(312~313) , 인터넷 문화일보 ^(314~315, 312~313과 병합) , 네이버 ^(316~317) , 네이트 ^(318~319) , 다음 ^(320~321)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1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p>신청인 대학교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경의선 서강역의 명칭을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38~43 참조)]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는 정정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되,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섹션(뉴스/사회/사회일반)에 기사순서 위에서 5번째 이내로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3월 28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3월 28일자)
2013서울조정322~323	(조정·손배청구) 최○○ 對 컨슈머타임스
조정대상	<p>『“SPA브랜드 AS불가” 보도자료 왜곡…업체 ‘신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p>
신청인주장	<p>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신청인 회사가 왜곡된 업계사정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p> <p>※ 이행방법</p> <p>[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p> <p>[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내용 중에서 특정 문장을 삭제함</p>
이행결과	<p>『[○○○리서치 SPA브랜드 보도자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p>

2013서울조정324~325 (정정·손배청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 21 프로그램 『92회 - 아파트는 지금 비리복마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5일자 20:55)
신청인주장	신청인 아파트의 동대표가 직업 동대표이고, 일부 임원이 공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현장 21 프로그램 『〈아파트 비리복마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9일자 20:55)

2013서울조정326 (정정청구) 이○○ 對 블루투데이	
조 정 대 상	『17년 고정간첩 이○○ 감옥에서도 ‘투쟁중’』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북한에서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17년 고정간첩 이○○ 감옥에서도 ‘투쟁중’〉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7일자)

2013경기조정34 (정정청구) 이재명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1) 『이재명 시장 측근, 과문자 발송 혐의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2) 『이재명 성남시장 과문자 발송 진상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의원에게 과문자를 발송한 지역 시민단체의 K모 사무국장이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27~33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enews24 ⁽³²⁷⁻³²⁸⁾ , 네이버 ⁽³²⁹⁻³³⁰⁾ , 네이트 ⁽³³¹⁻³³²⁾ , 다음 ⁽³³³⁻³³⁴⁾	
조 정 대 상	『[단독] 이○○ ‘결혼해줄래’ 작곡가 이○○, 사칭 동명이인 고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신청인주장	D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신청인이 ‘결혼해줄래’ 등의 노래를 작곡한 동명이인의 다른 작곡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ws24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이후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공한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도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enews24 : [조건부 후속보도] 조정대상기사에 기술된 고소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결과, 신청인에 관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해 관련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1/2 이상의 분량으로 보도함

2013서울조정335~34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스타뉴스 ⁽³³⁵⁻³³⁶⁾ , 네이버 ⁽³³⁷⁻³³⁸⁾ , 네이트 ⁽³³⁹⁻³⁴⁰⁾ , 다음 ⁽³⁴¹⁻³⁴²⁾	
조정대상	『작곡가 이○○, 사칭 동명이인 고소 “명의로용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신청인주장	D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신청인이 ‘결혼해줄래’ 등의 노래를 작곡한 동명이인의 다른 작곡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뉴스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조건부 정정보도,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스타뉴스 : 후속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후속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스타뉴스 [후속보도] : 홈페이지에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 [조건부 정정보도] 조정대상기사에 기술된 고소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결과, 신청인의 혐의가 ‘무혐의’, ‘무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해 관련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1/2이상의 분량으로 보도함 • 네이버·네이트·다음 : [후속보도] : 기사제공언론사(주)스타뉴스로부터 신청인의 인터뷰 기사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속보도문(스타뉴스로부터 전송받은 인터뷰 기사)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후속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음악감독 이○○ “한류사업에 1인프로젝트 앨범까지”(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013서울조정343~344 (정정·손배청구) 1. ○○기업(주), 2. ○○이엔티(주) 對 HKBC환경방송	
조정대상	『유명기업 산속에 감춘 폐기물 매립 현장 발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업이 5년여동안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배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18 (정정청구) 윤○○ 對 경북인터넷뉴스	
조정대상	『구미시의회, 시의원들 왜 이러나? 이제는 인면수심적 행태까지 벌어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신청인주장	구미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2013경남조정10~11 (정정·손배청구) 박○○ 對 더함안신문	
조 정 대 상	『[이런일 저런일] 우째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면)
신청인주장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지역의 민속 줄다리기 행사추진위원회가 불법과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우째 이런 일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면)

2013충북조정12~13 (정정·손배청구) 김○○ 외 8인 對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시와 짜고 쓰레기 불법 처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지역의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업체 위원인 신청인들이 회의를 조작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와 짜고 쓰레기 불법 처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3면)

2013서울조정345, 348~349 (매체별 정정청구) (재)○○방송 對 미디어오늘 ⁽³⁴⁵⁾ , 네이버 ⁽³⁴⁸⁾ , 다음 ⁽³⁴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1) 『○○방송, 천만 달러에 미 국무부 주파수 대여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1면), (2) 『\면, ;○○방송, 천만...』서 계속』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2면) • 네이버·다음 : 『[단독] ○○방송, 천만 달러 받고 미 국무부에 주파수 대여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천만 달러를 받고 미국 국무부에 주파수를 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취하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346~347 (정정·손배청구) 1. (재)○○방송, 2.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단독] ○○방송, 천만 달러 받고 미 국무부에 주파수 대여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 방송사가 천만 달러를 받고 미국 국무부에 주파수를 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인 2가 미국 CIA의 첩자라는 설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경남조정12~1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 주식회사 對 주간함양, 인터넷 주간함양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함양 : (1) 『만평 <132> 유○○ 화백』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4일자 2면) (2) 『외지 蔘 반입 업체 퇴출운동 확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1면) (3) 『만평 <134> 유○○ 화백』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2면) (4) 『“명품 함양 산양삼 다함께 만들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면) (5) 『〈1면서 계속〉 함양 산양삼 결의대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3면) • 인터넷 주간함양 : (1) 『〈457호 - 2013년 2월 4일자〉 만평』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4일자) (2) 『외지 蔘 반입 업체 퇴출운동 확산, 군·경찰·군의회 철저한 진상규명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3) 『〈459호 - 2013년 2월 25일자〉 만평』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4) 『“명품 함양 산양삼 다함께 만들어 가자”,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결의대회 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외지 삼으로 담근 산삼주를 함양의 산양삼으로 담근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50~351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 (주)○○○축산 對 SBS-TV, SBSi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현장 Report - 다우너·죽은 소 마구잡이 불법 도축』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20:00) • SBSi : 『[단독] 쓰러진 소를 ‘질질’...불법 도축 포착』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병든 소를 불법도축하여 시중에 고기를 판매한 축산업체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도축작업장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SBS에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SBSi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TV [SBS에 반론보도] SBSi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조건부 후속보도]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경찰수사(검찰수사 포함) 결과 혐의가 없다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행하도록 함 • SBSi [SBS에 반론보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조건부 후속보도]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경찰수사(검찰수사 포함) 결과 혐의가 없다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행하도록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i : 『〈쓰러진 소를 ‘질질’...불법 도축 포착〉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경기조정35		(손배청구) 이○○ 對 에스텍&스파
조 정 대 상	『리테일 판매수익의 원천, Front Dest Sale』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호 146~147면)	
신청인주장	스파 마케팅에 대한 보도와 함께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함	
2013경기조정36~37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 (주)○○○축산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다우너·죽은 소’ 화성 도축장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3월 18일자 6면, 인터넷 경기일보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죽거나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현재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6면)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2013서울조정352~35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MBC-TV⁽³⁵²⁻³⁵³⁾, iMBC^(354-355, 352-353과 병합), 네이버⁽³⁵⁶⁻³⁵⁷⁾, 다음⁽³⁵⁸⁻³⁵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집중취재] 엉터리 오존 살균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20:00) • iMBC·네이버·다음 : 『[집중취재]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엉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든 오존살균기가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엉터리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iMBC : 조정성립 (내용 : MBC-TV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44~47 참조)] ※ 기타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iMBC : iMBC의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에 반론 보도문을 전송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iMBC : [MBC-TV에 반론보도] <TV 속의 TV> 프로그램 끝부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낭독하는 동안 제목과 본문 내용을 전체 화면의 1/3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15초 이상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TV 속의 TV 프로그램 『990회 -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엉터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8일자 12:20) • iMBC :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엉터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8일자) 	

2013서울조정360	(반론청구) 1. 재외동포재단, 2. 김○○ 對 인터넷 월드코리아신문
조정대상	『수첩』 로마 스페인광장에서의 ‘사모님 논쟁’』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유럽 출장길에 동반한 수행 여직원을 두고 주변에서 ‘사모님’ 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반론보도문을 뉴스레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발송함 ※ 이행방법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삭제] 반론보도문을 뉴스레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발송한 후 48시간 이후에는 반론보도문과 조정대상 기사를 모두 삭제함
이행결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서울조정361~374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뉴시스 ⁽³⁶¹⁾ , 연합뉴스 ⁽³⁶²⁾ , 뉴스1 코리아 ⁽³⁶³⁾ , 디지털 세상신문 ⁽³⁶⁴⁾ , 스타뉴스 ⁽³⁶⁵⁾ , 미디어스 ⁽³⁶⁶⁾ , 노컷뉴스 ⁽³⁶⁷⁾ , 인터넷 기자협회보 ⁽³⁶⁸⁾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³⁶⁹⁾ , 오마이뉴스 ⁽³⁷⁰⁾ , 인터넷 미디어오늘 ⁽³⁷¹⁾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³⁷²⁾ , 온라인 중앙일보 ⁽³⁷³⁾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³⁷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연합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뉴스1 코리아 : 『MBC 노조 김○○ 사장 상대 손해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디지털 세상신문 : 『MBC 노조, 김○○ 사장 등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 스타뉴스 : 『MBC 노조 “사측 해킹프로그램 유포”..7 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 미디어스 : 『MBC노조, 김○○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노컷뉴스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MBC 노조, ‘○○○○’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MBC노조, ‘해킹 피해’로 사측에 손해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오마이뉴스 : 『회사가 조직원 해킹?...MBC 노조원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손해배상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천만 원 손해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MBC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7000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악성 해킹프로그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연합뉴스·뉴스1 코리아·디지털 세상신문·스타뉴스·미디어스·노컷뉴스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48~61 참조)] • 인터넷 기자협회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74~75 참조)]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오마이뉴스·인터넷 미디어오늘·인터넷 파이낸셜뉴스·온라인 중앙일보·아이피디저널(IPD저널)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62~73 참조)]

2013서울조정375~376 (정정·반론청구) 영상물등급위원회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특하면 제한상영가 판정... 영등위 심의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잇달아 매기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38~39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교복업체 특허 쥐고 ‘甲 행세’... 신입생 사복등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한복교복을 제작하는 신청인이 교복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해 학교에 갑(甲) 행세를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교복업체 특허 쥐고 甲행세’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2013충북조정14 (정정청구) (주)○○○○컨트리클럽 對 인터넷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충주 ○○○○ CC 9홀 ‘대중제 전환’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회원제인 신청인 골프장의 일부 홀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최근 크게 저조한 경영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377~381 (매체별 정정청구) 김병관 對 한겨레 ⁽³⁷⁷⁾ , 인터넷 한겨레 ^(378, 377과 병합) , 네이버 ⁽³⁷⁹⁾ , 네이트 ⁽³⁸⁰⁾ , 다음 ⁽³⁸¹⁾	
조 정 대 상	(1) 『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2월 20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네이버·네이트·다음 2월 20일자) (2) 『군 ‘K2 파워팩’ 증개상 끼워 구매... 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2월 22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네이버·네이트·다음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네이버·네이트·다음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013서울조정382~383 (정정 · 손해청구) (주)○○○○○○○ 對 뉴스플러스	
조 정 대 상	『SH공사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년도 안 돼 먹통, 주민들 “좋은 것 놔두고 왜 불량품을?, 유착 관계 의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SH공사가 거액을 들여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음식물처리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SH공사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년도 안 돼 먹통, 주민들 ‘좋은 것 놔두고 왜 불량품을?, 유착관계 의심’”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8일자)
2013서울조정384 (정정청구) 김○○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MBC 제3노조 위원장 “MBC 공정성, 문제제기 안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신청인주장	MBC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이 ‘방송사의 현 사장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MBC 제3노조위원장 인터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2013서울조정385~393, 403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 對 TV리포트 ⁽³⁸⁵⁾ , 스포츠한국 ⁽³⁸⁶⁾ , 스타엔 ⁽³⁸⁷⁾ , 리뷰스타 ⁽³⁸⁸⁾ , 마이데일리 ⁽³⁸⁹⁾ , 인터넷 MBN ⁽³⁹⁰⁾ , 뉴스엔 ⁽³⁹¹⁾ , 티브이데일리 ⁽³⁹²⁾ , 스타투데이 ⁽³⁹³⁾ , 인터넷 스포츠한국 ⁽⁴⁰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리포트 : 『[단독] 폭행논란 정○○ 복귀… 이○○와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스타엔 : 『정○○ 복귀, 영화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이○○와 호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리뷰스타 : 『정○○, 폭행혐의 벗고 스크린 복귀… ‘이○○’와 코믹 호흡 기대 ↑』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마이데일리 : 『정○○, 4년만에 스크린 복귀… ‘슈퍼맨 강보상’』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인터넷 MBN : 『폭행논란 정○○ 복귀, 영화 ‘슈퍼맨 강보상’으로 컴백』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뉴스엔 : 『정○○ 5년만에 ‘슈퍼맨 강보상’ 스크린 복귀, 이○○와 호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티브이데일리 : 『정○○ 복귀, 이○○ 주연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스타투데이 : 『‘폭행논란’ 정○○, 이○○와 영화 ‘슈퍼맨 강보상’ 주연 발탁』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폭행논란 정○○, ‘슈퍼맨 강보상’으로 영화계 복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폭행혐의로 물의를 빚은 영화배우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리포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스포츠한국 : 취하 (사유 : 지면 미게재) • 스타엔 · 리뷰스타 · 마이데일리 · 인터넷 MBN · 뉴스엔 · 티브이데일리 · 스타투데이 · 인터넷 스포츠한국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TV리포트 : [정정보도] 2013년 4월 5일 12:00부터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적인 활자와 크기로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하도록 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리포트 : 『영화화 되는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5일자)

2013전북조정11~12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1. 이○○, 2. (주)○○○엔지니어링 對 노컷뉴스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북 익산시장 최측근 친구, 각종 공사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2) 『전북 익산 현직 시의원, 역대 재산 누락 신고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에서 진행중인 각종 공사에 익산시장의 친구인 신청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광주조정5~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의료법인 ○○의료재단 對 화순일보, (주)화순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A의료재단법인 국고 보조금 편취 ‘의혹’』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3월 4일자 1면, (주)화순일보 3월 4일자) (2) 『A의료재단, 또 국고 보조금 빼먹기인가?』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3월 4일자 11면, (주)화순일보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의료재단이 허위 문서를 꾸며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적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 이행방법 : [화순일보에 반론보도] 2013년 4월 30일까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 결과	『“화순 A의료재단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4월 29일자 2면, (주)화순일보 4월 27일자)

2013서울조정394 (정정청구) 박○○ 對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경찰 “박○○ 거짓말탐지기 결과 ‘모두 거짓’”』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연예인인 신청인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한 발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 및 사과보도)
2013서울조정395 (정정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경찰 “박○○ 기소의견...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연예인인 신청인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한 발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이 행 결 과	『성폭행 피소 박○○ 측 “수사 의견 결정 안 됐다”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2013서울조정396~397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김○○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시 의원은 영업 중?』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0일자 20:07) • SBSi : 『입만 열면 “램프 교체”... 시 의원의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원인 신청인이 조명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가로등 램프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영리행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TV에 반론보도]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를 내보내되, 방송 중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시 의원은 영업 중?”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5일자 07:10) • SBSi : 『[반론보도문] “시 의원은 영업 중?”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013서울조정398~401 (매체별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급식비 떼먹은 ‘양심 불량 어린이집’... 재발 대책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3일자 19:55) • iMBC : 『[다시보기] 급식비 떼먹은 ‘양심 불량 어린이집’... 재발 대책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급식 재료 업체와 짜고, 급식비로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MBC-TV에 조건부 추후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MBC-TV에 조건부 추후보도] 조정대상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된 경우, 신청인과 사전 협의하여 그 내용을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402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2회 구애는 처벌 NO, 3차례 이상은 스토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6면)
신청인주장	경찰의 경범죄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수정)

2013경기조정40 (기사별 반론청구) 김○○ 對 성남투데이	
조 정 대 상	(1) 『성남시의회 경직으로 부적절한 처신 ‘눈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2) 『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이권개입 의혹 폭로 ‘공방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원인 신청인이 조명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가로등 램프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영리행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이 2013년 3월 17일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한 『[의회열전2] 성남시 의회 강○○의원의 의혹제기와 김○○의원의 해명』 제하의 동영상 자막을 2013년 4월 10일 09:00까지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성남시의회 김○○ 의원’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013서울조정404~408 (매체별 정정청구) 이 ○ 對 한국경제 ⁽⁴⁰⁴⁾ , 한경닷컴 ⁽⁴⁰⁵⁾ , 민중의소리 ⁽⁴⁰⁶⁾ , 대학뉴스 ⁽⁴⁰⁷⁾ , e대학저널 ⁽⁴⁰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한경닷컴 : 『법원 “○○여대 설립자 조○○”』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3월 11일자 27면, 한경닷컴 3월 11일자) • 민중의소리·대학뉴스 : 『법원 “○○여대 설립자는 조○○”... 1심 판결 번복』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 e대학저널 : 『○○여대, 설립자 논쟁에서 ‘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모 대학교재단 설립자(故 이 모 씨)의 손자인 신청인이 제기한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故 조 모 씨를 설립자로 인정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공동 설립자로 인정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한경닷컴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민중의소리·대학뉴스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 e대학저널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닷컴 : [후속보도] 2013년 4월 30일 09:00부터 5월 2일 09:00까지 뉴스면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후속보도문 제목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한경닷컴 : 『○○여대 설립자 논란 대법서 결판』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4월 24일자 28면, 한경닷컴 4월 24일자) • 민중의소리·대학뉴스 : 『법원 “조○○·이○○, 모두 ○○여대 설립자”』 제하의 기사 (민중의 소리 2013년 3월 29일자, 대학뉴스 4월 1일자)

2013서울조정409~41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선○○ 對 KBS-1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사행성 게임장 활개』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8일자 21:00) • KBS 미디어 : 『[현장추적] 단속 ‘뒷집’ 속 사행성 게임장 다시 활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불법 사행업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413~414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김○○ 對 중앙Sunday, 인터넷 중앙Sunday	
조 정 대 상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중앙Sunday 2013년3월 17일자 8면, 인터넷 중앙Sunday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온라인 도박 중독 폐해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 회사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함
2013광주조정9 (정정청구) 1. ○○대학교, 2. 지○○ 對 광주일보	
조 정 대 상	『○○대 총장, ○○병원장 동기 추천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6면)
신청인주장	대학교 총장인 신청인이 취임 이후 학장 임명 및 대학병원의 신임병원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원칙과 관행을 무시한 인사를 뒤집어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415~41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뉴시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1) 『‘도박 파문’ 스님, 보도한 언론사 대표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3일자) (2) 『○○ 스님, ‘불자가 술·담배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려 들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3) 『○○사 부주지 등 살인혐의로 고발한 ○○ 스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 네이버 : (1)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3일자) (2) 『○○ 스님, ‘불자가 술·담배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려 들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3) 『○○사 부주지 등 살인혐의로 고발한 ○○ 스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찰 소속 부주지와 승려들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76~77 참조)] ※ 기타 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했던 네이버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정정보도문도 매개 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뉴시스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 일반면 및 포토 국내사진면 초기화면에서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각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2013부산조정2~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부산광역시 기장군 對 주간기장신문, 인터넷 기장신문	
조 정 대 상	『신도시, 때 아닌 부동산 가격 논란』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3월 8일자 1면, 인터넷 기장신문 3월 8일자)
신청인주장	기장군이 핵의과학단지 승인을 전제로 폐기물매립장을 조건부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기장군은 매립장 부지 선정 권한이 없으며, 조건부 수용을 합의한 사실도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기장신문에 반론보도] 2013년 4월 4일부터 2일간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기장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4월 17일자 1면, 인터넷 기장신문 4월 4일)
2013서울조정419 (기사별 정정청구) 재단법인 기독교○○○○○○회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1) 『조○○ 목사 ‘임시통합총회장’ 추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9면) (2) 『“교단 통합으로 제2 부흥역사 일구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3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단이 조 모 목사를 교단 임시통합총회장으로 추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2013서울조정420 (반론청구) 주식회사 ○○○○○사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생계 보장한다더니” 한강 떠나는 영세상인들』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8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의 한강편의점 영세상인 복직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SBS 뉴스> 프로그램 끝부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그 동안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 하고, 전체 배경화면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자료화면을 방영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SBS 뉴스 프로그램 『[한국 떠나는 영세상인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6 일자 10:30)

2013서울조정421~42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노○○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 : 『투자금 모르쇠' 갈라진 우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14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 노○○ 대표 30억 민사소송 당해... 친구 투자문제와 도덕성 도마』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식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상의 없이 기존 회사를 폐업시키고 기존회사의 핵심인사 및 기술을 빼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 기사삭제, 부제소)</p>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및 사과보도 후 24시간이 지나면, 원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정정 및 사과보도문도 삭제하도록 함 <p>※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산업면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 : 『“○○ 노○○ 대표 30억 민사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14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 노○○ 대표 30억 민사소송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2013서울조정423~427		변○○ 對 경향신문 ^(423 정정청구) , 인터넷 경향신문 ^(424 정정청구, 423과 병합) , 노컷뉴스 ^(425 정정청구) , 다음 ^(426 정정청구) , 조선닷컴 ^(427 반론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박원순·공○○·○○은 종북주의자” 국정원의 황당 강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면) • 인터넷 경향신문 : (1) 『[단독] 국정원 ‘종북 낙인찍기’ 시민 강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2) 『“박원순 시장 중복세력 매도, 국정원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3) 『[단독] 국정원 강연서 “박원순·공○○… ○○○도 종북주의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노컷뉴스·다음 : 『○○○ “내가 종북? 귀여운 변○○, 열심히 사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 조선닷컴 : (1) 『○○○ “변○○ 오빠, 내가 친노종북? 짠하네요, 양!”』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 『변○○-○○○, ‘종북주의자’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방송인을 종북주의자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노컷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다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사회면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 노컷뉴스 : [반론보도] 정치면 초기화면의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 다음 : [반론보도] 초기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 부분에 2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은 종북주의자”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3년 4월 16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16일자) • 노컷뉴스·다음 : 『[“변○○-○○○” 보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3년 4월 16일자, 다음 4월 26일자) • 조선닷컴 : 『[“○○○은 종북주의자”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013서울조정428		(손배청구) 이○○ 對 KBS-ITV
조 정 대 상	인간극장 프로그램 『○○와 ○○, 그들이 사는 세상』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7일자 07:50)	
신청인주장	강연에 참석하여 간식을 수령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KBS 미디어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429		(정정청구) ○○중학교 對 e새한일보
조 정 대 상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운영위원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학교장의 명패를 운영위원장의 명패보다 더 크게 붙이는 등 위원회를 권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광명 C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2013서울조정430~432		(매체별 추후청구) 성○○ 對 중앙일보⁽⁴³⁰⁾, 동아일보⁽⁴³¹⁾, 조선닷컴⁽⁴³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김정일 처남 만나 술접대 받고… “연평도 완패 축하” 글 올리고』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1면) • 동아일보 : 『김정일 처남 만나고… 北 찬양글 126차례 배포』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2면) • 조선닷컴 : 『김정일 처남 만나 술접대 받고 北 찬양글 살포한 일당 체포』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문사 편집인이었던 신청인이 2008년부터 중국에서 김정일의 처남 등 북한 인사들과 직접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부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 동아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불기소처분 사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소유예 사안은 관련 기관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중재부의 추후보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추후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조선닷컴 : 『“이적 표현물 반포 성모씨”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4월 12일자 12면, 조선닷컴 4월 10일자) 	

2013경기조정41		(정정청구) ○○중학교 對 경인매일닷컴
조 정 대 상	『학교운영위원회 ‘구호만 요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학교장의 명패를 운영위원장의 명패보다 더 크게 붙이는 등 위원회를 권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명 C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013경기조정42~43		(정정 · 손배청구) 조○○ 외 4인 對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부천시 ○○○ 가요 봉사단 ‘漸入佳境’- 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지역 여성 봉사단체 창립총회에 참석한 신청인들의 모습이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충북조정15~16		(매체별 정정청구) 1. 배○○, 2. 오○○ 對 충북일보, 인터넷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일보 : 『○○ 기름 유출로 식수원 오염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3면) • 인터넷 충북일보 : 『○○ 기름 유출로 식수원 오염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면장과 관내 치안센터장인 신청인들이 주민들의 농업용수 및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9면) • 인터넷 충북일보 :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013서울조정433		(반론청구) 김○○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연합 문제 ‘오리무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연합회 회장인 신청인의 관리 하에 회칙에 따라 치러진 차기 회장 선거에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 전 회장, ○○○ 선거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4면)	
2013서울조정434		(손배청구) 주식회사 코스콤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낙하산 천국’ 코스콤, 오명 벗어날 기회가 왔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기타 공공기관인 신청인 회사의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시스템 장애문제가 발생한 무렵 사태 수습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외무성 출장을 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19~20 (기사별 정정·반론청구) (주)○○○○해운 對 매일신문	
조정대상	(1) 『포항~울릉 화물료 제주보다 비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1면), (2) 『부산~제주보다 더 비싼 포항~울릉 화물 요금』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포항-울릉 간 노선 화물료 운항원가가 타 항로에 비해 가장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화물 운반료를 받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해운 포항-울릉 운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2면)

2013서울조정436 (정정청구) 오○○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조정대상	『○○건설 “○○○○○○ 부실시공 논란은 사실 왜곡”』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건설사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진행하고 이를 빌미로 소속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제보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다.
처리결과	취하

2013서울조정437~448 (매체별 정정청구) 신○○ 외 17인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⁴³⁷⁾ , 베타뉴스 ⁽⁴³⁸⁾ , 지디넷코리아 ⁽⁴³⁹⁾ , 뉴스웨이 ⁽⁴⁴⁰⁾ , 뉴스1 코리아 ⁽⁴⁴¹⁾ , 뉴스핌 ⁽⁴⁴²⁾ , Citydaily(시티데일리) ⁽⁴⁴³⁾ , 케이벤처 ⁽⁴⁴⁴⁾ , City(시티) ⁽⁴⁴⁵⁾ , 조선닷컴 ⁽⁴⁴⁶⁾ , 뉴스엔 ⁽⁴⁴⁷⁾ , IT동아 ⁽⁴⁴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모바일 “보조금 먹튀 아니다” 반박,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베타뉴스 : 『○○모바일, ‘보조금 먹튀 아냐’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지디넷코리아 : 『○○모바일 버력 “먹튀 사실아냐... 강경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뉴스웨이 : 『‘먹튀논란’ ○○모바일 “히든보조금 지금 완료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뉴스1코리아 : 『‘200억 보조금먹튀’ 논란 휩싸인 ○○모바일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 뉴스핌 : 『○○모바일 “먹튀논란 사실아냐... 허위사실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Citydaily(시티데일리) : 『○○모바일, ‘보조금 먹튀’ 반박나서...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케이벤처 : 『○○모바일 현재도 정상 운영, ‘먹튀 논란’ 억울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City(시티) : 『‘먹튀 논란’ ○○모바일 발끈』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15면) • 조선닷컴 : 『‘빨간색 글자’에 속은 사람들... ‘○○먹튀’ 사건 전말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 뉴스엔 : 『○○모바일 공식입장 “보조금지급 언급한적 없다,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 IT동아 : 『“우리가 ‘먹튀’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모바일 반박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모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이 언론사에 제보한 피해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헤럴드경제 · 베타뉴스 · 지디넷코리아 · 뉴스웨이 · 뉴스코리아 · 뉴스핌 · 케이벤처 · 뉴스엔 · IT동아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Citydaily(시티데일리) · City(시티) · 조선닷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헤럴드경제 · 베타뉴스 : 『‘보조금 미지급 논란’ ○○모바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3년 7월 11일자, 베타뉴스 7월 9일자) 지디넷코리아 : 『‘보조금 사기’ ○○모바일, 기소의견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뉴스웨이 : 『‘보조금 사기 논란 ‘○○모바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뉴스코리아 : 『경찰, ○○모바일 보조금 사기혐의로 검찰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뉴스핌 : 『‘보조금 미지급 논란 ‘○○모바일’,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케이벤처 : 『‘휴대폰 보조금 사기’ ○○모바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뉴스엔 : 『‘○○모바일 보조금사건 피해자측 “○○모바일 해명,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IT동아 : 『‘○○모바일 피해자 측, “○○모바일 주장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2013서울조정449 (기사별 정정청구) 1. 서울특별시, 2. 안○○ 對 아시아투데이	
조정대상	(1) 『현행 법 무시한 1200억 규모 공사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19면) (2) 『지하주차장 편법 동원... 위태위태한 진입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19면) (3) 『환승센터→주차장' 단감... 도시계획위의 꼼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서울시의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공사 승인과정에서 법규위반과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24시간 이상 게재함
이행 결과	『‘잠실역 환승센터 특혜 의혹’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18면)

2013강원조정7 (정정청구) 춘천시 對 노컷뉴스	
조정대상	『“기자회견 강경진압 소홀” 춘천시, 청원경찰 징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춘천시가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한 시민단체에 유리한 법정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청원경찰을 직위해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 결과	『춘천네트워크, 청원경찰 징계 철회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2013서울조정450 (손배청구) 유○○ 對 MBN	
조 정 대 상	MBN뉴스8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보호 외면』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8일자 20:00)
신청인주장	내부 고발자 보호 소홀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면서 가구납품비리를 고발했다가 업계를 떠나게 된 신청인의 초상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51~452 (매체별 반론청구) (주)에어라인○○○○ 對 채널A,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스튜어디스 특채 보장” 구직자 울리는 바가지 수강료』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일자 21:40) • 인터넷 채널A : 『“스튜어디스 특채 보장” 구직자 울리는 바가지 수강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신청인주장	스튜어디스 학원업계에서 항공사 ‘특채’를 보장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학원의 로고와 내부시설 등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부제소)</p> <p>※ 이행방법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조정대상보도 영상(1분에서 1분 49초)의 배경이 신청인의 관련시설임을 일반 시청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함</p>

2013서울조정453~45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p>(1) 『세종문화회관 9개 예술단 정기공연 26개중 25개 적자』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월 11일자 11면, 인터넷 문화일보 1월 11일자)</p> <p>(2) 『외면받는 세종문화회관 ‘찾아가는 공연’ “무료공연 수준... 누가 보나” 객석 ‘딩딩’』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3월 18일자 13면, 인터넷 문화일보 3월 18일자)</p>
신청인주장	세종문화회관 9개 예술단의 공연수준이 낮아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예술단 정년제도가 적자경영의 주요원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 : [인터넷 문화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 사화면 초기화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08:00부터 24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p>
이 행 결 과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적자 공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5월 3일자 11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3일자)

2013서울조정455~456 (정정·손배청구) 유 ○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막장교육’ 인천 A전문학교 실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의 모 전문학교 대표인 신청인이 학과를 임의로 폐지하는 등 ‘막장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4월 24일 12:00부터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p>
이 행 결 과	『‘인천 A전문학교 부실운영’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013경기조정44~45 (정정 · 손해청구) 1. 양○○, 2. 강○○ 對 dstv(한국교회공보)	
조 정 대 상	『○○교도소, 이번엔 ‘인사바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교도소 직원인 신청인들이 배후 영향력 때문에 승진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457~464, 539~541 이○○ 對 MBN ^(457~458 정정 · 손해청구) , 연합뉴스 ^(459~460 정정 · 손해청구) , 인터넷 헤럴드경제 ^(461~462 정정 · 손해청구) , e머니투데이 ^(463~464 정정 · 손해청구) , iMBC ^(539 손해청구) , Citydaily(시티데일리) ^(540~541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MBN뉴스8 프로그램 『[단독]경찰 간부, 무용 강사 ‘성추행’ 피소... 대기발령 조치』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4일자 20:00) • 연합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경찰 간부, 성추행 미수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3년 4월 4일자,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5일자) • e머니투데이 : 『현직 경찰간부, 女강사 성폭행 미수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5일자) • iMBC : 『현직 경찰 간부, 성추행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 Citydaily(시티데일리) : 『경찰간부, 성추행 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5일자)
신청인주장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이 돈을 노리고 경찰 간부인 피의자에게 접근했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MBN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연합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e머니투데이 · iMBC · Citydaily(시티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65 (손해청구) 이○○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임의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66 (손해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다큐스페셜 프로그램 『대학 5학년, 불편한 청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8일자 23:15)
신청인주장	취업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번)가 노출된 화면을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며, 추후 해당 조치가 되지 않은 영상이 포털(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발견될 경우(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후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p>

2013서울조정467~468 (정정·손배청구) (주)○-○○ 對 채널A	
조정대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골뱅이를 전복으로 속여 제조』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5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골뱅이를 전복으로 속여 죽집 등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469, 47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심재권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도 넘은 ‘북한 감싸기』』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9일자 21:50) • 인터넷 TV조선 : 『이 와중에 일부는 김정은 예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TV조선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VOD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6일자 10:30) • 인터넷 TV조선 :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013서울조정470 (정정청구) 신안군 對 시민일보	
조정대상	『빛낸 혈세로 멀쩡한 도로포장』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8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군민의 혈세로 멀쩡한 도로에 포장 공사를 강행하고, 군 의회에서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빛낸 혈세로 멀쩡한 도로포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14면)

2013서울조정472 (병합) 전○○ 외 2인 對 TV조선 ^(472 손배청구) , 조선일보 ^(473-474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가족, 두 개의 문 프로그램 『완벽한 어머니와 무심한 두 아들』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4일자 20:50) • 조선일보 : 『완벽주의자 어머니와 갈등 겪는 두 아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B11면)
신청인주장	가족관계 치유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가족의 이름, 초상 등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낸 동시에 신청인 가족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인터넷 TV조선 기사삭제, 조선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75~480, 523~528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조선일보 ^(475-477, 523-525) , 조선닷컴 ^(478-480, 526-528)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전쟁 나면 국가 기간방송 역할해야 할 KBS, 무방비로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2면) • 조선닷컴 : 『[3·20 사이버테러] 전쟁 나면 국가 기간방송 역할해야 할 KBS, 무방비로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전쟁이 나면 국가 기간방송 역할을 해야 할 KBS가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로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 2013서울조정475~477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2013서울조정523~525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 2013서울조정478~480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2013서울조정526~528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면) • 조선닷컴 : 『[알려왔습니다] 3월 21일자 A2면 KBS 사이버 테러 대책 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013대전조정22 (손배청구) 김○○ 對 대전MBC-TV	
조 정 대 상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2일자 23:15)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481 (정정청구) ○○○○마루(주) 對 KBS-2TV	
조 정 대 상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급증하는 층간 소음 문제』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KBS 미디어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함, 단 조정대상보도 중 강화마루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음(공식 공급계약에 의해 콘텐츠를 공급하였으나 삭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야 함) ※ 이행방법 : [PR보도] 강화마루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강화마루도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7일자 20:50)

2013서울조정482 (손배청구) 임○○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진단도 치료시기도 놓친 채 치매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인들의 실태』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4일자 20:50)
신청인주장	치매환자를 검사하는 의료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483~484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폭력에 막말까지... 어린이집 모니터링 시급』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3일자 20:00) • SBSi : 『폭력에 막말까지... 어린이집 모니터링 시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급식이 부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485~487 (정정·반론·손배청구) 도○○ 對 일요닷컴	
조 정 대 상	『도○○ ○○○○재단 이사장 산림청 부지 훼손하며 호화 주택 건립 논란 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산림청 부지를 훼손하였고, 이웃 주민과 분쟁 중 폭언을 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자신의 주택 건립과 산림청 부지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산림청 관계부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반론보도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를 거절하여 반론 포기 의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p> <p>※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488~490 (정정·반론·손배청구) 도○○ 對 인터넷 민주신문	
조 정 대 상	『한국의 전통 이웃사촌 문화 짓밟은 ○○○○ 도○○ 이사장 추태』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택을 불법 증·개축해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했으나, 관계 기관의 정식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공사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반론·사과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이 행 결 과	『“도○○ ○○○○ 재단 이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2013서울조정491 (정정청구) 신안군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신안군, 특정단체에 선심성 여행경비지원 말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신안교육청의 교육관련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일간투데이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전국 섹션 내 호남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신안군 신안교육청 사업비지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5일자) • 일간투데이 : 『“신안군 신안교육청 사업비지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14면)
2013서울조정492~493 (정정·손배청구) ○○○○단체총연합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국민훈장 동백장은 4000만 원”... ○○연합 ‘훈·포장 장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부에 훈·포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연합회 훈·포장 장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9일자 12면, 동아닷컴 5월 9일자)
2013서울조정494~49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對 더벨,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벨 : (1) 『○○○○, 경영권 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 『○○○○, 라텍스 가격 급등으로 영업환경 ‘악화’』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e머니투데이 : (1) 『“콘돔1위” ○○○○, M&A 매물로 등장』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2) 『○○○○, 라텍스값 급등, 영업환경 ‘악화’』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전 대표가 회사 매각을 위해 보유 지분 전량과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벨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더벨 무료기사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일 10: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함 • e머니투데이 : [정정보도] 홈페이지 뉴스 산업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일 15: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영권 매각,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2013서울조정498~499 (매체별 손해청구) 최○○ 對 MBC-TV, iMBC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무자식이 상팔자 - 자식 빛에 우는 부모들』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6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무자식이 상팔자 - 자식 빛에 우는 부모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취업준비생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2013광주조정10~1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의료법인 ○○의료재단 對 화순일보, (주)화순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순일보 : 『화순 A의료재단법인 부당급여 수급 의혹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1면), (2) 『A의료재단 ‘기관(허가)취소’ 이뤄질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7면) • (주)화순일보 : (1) 『A의료재단 ‘기관(허가)취소’ 이뤄질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8일자), (2) 『“A의료재단 문제” 진실 제대로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의료재단에서 부당 급여를 수급한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기관 취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순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주)화순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 결과	『화순 A의료재단 부당급여 수급의혹 ‘점입가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4월 29일자 2면, (주)화순일보 4월 27일자)
2013서울조정500~50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KBS-2TV, KBS 미디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2TV : 의뢰인 K 프로그램 『비정한 엄마 - 불법 입양한 딸 학대 사망 사건』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1일자 20:50) • KBS 미디어 : 『[다시보기] 비정한 엄마 - 불법 입양한 딸 학대 사망 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전경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충북조정17~20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인터넷 충북일보,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1) 『○○도립교향악단에 바란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북일보 2013년 1월 21일자, 충북일보 1월 22일자 15면) (2) 『○○도 감사 지적사항도 ‘무시’』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북일보 2013년 1월 29일자, 충북일보 1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재임 당시에 단원 실기 평정을 앞두고 일부 단원들의 레슨을 맡아 평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지역축제 현장에서 물의를 빚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04 (손배청구) 1. 임○○, 2. 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포토] 여의도 드디어 벚꽃에 빠지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상춘객들이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초상용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각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대구조정21 (정정청구) 강석호 對 울진신문	
조 정 대 상	『영덕과 울진발전 차이 수치로 확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5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 신청인이 배부한 의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영덕군에 투입된 사업비 예산이 울진군에 비해 6배나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23~2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김○○ 외 5인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투데이 : 『교사들 사분오열... 천안 ○○○高 파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17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 『교사들 사분오열... 천안 ○○○ 고등학교 파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천안의 고등학교 전교조 교사인 신청인들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편 가르기를 강요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충남지역판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교사들 사분오열... 천안 ○○○高 파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5월 8일자 17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05~512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⁵⁰⁵⁻⁵⁰⁶⁾ , 네이버 ⁽⁵⁰⁷⁻⁵⁰⁸⁾ , 네이트 ⁽⁵⁰⁹⁻⁵¹⁰⁾ , 다음 ⁽⁵¹¹⁻⁵¹²⁾	
조 정 대 상	『“백보고 움직이지 마”...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네이버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삭제 (2013서울중재78~81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오마이뉴스 : 기사삭제 후 1일 이내에 기사전송 관계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게 기사전송 취소를 통보하도록 함

2013경기조정46~49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김포시 對 김포신문, 인터넷 김포신문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포도시철도 입찰, 불법 투성이』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3월 27일자) (2) 『가전제품과 주파수 대역 동일... 사고 위험 높아』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3월 28일자 4면, 인터넷 김포신문 3월 27일자) (3) 『사실 1 김포도시철도 논란, 유 시장 무한 책임져야』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5면, 인터넷 김포신문 3월 27일자) (4) 『김포도시철도 통합발주 이유 ‘인터페이스 때문’ 명분 없다』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4월 4일자 1~2면, 인터넷 김포신문 4월 3일자) (5) 『세계적인 신호회사 간부 A씨 일문일담 “통합발주 인터페이스와 무관... 차량회사 선정 못해 결국 입찰 불참”』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4월 4일자 3면, 인터넷 김포신문 4월 3일자) (6) 『〈사실〉 김포지하철사업단 믿을 수 없다』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4월 4일자 15면, 인터넷 김포신문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열차운영시스템 구매입찰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인터넷 김포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신문 : 『도시철도 관련 김포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2면) • 인터넷 김포신문 : 『[김포 시철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13~514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나는 알고 있다, ○○○ 리스트의 모든 것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3일자 26면)
신청인주장	연예기획사 사장이었던 신청인이 고인이 된 여성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15~51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회 對 KBS-1TV, KBS 미디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집중진단] 훈·포장 돈 거래 의혹... 추천 검증 '허술'』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8일자 21:00) • KBS 미디어 : 『[집중진단] 훈·포장 돈 거래 의혹... 추천 검증 '허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훈·포장을 추천하면서 수상자들과 돈거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PR보도 약속, 유감표명)
2013서울조정517~52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월간조선,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조정대상	『[추적] KBS강태원재단에 무슨 일이... 기부자의 뜻은 간 데 없고 K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용』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3년 4월 1일자 382~397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KBS강태원복지재단을 설립할 당시 기부자 강태원의 뜻과 다른 정관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재단 기금을 KBS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조정대상기사는 언론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p> <p>※ 이행방법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521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정대상	『한국이 시범운영 중인 '중1 진로체험' 현장 가보니 학생들, 체험시간 짧고 재미 못 느껴... 문제집 꺼내 풀기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8면)
신청인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1 진로체험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면서 교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2013서울조정522 (정정청구) ○○○○○(주) 對 MBC-TV	
조정대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어이없는 예산낭비... 가로등보다 비싼 두꺼비집』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9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누전차단기가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검증되지도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반론보도 이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원하며,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공익 목적의 보도로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MBC 정오 뉴스> 프로그램 또는 <MBC 3시 뉴스>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 화면으로 하도록 함</p>

2013서울조정529~53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회복지법인 KBS강태원복지재단 對 월간조선,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조 정 대 상	『[추적] KBS강태원재단에 무슨 일이... 기부자의 뜻은 간 데 없고 K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용』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3년 4월 1일자 382~397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신청인 재단을 설립하고 정관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부자인 강태원 회장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조정대상기사는 언론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531~532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외 2인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1) 『○○대학, “학교 살리자” 개혁요구 교직원 30여명 대량학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 『○○대학 흥○○ 총장 형사기소됐다. 어찌 되려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개혁을 요구하는 교직원 30여명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보도했으나, 그 징계는 적법한 것이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피신청인은 2013년에 4월 27일자로 악의적인 후속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기타 결정사항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네이버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반론보도문이 인터넷 포털에서도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2013서울조정533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KTX 선로 4만 4천여 곳에서 균열 발견』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2일자 20:00)
신청인주장	전라선 KTX 일부구간 콘크리트 선로 균열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레일패드라고 방송했으나, 균열의 원인은 레일패드가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건조수축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정보도가 게재되길 원한다) ※ 기타 결정사항 : SBS-TV에서 반론보도를 이행한 이후에는 SBSi를 통해 반론보도문이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BS 뉴스> (10:30)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534~535 (정정·손배청구) 윤○○ 對 MBC-TV	
조정대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의문의 형집행정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1일자 23:15)
신청인주장	감옥에 수감생활 중이었던 신청인이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주치의로부터 허위의 소견서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을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10~15초간에 걸쳐 표시하도록 함
이행결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의문의 형집행정지』 보도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일자 23:15)
2013서울조정536~538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對 NSP통신	
조정대상	『농수산물유통공사, 콩나물 콩 이상한 발아검사... 수입업체, ○○ 비리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콩나물 콩의 수입과 관련하여 기존 수입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새로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공급포기를 강요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이행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와 정정 및 반론보도문 모두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5월 15일 09:00부터 18:00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 Top2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도록 함
이행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콩나물 콩 수입업무 관련 비리 의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2013충북조정21~22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1. ○○○노인○○병원, 2. ○○의료재단 對 CJB-TV	
조정대상	(1) CJB 8 뉴스 프로그램 『1년 만에 10억 적자』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0일자 20:35) (2) CJB 7 뉴스 프로그램 『1년 만에 10억 적자』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1일자 07:10)
신청인주장	신청인 1 병원이 신청인 2 재단에 위탁된 지 1년 만에 10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약속)
이행결과	(1) CJB 8 뉴스 프로그램 『〈○○○노인○○병원 부정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6일자 20:35) (2) CJB 7 뉴스 프로그램 『〈○○○노인○○병원 부정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7일자 07:10)

2013경기조정50~51 (정정·손배청구) 황○○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수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수천만 원 부당 수령』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 등에 중복 게재하고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 이행방법 :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수천만 원 부당 수령 교내윤리위 적발...” 부분을 “600만원 환수 당해 2년 전 학연위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 교수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600만 원 환수 당해 2년 전 학연위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42 (반론청구) ○○○○발전(주) 對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조 정 대 상	『MB낙하산 “짐싸라”... ‘돈잔치’ 장○○ ○○발전 사장은 ‘영순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임원들이 두둑한 보수를 챙기면서 돈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MB 낙하산 “짐싸라”... ‘돈잔치’ 장○○ ○○발전 사장은 ‘영순위’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2013서울조정543~546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협회노동조합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비리 저질러도 감싸는 노조... ‘신이 숨겨둔 직장’ ○○협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4월 26일자 25면, 동아닷컴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노동조합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동아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협회노동조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8일자 25면, 동아닷컴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47 (기사별 정정청구) 최○○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최○○ 중수부장, 사찰 핵심물증 틀어쥐고 시간 끌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1면) (2) 『상부서 “총선 전 진경락 조사 말라”... 결국 총선 지나 체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민간인사찰 사건 관련 재수사 과정에서 핵심물증을 바로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48		(손배청구) 어○○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오빠인 척 행동” 협박, 교회 가던 어린이 납치』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2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동네의 주택가 전경을 방송에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부산조정4~17		조○○ 對 부산일보 ^(4-5 정정·반론청구) , 인터넷 부산일보 ^(6-7 정정·반론청구, 4-5와 병합) , 국제신문 ^(8-9 정정·반론청구) , 인터넷 국제신문 ^(10-11 정정·반론청구, 8-9와 병합) ,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12-13 정정·반론청구) , iKNN ^(14-15 정정·반론청구) , 사하인터넷뉴스 ^(16-17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인터넷 부산일보 : 『구의원, 조폭 시켜 아파트 허위 유치권으로 수익 원 갈취 시도』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3년 4월 23일자 6면, 인터넷 부산일보 4월 23일자) • 국제신문·인터넷 국제신문 : 『구의원이 조폭 시켜 경매된 아파트 무단 점유』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3년 4월 24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4월 23일자) •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 부산뉴스 6시 프로그램 『구의원, 조폭과 아파트 불법 점유』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5일자 18:00) • iKNN : 『경매 아파트 무단점거 16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 사하인터넷뉴스 : 『조폭 동원해 수익 원 갈취 시도 혐의 건축업자·구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구의원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아파트 유치권을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인터넷 부산일보 :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약속) • 국제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iKNN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사하인터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복간 시 반론보도, 기사삭제)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하인터넷뉴스 : [복간 시 반론보도] 복간 당일부터 2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신문 : 『조○○ 구의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10면) 	
2013광주조정14		(정정청구) 신안군 對 목포신문
조 정 대 상	『신안군, 채무부담행위 위법성 도마』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도로포장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신안군, 채무부담행위 위법성 도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2면)	

2013서울조정549~550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박○○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아동 폭행 감금한 “정부인증” 어린이집?!』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8일자 07:30) • SBSi : 『[다시보기] 아동 폭행 감금한 “정부인증” 어린이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감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51~55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추미애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 첫 부과』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4월 29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로비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추미애 의원 증여세 부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5월 21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5월 21일자)

2013서울조정553 (정정청구) 변○○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변○○, “박원순, 5억 빛에 기부?” 조사 주장, 사실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봉으로 빛은 안 갚고 기부하고 있다고 비난한 내용을 다루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뉴스 정치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2013년 5월 16일 15: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변○○ “박원순, 5억 빛에 기부?” 조사 주장, 사실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2013전북조정13 (정정청구) 국○○ 對 완주군민신문	
조 정 대 상	『국○○ ○○농협조합장, 완주군을 상대로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사회단체의 여론과 다르게, 모두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사기극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 ○○농협조합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2면)

2013서울조정554~556 (매체별 반론청구) 남○○ 對 e머니투데이 ⁽⁵⁵⁴⁾ , 연합뉴스 ⁽⁵⁵⁵⁾ , 뉴스 ⁽⁵⁵⁶⁾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고수의 보장한다” 속여 150억 투자받은 일당』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연합뉴스 : 『“의료기기 투자하면 고수익” 꾀어 150억여 원 챙겨(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뉴스 : 『운동·의료기 고수익 미끼 150억 챙긴 사기범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의료기기 투자금을 유치해 거액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연합뉴스·뉴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지만 이는 추후보도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사회)사건'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 연합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 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사회일반'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의료기기 투자 고수익” 속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연합뉴스 : 『“의료기기 투자 고수익” 꾀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뉴스 : 『“운동·의료기 고수익 미끼 사기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2013서울조정557 (정정청구) 영양군청 對 KBS-2TV	
조정대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영양댐이 이상하다』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0일자 23:20)
신청인주장	영양군청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영양군 공원조성공사 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5일자 22:25)
2013대구조정22 (정정청구) (사)○○○○진흥원 對 경상매일	
조정대상	『본지에 언론 조정신청·손배 요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옥마을 민간위탁사업자인 신청인이 연간 임(전)대료를 경주시가 정한 상한가 보다 6억 1천만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p>
이행결과	『경주 ○○한옥마을 민간위탁자 임대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9일자)

<p>2013서울조정558~565</p>	<p>(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조○○ 對 조선일보⁽⁵⁵⁸⁻⁵⁵⁹⁾, 조선닷컴⁽⁵⁶⁰⁻⁵⁶¹⁾, 온라인 중앙일보⁽⁵⁶²⁻⁵⁶³⁾, 쿠키뉴스⁽⁵⁶⁴⁻⁵⁶⁵⁾</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조선닷컴 : 『남의 아파트 무단입주한 區의원과 조폭』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4월 24일자 14면, 조선닷컴 4월 2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부산경찰, 경매 넘어간 아파트 무단점거·강제집행 방해 16명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 쿠키뉴스 : 『함께 폭력 휘두른 조폭과 구의원, 경매 아파트 무단 점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p>신청인주장</p>	<p>구의원인 신청인이 아파트 경매 낙찰자에게 퇴거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조건부 추후보도] 조정대상기사에서 언급한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 혹은 법원의 재판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후보도를 이행하도록 함 • 쿠키뉴스 : [반론보도] 2013년 5월 24일 15:00까지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함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부산 사하구의원 조모씨 폭행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p>2013대전조정27~30</p>	<p>(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 ○○○○입주자 대표회의 對 인터넷 대전일보, 대전일보</p>
<p>조정 대상</p>	<p>『○○○○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갈등』 제하의 기사 (인터넷 대전일보 2013년 4월 30일자, 대전일보 4월 30일자 14면)</p>
<p>신청인주장</p>	<p>신청인단체가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동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선거인 명단을 조작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p>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p>
<p>이행 결과</p>	<p>『‘○○○○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갈등’ 관련』 제하의 기사 (인터넷 대전일보 2013년 5월 21일자, 대전일보 5월 22일자 14면)</p>
<p>2013대전조정31~32</p>	<p>(정정·손배청구) 송○○ 對 충청신문</p>
<p>조정 대상</p>	<p>『○○쓰레기매립장 지원금 법적 공방 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1면)</p>
<p>신청인주장</p>	<p>지역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피해지원금 선정과정에서 신청인이 통장으로 있는 마을의 불교사찰이 제외되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다른 사찰의 스님이 별개의 사안으로 항의를 제기하는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p>
<p>처리 결과</p>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p>
<p>이행 결과</p>	<p>『‘○○쓰레기매립장 지원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2면)</p>

2013서울조정566~569, 648~651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주)○○○○○○○ 對 한겨레 ⁽⁵⁶⁶⁻⁵⁶⁷⁾ , 인터넷 한겨레 ^(568-569, 566-567과 병합) , 연합뉴스 ⁽⁶⁴⁸⁻⁶⁴⁹⁾ , 인터넷 내일신문 ⁽⁶⁵⁰⁻⁶⁵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인터넷 한겨레 : 『인천 매립지 ‘발암물질’ 수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4월 2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일자)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매립지에 발암물질’ 사실일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화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인터넷 한겨레 : 취하 • 연합뉴스·인터넷 내일신문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매립지 발암물질 고화제 의혹... 공사 “안전 문제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수도권매립지 복토재 “유해물질 검출 안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2013서울조정570~571 (조정·손배청구) (주)○○○ 對 SBS-TV	
조정대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닭, 어디갔나 했더니...』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6일자 20:00)
신청인주장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유통시켜 판매한 불량업체의 적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간판 및 음식 사진에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2013서울조정572 (정정청구) 웹○○연구소 對 전자신문	
조정대상	『한국이란 나라 문을 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1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진행한 정부부처 웹 개방성 평가 프로젝트를 다른 업체가 진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3서울조정573~576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병합) 재단법인 ○○○○○○재단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정대상	『‘학내 성추행’ 불거진 ○○○○대학, 도대체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3일자 5면, 동아닷컴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학내 성희롱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577~58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1) 『평화를 가르치는 교수에 학생들이 분노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3일자 1면, 동아닷컴 5월 3일자) (2) 『‘학내 성추행’ 불거진 ○○○○대학, 도대체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3일자 5면, 동아닷컴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를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52~5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양시 對 안양시민신문, 인터넷 안양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안양하수장 선정 비리, 전자현수막 선정에도?』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3년 5월 6일자 5면, 인터넷 안양시민신문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안양시의 LED 전자게시대 사업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운영 위탁업체가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양시민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안양시 LED 전자게시대 사업’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3년 5월 27일자 5면, 인터넷 안양시민신문 5월 27일자)
2013서울조정581~582 (매체별 반론청구) 손○○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4월 1일자 10면, 조선닷컴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연구비 지원과 실적 과장을 위해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에 게재된 원 조정대상기사에도 기사수정이 반영되도록 함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6월 8일자 10면, 조선닷컴 6월 7일자)

2013부산조정18~19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부산광역시 기장군 對 주간기장신문, 인터넷 기장신문	
조정대상	『김○○, “인기영합 사업에 치중하면…”』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5월 1일자 5면, 인터넷 기장신문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장군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있으며,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특정 군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기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행결과	『[기장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6월 12일자 5면, 인터넷 기장신문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583~58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對 KBS-1TV, KBS 미디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5일자 19:30) • KBS 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산양분유업체들이 산양분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산양유 성분량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KBS 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신청인이 인터넷 포털 및 기타 온라인매체 측에 조정대상보도 및 조정대상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차단을 요청할 시 협조하도록 함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정정 및 반론보도]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 • KBS 미디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방송 다시보기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19:30) • KBS 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일자)

2013서울조정587	(정정청구) (사)○○○○저작권협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노래교실에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31일자 23:10)
신청인주장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주민센터 노래교실의 저작권료를 노래강사나 참가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TV 속의 TV> 프로그램 끝 부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푸른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10초간 방영 하되, 글씨 크기는 일반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보도문의 내용이 전체 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TV 속의 TV 프로그램 『○○○○저작권협회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3일자 12:20)

2013광주조정15	(정정청구) 심○○ 對 뉴스1코리아(광주전남)
조 정 대 상	『‘노부 폭행’ 어버이날에 법정 선 부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노부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88~589	(정정·손배청구) 1. ○○○○연료공업협동조합, 2. 김○○ 對 e중앙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황우석 박사, 드디어 음해의 명예를 벗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특허를 노리고 황우석 박사 연구소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유치하려다 황박사의 거절로 인해 그의 지지카페를 비난카페로 전향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2013년 5월 22일까지 조정대상기사 뿐 아니라 신청인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기사를 더 이상 게재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3년 5월 22일 12: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황우석 박사 대여금 소송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2013서울조정590~59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여성병원 對 CNBNEWS, 인터넷 CNB저널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BNEWS : 『[단독] 강남세무서, ‘○○○○ 여성병원’ 송방망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인터넷 CNB저널 : 『강남세무서, ‘○○○○ 여성병원’ 송방망이 탈세 조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수술횟수를 줄여 신고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통해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CNBNEWS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인터넷 CNB저널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 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여성병원 탈세 조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2013서울조정592~596 (매체별 손해청구) 김○○ 對 티비리포트 ⁽⁵⁹²⁾ , 네이버 ⁽⁵⁹³⁾ , 다음 ⁽⁵⁹⁴⁾ , 네이트 ⁽⁵⁹⁵⁾ , 줌 ⁽⁵⁹⁶⁾	
조 정 대 상	『월 스미스 ‘아리따운 여성팬과 셀카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영화 홍보 차 내한한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와 사진을 찍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비리포트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597~59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진흥원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경주 ○○한옥마을 문 열자마자 소송 휘말려 ‘빠격’』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4월 12일자 14면, 인터넷 서울신문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한옥마을 위탁사업자인 신청인이 경주시의 승인도 없이 마을을 재입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행정> 섹션 내 <지방자치> 섹션 초기 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주 ○○마을 임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5월 30일자 14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30일자)
2013서울조정599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대구소방본부, 휴대폰 역추적... 응급환자 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구소방본부가 휴대폰 역추적으로 응급환자를 살렸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응급상태에 있었던 신청인의 근무처와 집주소 등을 공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0~603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청량리동주민센터 對 일간투데이,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투데이 : 『공무원이 예산 빼내려 계획서 조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15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정신나간 공무원, 예산 빼내려 사업계획서 조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벽화사업 예산을 빼내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조작하여 예산을 부풀리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유감표명,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신청인은 반론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피신청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일간투데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투데이 : 『‘청량리동 벽화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15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청량리동 벽화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2013서울조정604~605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류○○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싸움인 줄 알고 말리려다... 20살 청년 참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8일자 06:00) • SBSi : 『싸움인 줄 알고 말리려다... 20살 청년 참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싸움을 말리려던 20살 청년이 시비를 건다는 오해로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소유의 가게 전경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6~607 (매체별 정정청구) 서초구청 對 일요시사,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시사 : 『공사 좋아하는 ‘리틀 MB’ 터질락 말락 ‘처남 스캔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6~27면) • 인터넷 일요시사 : 『서초구 수백억 건설뇌관 ‘막전막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서초구청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8 (기사별 정정청구) 김○○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직교수 반복적 성희롱 인정하나 해임은 지나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2) 『〈기자수첩〉 문화재청장의 ‘아바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신청인주장	문화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신청인에 대한 학교 측의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행강제금)</p> <p>※ 기타 합의사항 : 향후 신청인이 포털을 통해 검색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후속보도문 (인터뷰기사)을 게시해 줄 것을 포털사에 요청하여 포털사가 피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신청인은 각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함</p> <p>※ 이행방법 : [후속보도] 2013년 6월 5일 10:00까지 홈페이지 문화면에 후속보도문(인터뷰 기사)을 게시함</p>
이 행 결 과	『〈기자수첩〉 문화재청장의 ‘아바타’ 등 관련 반론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2013경기조정54~56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경기신문 ⁽⁵⁴⁾ , 인터넷 기호일보 ⁽⁵⁵⁾ , 인터넷 중부일보 ⁽⁵⁶⁾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신문 : 『오산시의회, 정치색 띤 논쟁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 인터넷 기호일보 : 『오산시 “시정질의서 정치공세” 시의회 “문제 제기를 매도하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오산시장 골프모임 화동, 정치적 비하vs부작절 화동 양론 논쟁』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오산시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회의규칙에서 벗어난 시정질의를 남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신문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기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인터넷 중부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9~611, 947		(매체별 손해청구) 강○○ 對 주간동아 ⁽⁶⁰⁹⁾ , 채널A ⁽⁶¹⁰⁾ , 인터넷 채널A ^(611, 610과 병합) , 인터넷 한겨레 ⁽⁹⁴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동아 : 『진보 지식인들 진짜 그럴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커버스토리면) • 채널A : (1)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인권운동가 고○○, 20대 여성 성희롱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1일자 11:40), (2)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권운동가 고○○, 변태적 관계 요구하며... 성희롱 파문』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1일자 20:00) • 인터넷 채널A : (1) 『[뉴스 와이드] 인권운동가 고○○, 20대 여성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2) 『[종합뉴스] 인권운동가 고○○, 변태적 관계 요구하며... 성희롱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 인터넷 한겨레 : 『인권운동가 고○○ 교수, 트위터로 성희롱 시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트위터 상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동아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채널A · 인터넷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한겨레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612~615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주식회사 ○○건설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벨트월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5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벨트월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처분이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MBC-TV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2013년 6월 16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 [iMBC에 반론보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내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코너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청라○○○○ 안전성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6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청라○○○○ 안전성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2013서울조정616~617 (정정·반론청구) 유한회사 ○○○○○○○○○코리아 對 Gvalley	
조 정 대 상	『독일 치과장비업체 ○○○, 중고 판매 의혹과 무성의한 A/S 로 도마위 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치과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신청인이 중고품을 새 것처럼 판매한 의혹이 있으며 고객의 A/S 요청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광주조정16~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 對 전광일보, 인터넷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담양군 ○○○○○협회 지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전광일보 2013년 5월 13일자 11면, 인터넷 전광일보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속된 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전광일보 : [정정보도] 2013년 5월 27일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전광일보 : 『“○○○○○협회 담양군지회장 공금 횡령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11면) • 인터넷 전광일보 : 『[“○○○○○협회 담양군지회장 공금 횡령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6일자)

2013서울조정618~619 (기사별 추후·손배청구) 1. 송○○, 2. 최○○ 對 한국성결신문	
조 정 대 상	(1) 『계약, 지출 등서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2) 『쓰레기통(?)에 처박힌 한국성결신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3) 『총회 재정비리 사태를 보는 시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2일자 15면) (4) 『총무 당선무효 처리 놓고 임원회 충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2일자1면) (5) 『○○○○○·목사안수식 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620~62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카드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카드 “시장 못 내줘”... 힘 겨루기에 막힌 모바일 교통카드』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3년 5월 14일자 12면, 쿠키뉴스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후불교통카드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모바일터미니 후불결제 서비스 확대』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3년 5월 27일자 15면, 쿠키뉴스 5월 26일자)

2013서울조정624 (정정청구) 재단법인 ○○○○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집단수용 69명 나이-건강상태 등 꼼꼼히 기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10면)
신청인주장	북한에서 강제노역한 국군포로에 관한 기사에 이와 무관한 신청인 재단의 북한 결핵퇴치 활동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재단의 방북활동 사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10면)
2013충북조정23~24 (매체별 정정청구) ○○○○아동보호○○기관 對 충주KBS-1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아동학대, 감시 ‘एं터리’』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9일자 21:00) • KBS 미디어 : 『아동학대, 감시 ‘एं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기관이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의 아동학대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33~3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마을 對 홍주신문, 홍주일보	
조 정 대 상	『보조금 13억여 원만 허공 날린 꼴』 제하의 기사 (홍주신문 2013년 5월 2일자 2면, 홍주일보 5월 5일자)
신청인주장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신청인의 사회복지시설이 건물만 지어진 채 흉물로 방치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625~62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창원시 對 일간스포츠,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스포츠 : 『“NC·KBO·지역민 합의 없인 국비 지원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6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정부, 창원시에 새 야구장 건설 재검토 판정』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가 계획 중인 새 야구장 건립 부지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결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일간스포츠에 후속보도] 후속보도문(인터뷰기사)을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스포츠 : 『“부지 재검토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6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통합창원시에 듣는다 ‘새 야구장 건설 과정과 지향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627, 661, 743, 1045~1046	(매체별 정정청구) 송○○ 對 뉴시스 ^(627, 661, 1045) , 인터넷 JTBC ⁽⁷⁴³⁾ , 인터넷 채널A ⁽¹⁰⁴⁶⁾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1) 『세종○○ 어린이집 교사 원아 폭행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2) 『‘군대 같았어요~’ 세종○○ 어린이집 폭행 ‘폭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 인터넷 JTBC : 『세종○○ 어린이집서 폭행... 교사 부모가 오히려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 인터넷 채널A : 『한 살배기 머리 내리쳐... 세종○○ 어린이집 원아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신청인주장	<p>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상습 폭행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부친인 신청인이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국방부 고위관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차례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 2013서울조정627 - 취하 ▷ 2013서울조정661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2013서울조정1045 - 각하결정 (사유 : 신청인은 2013년 5월 28일 조정대상 기사 (1), (2)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신청인의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는 부적법하다) • 인터넷 JTBC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다시보기 기사삭제, 부제소) • 인터넷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뉴시스·인터넷 채널A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하도록 함 • 인터넷 JTBC : 검찰수사, 노동위원회 조정 및 국방부 민원조치 결과가 종결되면 관련 기사와 정정보도문을 삭제하고 포털에 게시된 JTBC 관련 기사를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뉴시스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함 • 인터넷 JTBC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인터넷 채널A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가족의 피해아동 학부모 협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JTBC : 『“세종시 어린이집 폭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 인터넷 채널A : 『세종○○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서울조정628~629, 641~642	(매체별 조정 · 반론청구) (병합) 김○○ 對 성형외과신문, 주간성형외과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형외과신문 : 『“광대뼈 벌어진줄 알았다면 수술 안했을 것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주간성형외과신문 : 『“광대뼈 벌어진줄 알았다면 수술 안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으로부터 안면윤곽성형(광대뼈)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광대뼈가 벌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30	(손배청구) 박○○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5.18은 ‘폭동’, 진보강연은 ‘중복’... 표면에 떠오른 ‘청년 국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관련 없는 내용의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은 조정대상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조정대상기사는 공익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3서울조정631~639, 733~734	(매체별 추후청구) 최○○ 對 인터넷 경향신문⁽⁶³¹⁾, 동아닷컴⁽⁶³²⁾, MK뉴스⁽⁶³³⁾, e머니투데이⁽⁶³⁴⁾, 인터넷 문화일보⁽⁶³⁵⁾, 한경닷컴⁽⁶³⁶⁾, SBSi⁽⁶³⁷⁾, 인터넷 YTN⁽⁶³⁸⁾, 인터넷 MBN⁽⁶³⁹⁾, YTN⁽⁷³³⁾, 연합뉴스TV(뉴스Y)⁽⁷³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국내산 고급 홍삼 알고봤더니... 중국산 수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동아닷컴 : 『아침에 먹은 홍삼, 혹시 중국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MK뉴스 : 『중국산 수삼을 홍삼으로 속여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e머니투데이 :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中 수삼을 ‘국산홍삼’ 둔갑 제조·유통시킨 60代 델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한경닷컴 : 『중국산 수삼, 국산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SBSi : 『중국산 인삼이 ‘고려 홍삼’ 둔갑... 구별법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인터넷 YTN :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중국산 인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 05:57) • 연합뉴스TV(뉴스Y) : 뉴스 프로그램 『가짜 홍삼 1억 원 어치 판매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 09: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표시하여 판매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MK뉴스·e머니투데이·인터넷 문화일보·한경닷컴·인터넷 YTN·인터넷 MBN·YTN·연합뉴스TV(뉴스Y)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 보도 (2013서울중재82~88, 93~94 참조)]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 SBSi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약속)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닷컴 : [추후보도] 홈페이지 사회란 초기화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2013년 6월 5일 17: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닷컴 : 『[보도문]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판매’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SBSi : 『「중국산 인삼이 ‘고려 홍삼’ 둔갑」 보도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640	(정정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홍합 볶음면의 달인』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3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최초 개발한 홍합 볶음면을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SBSi에 정정보도 게재, SBSi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SBSi : 『380회 방송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일자)

2013서울조정643~64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농업 협동조합 對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일자)

2013서울조정645	(손배청구) 박○○ 對 e뉴조(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신분 숨기고 불륜 저지른 다락방 출신 목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였던 신청인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646~647 (매체별 정정청구) (주)○○○아츠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정대상	『학점은행제 인정 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3월 11일자 14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예술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수강생 모집광고와 달리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휴강이 잦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중앙일보 3월 11일자 학점은행제 인정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013서울조정652~65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조정대상	(1) 『문화재청=성희롱청?』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5월 24일자 11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24일자) (2) 『여학생 성희롱 교수, 알고보니 고위직 女공무원과』 제하의 기사 (인터넷 서울신문 2013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교수인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전 소속 대학교의 상급기관 대표가 신청인을 변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54~659 (매체별 정정청구) ○○○어린이집연합회 ○○○위원회 對 중앙일보⁽⁶⁵⁴⁾, 온라인 중앙일보^(655, 654와 병합), 네이버⁽⁶⁵⁶⁾, 다음⁽⁶⁵⁷⁾, 네이트⁽⁶⁵⁸⁾, 줌⁽⁶⁵⁹⁾	
조정대상	(1) 『살생부 오른 어린이집 교사 “살려달라”』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5월 9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네이버·다음·네이트·줌 5월 9일자) (2) 『어린이집, 집단행동 거두고 투명 운영 나서야』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5월 9일자 34면, 온라인 중앙일보·네이버·다음·네이트·줌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에 협조한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온라인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89~92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중앙일보·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포털에서 이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에 반론보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온라인 중앙일보 :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6월 13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13일자)

2013서울조정660 (정정청구) ○○○○예비역○○○○연합회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제주 4.3’ 진실 왜곡 단체에 국민혈세 지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제주 4.3사건 진실 왜곡 단체이며, 4.3 평화기념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전북조정14~15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순창○○○○○ 對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민일보 : 『순창○○○○○ 간부 2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10면)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 『순창○○○○○ 간부 업무상배임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이사장과 전무가 업무용 부동산과 건물을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강원조정8~9 (정정·반론청구) ○○시체육회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시장배 고교체육대회 ‘선심성 행사’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지역 시장배 고교체육대회를 관련 교육청과 협의 없이 개최한 것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시장배 고교 체육대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2013서울조정662~66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이○○, 2. 금○○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두 돌 안 된 아이까지 특활비... 명목은 베이비 마사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5월 6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의 초상을 몰래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수정)

2013충북조정25~2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보은군청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고의인가, 착오인가. 군민 우롱하는 보은군』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5월 2일자 15면, 인터넷 보은신문 5월 2일자)
신청인주장	보은군이 미국 글렌데일시 전 시장의 방문을 현 시장이 방문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보은신문에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종합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고의인가, 착오인가. 군민 우롱하는 보은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6월 27일자 11면, 인터넷 보은신문 6월 27일자)
2013충북조정27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충청타임즈	
조 정 대 상	『○○ 지역농협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12면)
2013경기조정57~58 (정정·손배청구) ○○농업 협동조합 對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1)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1면) (2) 『○○농협, 농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37~38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 협동조합 對 충남일보, CT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일보 : 『○○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11면) • CTN :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CTN : [반론보도] 2013년 6월 13일 09:00부터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일보 :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보조금 독식”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지역면) • CTN : 『[반론보도]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2013서울조정666~669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건설 對 조선닷컴 ⁽⁶⁶⁶⁾ , TV조선 ⁽⁶⁶⁷⁾ , 동아닷컴 ⁽⁶⁶⁸⁾ , 채널A ⁽⁶⁶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성접대’ 윤○○씨에 로비 받은 혐의... ○○건설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5일자) • TV조선 : (1) 뉴스쇼 판 프로그램 『경찰, ○○건설 압수수색... 성접대 연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21:40) <li style="padding-left: 20px;">(2) 뉴스 9 프로그램 『‘윤○○ 로비 정황’ ○○건설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일자 08:50) <li style="padding-left: 20px;">(3) 뉴스 12 프로그램 『경찰, ○○건설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5일자 11:40) • 동아닷컴 :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씨 ○○건설 사장에 그림 로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 채널A : 아침뉴스 프로그램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건설 사장에 그림 로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9일자 08:10)
신청인주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가 신청인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TV조선 : 저녁뉴스 7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윤○○씨는 ○○건설 대표 맡은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4일자 18:40) • 동아닷컴 : 『[정정보도문]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 씨 ○○건설 사장에 그림 로비 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 채널A : 아침뉴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윤○○ 씨, ○○건설 경영한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7일자 08:10)
2013서울조정670~674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뉴시스 ⁽⁶⁷⁰⁾ , 네이버 ⁽⁶⁷¹⁾ , 다음 ⁽⁶⁷²⁾ , 네이트 ⁽⁶⁷³⁾ , 줌 ⁽⁶⁷⁴⁾	
조정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백 브랜드택시사업, 장비하자 논란에 출발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3일자) (2) 『브랜드택시사업, 약취 진동』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태백시 브랜드택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제안요청서와 달리 저가품을 고가에 납품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삭제 (2013서울 중재95~98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뉴시스 : 2013년 6월 17일 10:00까지 조정대상기사 외 신청인 관련 기사 2건도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함,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공한 관련 기사도 삭제하도록 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함

2013전북조정16~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레저○○주식회사 對 전북중앙신문,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조 정 대 상	『○○○○ ‘친환경 골프장’ 눈가림 영업』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3년 5월 15일자 10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친환경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신청인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 검사결과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전북중앙신문 : 『“○○○○ 친환경 골프장 눈가림 영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10면)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 『“○○○○ 친환경 골프장 눈가림 영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2013서울조정675~676 (정정·손배청구) 송○○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석 달] 가격은 어디? 미용실 ‘꼼수’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매장 전경이 담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677 (손배청구) 김○○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석 달] 가격은 어디? 미용실 ‘꼼수’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장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678 (손배청구) 현○○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석 달] 가격은 어디? 미용실 ‘꼼수’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장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대전조정39~40 (매체별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1) 『○○제약, 음성에 ‘통큰 투자’... ○○○○○차 생산 준비』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5월 20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20일자) (2) 『음료 주력 ○○제약이 혁신형 제약사?』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5월 23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중인 음료 제품의 생산을 위해 충북 음성에 설비투자를 결정했고, 음료 부문을 확대하면서 제약 부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우려가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679~69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SBS-TV ⁽⁶⁷⁹⁻⁶⁸⁰⁾ , SBS ^(681-682, 679-680과 병합) , 네이버 ⁽⁶⁸³⁻⁶⁸⁴⁾ , 다음 ⁽⁶⁸⁵⁻⁶⁸⁶⁾ , 네이트 ⁽⁶⁸⁷⁻⁶⁸⁸⁾ , 줌 ⁽⁶⁸⁹⁻⁶⁹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학기 초에 서열 싸움... 학교 속 ‘교실의 법칙’』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7일자 20:00) • SBSi : 『[다시보기] 학기 초에 서열 싸움... 학교 속 ‘교실의 법칙’』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학기 초에 서열 싸움... 학교 속 ‘교실의 법칙’』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학교 폭력의 일종인 교내 ‘서열 정하기 싸움’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SBSi : 조정성립 (내용 : SBS-TV 유감표명, SBSi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기조정59~6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조○○ 對 연수신문,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조 정 대 상	『노인회 ○○○지회, 경로당 회장 사퇴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3년 3월 12일자 1면,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3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신청인이 지역 내 일반 경로당 회장들의 사퇴를 강요하고, 일부 경로당의 회계장부를 감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에 반론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691 (기사별 손배청구) 김○○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1) 『국정원 ○○ 초청 안보특강, 보수성향 강사들 하는 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2) 『[현장] 국정원 안보 특강 집결지... “나는 ‘○○’ 아니에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초청한 국정원 안보 특강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 하면서 강연에 참석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서 사용한 사진에 나온 신청인의 뒷모습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3서울조정692~69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노동조합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정대상	『○○ 임단협안 투표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3년 6월 3일자 16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을 만들기를 포기하고 이를 사측에 위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3서울조정694~70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YTN ^(694-695, 696-697과 병합) , YTN ⁽⁶⁹⁶⁻⁶⁹⁷⁾ , 네이버 ⁽⁶⁹⁸⁻⁶⁹⁹⁾ , 다음 ⁽⁷⁰⁰⁻⁷⁰¹⁾ , 네이트 ⁽⁷⁰²⁻⁷⁰³⁾ , 줌 ⁽⁷⁰⁴⁻⁷⁰⁵⁾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YTN·네이버·다음·네이트·줌 : 『자격증 ‘우후죽순’... 돈벌이 전락!』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YTN : YTN 뉴스 프로그램 『자격증 ‘우후죽순’... 돈벌이 전락!』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0일자 09:50)
신청인주장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경영 중인 업체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YTN·YTN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YTN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수정 (2013서울 중재99~106 참조)] ※ 기타 합의사항 인터넷 YTN·YTN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이 건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기사수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인터넷 YTN·YTN : [인터넷 YTN 기사수정]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 및 수강생과 관련된 영상 및 음성을 모두 삭제함
2013서울조정706~71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DMZ○○○○○○○ 對 YTN ⁽⁷⁰⁶⁻⁷⁰⁷⁾ , 인터넷 YTN ^(708-709, 706-707과 병합) , 네이버 ⁽⁷¹⁰⁻⁷¹¹⁾ , 다음 ⁽⁷¹²⁻⁷¹³⁾ , 네이트 ⁽⁷¹⁴⁻⁷¹⁵⁾ , 줌 ⁽⁷¹⁶⁻⁷¹⁷⁾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YTN : YTN24 프로그램 『적자투성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3일자 00:00) 인터넷 YTN·네이버·다음·네이트·줌 : 『적자투성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일자)
신청인주장	비무장지대 관련 전시·교육기관인 신청인 단체에 이용객이 매우 적어 전시관에 불을 꺼놓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YTN·인터넷 YTN :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YTN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화면으로 함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YTN : YTN24 프로그램 『적자투성이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3일자 00:00) 인터넷 YTN·네이버·다음·네이트·줌 : 『적자투성이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p>2013서울조정718~725</p>	<p>(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문○○ 외 44인 對 e머니투데이^(718~719), 네이버^(720~721), 다음^(722~723), 네이트^(724~725)</p>
<p>조 정 대 상</p>	<p>『○○○구역 찬성파 “주민투표 실시하라”... 시청 점거농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p>
<p>신청인주장</p>	<p>지역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의 점거농성을 보도하면서 빌라 사업자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빌라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정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 서울중재107~112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e머니투데이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인터넷 포털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매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013년 6월 20일까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08:00부터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구역 재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p>2013서울조정732 (추후청구) 1. 송○○, 2. 최○○ 對 한국성결신문</p>	
<p>조 정 대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지출 등서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2) 『쓰레기통(?)에 처박힌 한국성결신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3) 『총회 재정비리 사태를 보는 시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2일자 15면) (4) 『총무 당선무효 처리 놓고 임원회 충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2일자 1면) (5) 『성결인대회·목사안수식 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1면)
<p>신청인주장</p>	<p>신청인들이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p>
<p>이 행 결 과</p>	<p>『검찰, 송○○ 전 총무 등 무혐의로 결론』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1면)</p>
<p>2013서울조정735~736 (매체별 정정청구) ○○○○예술직업전문학교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p>	
<p>조 정 대 상</p>	<p>『학점은행제 인정 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3월 11일자 14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11일자)</p>
<p>신청인주장</p>	<p>신청인 학교가 연예인에게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p>

2013서울조정737~738 (정정·손배청구) 홍○○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도○○ ○○○○ 재단 이사장 “인신공격·왜곡보도 더 이상 못 참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이웃 주민의 땅을 빼앗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3대구조정23~24 (정정·손배청구) 이○○ 對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막바지 차질』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5면) (2) 『“○○ 토지구획” 조합비 부당수령 추가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5면) (3) 『○○ 토지구획 조합장 불법 토지소유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격 없이 토지구획정리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조합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불법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63~6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청 ○○이 술자리서 더듬고… 뽀뽀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6면) • 인터넷 경기일보 : 『은밀한 손길에 뽀뽀까지... ○○님은 능구렁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일삼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739~742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MBC-TV⁽⁷³⁹⁾, iMBC^(740, 739와 병합), MBN⁽⁷⁴¹⁾, 인터넷 MBN^(742, 741과 병합)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1)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보이지 않는 위협 ‘전자파’ 비상』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06: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전자파 차단물 효과 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19:55) • iMBC : (1) 『‘보이지 않는 위협’ 전자파, 신체에 접촉하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2) 『전자파 차단장치 효과 있을까?... 30cm 이상 거리둬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전자파 차단 필터 효과 ‘제로’』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0일자 20:00) • 인터넷 MBN : 『전자파 차단 필터 효과 ‘제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가전제품의 전자파 노출을 막는 차단필터 제품의 효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744 (정정청구) 김○○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현장] ‘오프라인으로 커밍아웃’ 포르노급 묘사 동인소설, 구민센터서 버젓이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포르노급으로 묘사된 동인소설을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6월 24일까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오프라인으로 커밍아웃’ 포르노급 묘사 동인소설...』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조정745 (정정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對 메디칼타임즈	
조 정 대 상	(1) 『돈줄 움켜진 공단은 수퍼갑 “주는대로 받아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2) 『수가 받고 싶으면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 합의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3) 『“감히 수퍼갑에 대들어!” ○○○은 공단의 든든한 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면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가인하만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일삼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의료사회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013서울조정746~755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뉴시스 ⁽⁷⁴⁶⁻⁷⁴⁷⁾ , 네이버 ⁽⁷⁴⁸⁻⁷⁴⁹⁾ , 다음 ⁽⁷⁵⁰⁻⁷⁵¹⁾ , 네이트 ⁽⁷⁵²⁻⁷⁵³⁾ , 줌 ⁽⁷⁵⁴⁻⁷⁵⁵⁾	
조 정 대 상	『건보공단·○○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제공 11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756~763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연합뉴스 ⁽⁷⁵⁶⁻⁷⁵⁷⁾ , 네이버 ⁽⁷⁵⁸⁻⁷⁵⁹⁾ , 다음 ⁽⁷⁶⁰⁻⁷⁶¹⁾ , 네이트 ⁽⁷⁶²⁻⁷⁶³⁾	
조 정 대 상	『공공기관·기업체 개인정보 불법 심부름센터로 ‘술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2013서울조정764~773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노컷뉴스 ⁽⁷⁶⁴⁻⁷⁶⁵⁾ , 네이버 ⁽⁷⁶⁶⁻⁷⁶⁷⁾ , 다음 ⁽⁷⁶⁸⁻⁷⁶⁹⁾ , 네이트 ⁽⁷⁷⁰⁻⁷⁷¹⁾ , 줌 ⁽⁷⁷²⁻⁷⁷³⁾	
조정대상	『○○·건보공단 직원,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팔아 넘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행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774~781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⁷⁷⁴⁻⁷⁷⁵⁾ , e새한일보 ⁽⁷⁷⁶⁻⁷⁷⁷⁾ , 투데이코리아 ⁽⁷⁷⁸⁻⁷⁷⁹⁾ , 데일리서울파이낸스 ⁽⁷⁸⁰⁻⁷⁸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공공기관 직원, 불법 심부름센터 개인정보 빼내다 덜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e새한일보 : 『공기업 직원 매수 개인정보 빼낸 심부름센터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투데이코리아 : 『건보공단직원 매수 개인정보 빼낸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데일리서울파이낸스 : 『○○·건보공단 직원,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 넘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행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782~791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MK뉴스 ⁽⁷⁸²⁻⁷⁸³⁾ , 네이버 ⁽⁷⁸⁴⁻⁷⁸⁵⁾ , 다음 ⁽⁷⁸⁶⁻⁷⁸⁷⁾ , 네이트 ⁽⁷⁸⁸⁻⁷⁸⁹⁾ , 줌 ⁽⁷⁹⁰⁻⁷⁹¹⁾	
조정대상	『공공기관·기업체 보안 믿을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행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013서울조정792~803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YTN ^(792~793) , 인터넷 YTN ^(794~795) , 네이버 ^(796~797) , 다음 ^(798~799) , 네이트 ^(800~801) , 줌 ^(802~803)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YTN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2:00) • 인터넷 YT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줄줄 새는 개인정보’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5일자 22:00) • 인터넷 YT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줄줄 새는 개인정보’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2013서울조정804~815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MBN ^(804~805) , 인터넷 MBN ^(806~807) , 네이버 ^(808~809) , 다음 ^(810~811) , 네이트 ^(812~813) , 줌 ^(814~815)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직원 매수해 개인정보 빼낸 심부름센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0:00) • 인터넷 MB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직원 매수해 개인정보 빼낸 심부름센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세상의 눈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혐의... 건강보험 공단 직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2일자 09:00) • 인터넷 MB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개인정보 유출 혐의... 건강보험 공단 직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2013년 6월 11일자, 줌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816~819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KBS-1TV, KBS 미디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KBS 뉴스12 프로그램 『○○직원, 300명 개인 정보 유출... 관리 허술』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6일자 12:00) • KBS 미디어 : 『○○직원, 300명 개인 정보 유출... 관리 허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창원KBS-1TV 뉴스 프로그램 『개인정보 심부름센터 제공 4명 구속 기소』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1일자 09:30) • KBS 미디어 : KBS창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심부름센터 제공 4명 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2013부산조정20~23 (기사별 정정 · 손해청구)(병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對 부산KBS-1TV	
조정대상	(1) KBS 뉴스 9 프로그램 『바다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0일자 21:00) (2)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퍼갑의 횡포 사업비 후려치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1:00)
신청인주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잠수용역을 맡겨 정부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7월 3일 <KBS 뉴스 9> 프로그램 및 2013년 7월 4일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행결과	(1)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게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게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4일자 06:00)
2013서울조정820~821 (정정 · 손해청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對 KBS-1TV	
조정대상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바다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1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무자격업체에 잠수용역을 맡겨 정부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게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일자 06:00)
2013대전조정41~4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정대상	『“제자 성추행한 교수 2명 외 성폭행 시도 교수도 있었다”』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5월 10일자 6면, 인터넷 금강일보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신청인이 지난 2008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45~4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이번엔 학위조작?』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5월 31일자 5면, 인터넷 금강일보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학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위와 논문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49~5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 모 미대 교수 ‘백화점식 비리’ 충격』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6월 3일자 15면, 인터넷 금강일보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임용고사 출제위원임을 이용해 사적으로 임용캠프를 운영하고 사전에 문제를 유출 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부산조정24~25 (정정·손배청구) 1. 이○○, 2. 이△△ 對 울산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문화재 망치는 흉물』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2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문화재 망치는 흉물』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3일자 06: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공용땅 개인에게 헌납』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3일자 21:00) (4)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공용땅 개인에게 헌납』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06:00) (5) KBS 뉴스9 프로그램 『서로 남탓 타령만...』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21:00) (6) KBS 뉴스9 프로그램 『서로 남탓 타령만...』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6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문화재 주변에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건축부지에 인접한 하천부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부산조정26~27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총연맹 외 2인 對 한국공업신문	
조 정 대 상	『○○자동차, 망하는 길만 남았다... 이유는 단하나... 노조 때문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총연맹과 금속노동조합 및 소속 지부가 고의적으로 모 자동차 회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0일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노총, ○○노조, ○○자동차지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2013서울조정822 (손배청구) 1. 오○○, 2. 홍○○ 對 KBS-2TV	
조 정 대 상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공포의 살인진드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9일자 18:10)
신청인주장	살인진드기 사망 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유족인 신청인들의 집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인터뷰 내용을 무단 녹음·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50만 원 지급)
2013부산조정28~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남○○ 對 KNN, iKN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N : 8시 뉴스 프로그램 『횡령도 모자라 회사파산까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20:00) • iKNN : 『횡령도 모자라 회사 파산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사장 잠적설 등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취하 (사유 : KNN에 조건부 추후보도 약속, iKNN 기사삭제)</p> <p>※ 이행방법 : [KNN에 조건부 추후보도 약속] 횡령 등 혐의 부분에 대해 무혐의로 밝혀지면 추후보도 하도록 함</p>
2013서울조정823~824 (정정·반론청구) 순천시청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순천시는 낙안읍성 입장료 수입 사용처 공개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순천시가 낙안읍성 입장료 수입과 관련 전횡·횡령·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낙안읍성 보존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p> <p>※ 기타 합의사항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p> <p>※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문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하도록 함</p>
이 행 결 과	『순천시 낙안읍성 입장료 전횡 의혹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경기조정67 (추후청구) 최○○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경찰25시 프로그램 『7년 전 공범』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5일자 23:0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훔친 차량을 알선하여 체포된 것으로 방송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3부산조정32~39</p>	<p>(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인터넷 부산일보⁽³²⁻³³⁾, 인터넷 국제신문⁽³⁴⁻³⁵⁾, KNN⁽³⁶⁻³⁷⁾, iKNN⁽³⁸⁻³⁹⁾</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부산일보 : 『공기업에서 개인 정보가 샌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국제신문 : 『건보공단·○○ 직원 매수 개인정보 빼낸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KNN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0:35) • iKNN :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p>신청인주장</p>	<p>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부산일보·인터넷 국제신문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KNN·iKNN : 각 취하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부산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누설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인터넷 국제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누설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p>2013서울조정825~826</p>	<p>(정정·손배청구) (주)○○아이디어스 對 tvN</p>
<p>조 정 대 상</p>	<p>SNL코리아 프로그램 『신종 사기 “스미싱” 기승... 모바일 청첩장 링크 위장』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일자 23:00)</p>
<p>신청인주장</p>	<p>신종 사기인 ‘스미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상품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후속보도] 2013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도를 하도록 함</p>

2013경남조정16~31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인터넷 경남신문 ⁽¹⁶⁻¹⁷⁾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¹⁸⁻¹⁹⁾ , 인터넷 경남일보 ⁽²⁰⁻²¹⁾ , 인터넷 경남매일 ⁽²²⁻²³⁾ , 인터넷 창원일보 ⁽²⁴⁻²⁵⁾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²⁶⁻²⁷⁾ , 경남인뉴스 ⁽²⁸⁻²⁹⁾ , 모닝뉴스 ⁽³⁰⁻³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남신문 : 『공기업 직원 연루, 개인정보 빼낸 ○○ 불법심부름센터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건보공단·○○ 직원까지 가담… 개인정보 빼내다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인터넷 경남일보 : 『개인정보 빼내기 “어렵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인터넷 경남매일 : 『전국 4천여명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창원일보 :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합니까?” 공공기관·기업체로부터 불법수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전국을 무대로 개인정보 빼 부당 이득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경남인뉴스 : 『“공기업(○○) 직원이 심부름센터 연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모닝뉴스 : 『공기업 직원 낀 불법흥신소 운영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남신문 : 『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처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검찰,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 인터넷 경남일보 : 『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 인터넷 경남매일 : 『[정정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 인터넷 창원일보 :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경남인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모닝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유출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827	(손배청구) (주)○○○○ 對 표면처리저널
조정대상	『자동도금설비에서 대량 불량 발생』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22~23면)
신청인주장	자동도금설비에서 대량 불량이 발생한 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설비의 기계적인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829 (손배청구) 강○○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주말 편법 보조금’ 덕에 ○○○○ 9만9천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신청인주장	휴대폰 편법 보조금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830 (손배청구) 양○○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감춰진 얼굴 누가 핸들을 잡았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9일자 23:10)
신청인주장	뺑소니 교통사고를 보도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831~83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서울특별시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박원순 “적립금 7천억 줄테니 사용기간 연장” 인천시 “당연히 써야할 돈... 말도 안되는 제안”』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5월 14일자 32면, 한경닷컴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의 대가로 7천억 원을 인천시에 재정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경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박원순 서울시장 수도권 매립지 발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6월 25일자 32면, 한경닷컴 6월 25일자)
2013서울조정833 (정정청구) 송○○ 對 데이터넷	
조 정 대 상	『○○○, 컬러 스마트 IC칩 내장 신용카드 상용화 개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컬러 스마트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상용화에 성공한 모 회사를 보도했으나, 이는 신청인 회사가 개발해서 상용화를 시도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834~836, 878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뉴데일리 ⁽⁸³⁴⁾ , 뉴스엔 ⁽⁸³⁵⁾ , 동아닷컴 ⁽⁸³⁶⁾ , 네이버 ⁽⁸⁷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은○○ 前PD는 칼 맞고 박○○은 전전공금 중...』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일자) • 뉴스엔 : 『나꼼수, 강○○ 신○○ 검찰소환 예상 “정치비리 은페카드”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 동아닷컴 · 네이버 : 『은○○ 前 PD ‘식칼 테러’ 50대는 조폭 두목』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 뉴스엔 · 동아닷컴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 113~114, 118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뉴데일리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뉴데일리 : [추후보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2013년 6월 24일까지 추후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데일리 : 『[은○○ 前 PD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2013서울조정837, 879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오마이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검찰소환설’ 신○○, 음모론 피해자가 되선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15, 119 참조)]
2013서울조정838, 880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네이버	
조 정 대 상	『강○○에 엄청난 시련 닥치나... 나꼼수 주장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16, 120 참조)]
2013서울조정839, 881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조 정 대 상	『“은○○ 전 PD 불법대출’ 연예계 뒤흔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17, 121 참조)]

2013서울조정840, 882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네이버	
조 정 대 상	(1) 『○○ 최대 저축은행이 거덜난 까닭』 제하의 기사 (시사인 Live 2010년 10월 25일자, 네이버 11월 3일자) (2) 『저축은행 수사, 핵심은 다 빠졌네』 제하의 기사 (시사인 Live 2012년 7월 9일자, 네이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네이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22 참조)] ※ 이행방법 •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 [추후보도] 2013년 7월 1일부터 추후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 『은○○ 전PD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서울조정841 (손배청구) 이○○ 對 약사신문	
조 정 대 상	『○○제약 리베이트 핵심인물 3명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국내 모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노출하고 특정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40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강원조정10 (정정청구) 윤○○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G1 뉴스 820 프로그램 『중매 뗏가 독촉... '물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4일자 20:35)
신청인주장	장애인단체장인 신청인이 결혼 중매를 대가로 장애인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G1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장애인 단체 중매 뗏가 독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2013부산조정40~41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뇌염을 독감 오진 의료진 3억 배상하라』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3년 6월 7일자 6면, 인터넷 부산일보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한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뇌염 후유증 및 장애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부산일보 기사수정 약속)

2013서울조정842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 대형상가, 관리비 횡령으로 상인 2천여명 피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상가 관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총 600억 원이 넘는 건물 관리비를 횡령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7월 10일까지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 ○○ 대형상가 관리비 횡령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013서울조정843~844 (정정 · 손해청구) 박창식 ○對 구리남양주넷	
조 정 대 상	(1) 『박창식의 정치철학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2) 『‘발’로 뛰는 윤.. ‘말’로 뛰는 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신청인이 구리시의회 등을 무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명)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
2013서울조정845, 1051~1053 (매체별 정정청구) (사)○○신학 및 교회○○○ ○對 e뉴스(뉴스앤조이) ⁽⁸⁴⁵⁾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¹⁰⁵¹⁾ , 컵뉴스 ⁽¹⁰⁵²⁾ , 아이굿뉴스 ⁽¹⁰⁵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뉴스(뉴스앤조이) : 『○○○○, 인적 채신 시동 거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 회원 의무 위반한 22명 징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 컵뉴스 : 『“확실히 옳고 그름 가르는 것이 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아이굿뉴스 : 『○○○○, 다시 한 번 채신 나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목사 안수식이 무자격 · 이단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뉴스(뉴스앤조이) · 아이굿뉴스 : 『[반론보도] ○○신학 및 교회○○○ 목사 안수식 관련』 제하의 기사 (e뉴스(뉴스앤조이) 2013년 6월 24일자, 아이굿뉴스 7월 15일자)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신학 및 교회○○○”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컵뉴스 : 『[반론보도] ○○○○ ‘우리의 입장’ 성명서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p>2013서울조정846, 1054~1055</p>	<p>(매체별 정정청구) ○○○○신학대학원 對 e뉴조(뉴스앤조이)⁽⁸⁴⁶⁾, 컵뉴스⁽¹⁰⁵⁴⁾, 아이굿뉴스⁽¹⁰⁵⁵⁾</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뉴조(뉴스앤조이) : 『○○○○, 인적 채신 시동 거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 컵뉴스 : 『“확실히 옳고 그름 가르는 것이 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아이굿뉴스 : 『○○○○, 다시 한 번 채신 나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 학교가 이름만 학교일뿐 합법적인 학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뉴조(뉴스앤조이)·아이굿뉴스 : 『[반론보도] ○○신학 및 교회○○ 목사 안수식 관련』 제하의 기사 (e뉴조 2013년 6월 24일자, 아이굿뉴스 7월 15일자) • 컵뉴스 : 『[반론보도] ○○○○ ‘우리의 입장’ 성명서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p>2013서울조정847~877, 929~930</p>	<p>채○○ 對 JTBC^(847-848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JTBC^(849 정정청구), 서울신문 Boom(붐)^(850 정정청구), 스포츠 서울닷컴^(851 정정청구), 티브이데일리^(852 정정청구), 온라인 중앙일보^(853 정정청구), 오마이뉴스^(854 정정청구), 엑스포츠뉴스^(855 정정청구), 뉴스핌^(856 정정청구), 인터넷 SBS CNBC^(857 정정청구), 폴리뉴스^(858 정정청구), 인터넷 MBN^(859 정정청구), 인터넷 엠티엔(MTN)^(860 정정청구), 칸슈머타임스^(861 정정청구), 민중의소리^(862 정정청구),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863 정정청구), MK뉴스^(864 정정청구), 조선비즈닷컴^(865 정정청구), TV리포트^(866 정정청구), 인터넷365^(867 정정청구), SSTV^(868 정정청구), etv^(869 정정청구),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870 정정청구), 인터넷 스포츠동아^(871 정정청구), 인터넷 스포츠한국^(872 정정청구), 세계닷컴^(873 정정청구), 인터넷 한국일보^(874 정정청구), 아시아경제닷컴^(875 정정청구), wow한국경제TV^(876 정정청구), 이투데이^(877 정정청구), 인터넷 헤럴드경제^(929 정정청구), Gvalley^(930 정정청구)</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JTBC NEWS 9 프로그램 『집간에 아이들 태운 ○○ 어린이집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3일자 21:00) • 인터넷 JTBC : 『SUV 트렁크 열자 집간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서울신문 Boom(붐) : 『어린이집 집간, SUV 트렁크 집간에서 아이들 우르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스포츠 서울닷컴 : 『어린이집 집간에 보호 장구 없이 아이들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티브이데일리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탑승시켜 귀가?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SUV 트렁크 열자 집간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오마이뉴스 : 『차 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소풍?... 누리꾼들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엑스포츠뉴스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뉴스핌 : 『어린이집 집간, 트렁크 열자 아이들이 웅기종기... 보호장비도 없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SBS CNBC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폴리뉴스 : 『SUV 집간 어린이집 아이들, ‘우르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MBN : 『어린이집 집간 파문, 네티즌 비난 폭발! 원장 해명 들어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어린이집 집간 논란, 아이들을 SUV 트렁크에? ‘안전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슈머타임스 : 『어린이집 짐칸, SUV 트렁크에 ‘우르르’...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민중의소리 : 『어린이집 짐칸, 어이 없는 장면에 ‘당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어린이집 짐칸에 아이들 탑승? “안전장비 하나 없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MK뉴스 : 『어린이집 짐칸 논란, 해당원장 “안전 장치 설치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조선비즈닷컴 : 『어린이집 짐칸 논란 “해당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TV리포트 : 『어린이집 짐칸 논란에 원장 해명 “충격흡수 좌석 2개 설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뷰365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소풍? ‘비난 폭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SSTV : 『어린이집 짐칸 논란, “뒷좌석 개조했다” 해명에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etv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원장 “안전 장치 설치 했다” 해명』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선생님은 좌석에 앉고 아이들은 짐칸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어린이집 짐칸, 아이들을 짐짝같이... ‘누리꾼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세계닷컴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우리 아이가 짐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어린이집 짐칸 파문,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네티즌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사회] 어린이집 짐칸 파문... 원장 해명에도 네티즌 비난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wow한국경제TV : 『어린이집 짐칸 파문,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이투데이 : 『어린이집 짐칸 파문, “아이들은 트렁크에 짐짝처럼... 선생님은 좌석에” 공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어린이집 짐칸 파문, 트렁크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Gvalley : 『어린이집 짐칸 실어 ‘분통’... “어린이집이야? 지옥의집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 인터넷 JTBC : 각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JTBC에 정보보도) • 서울신문 Boom(블)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23~124 참조)] • 스포츠 서울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25~126 참조)] • 티브이데일리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27~128 참조)] • 온라인 중앙일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29~130 참조)] • 오마이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1~132 참조)]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포츠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3~134 참조)] • 뉴스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5~136 참조)] • 인터넷 SBS CNBC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37~138 참조)] • 플리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5~146 참조)] • 인터넷 MBN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7~148 참조)] • 인터넷 엠티엔(MTN)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49~150 참조)] • 컨슈머타임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51~152 참조)] • 민중의소리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53~154 참조)]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43~144 참조)] • MK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55~156 참조)] • 조선비즈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57~158 참조)] • TV리포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59~160 참조)] • 인터뷰365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61~162 참조)] • SSTV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63~164 참조)] • etv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65~166 참조)]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71~172 참조)]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3~174 참조)]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67~168 참조)] • 세계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5~176 참조)] • 인터넷 한국일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69~170 참조)] • 아시아경제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1~142 참조)] • wow한국경제TV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7~178 참조)] • 이투데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9~180 참조)]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81~182 참조)] • Gvalley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9~140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JTBC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JTBC · 인터넷 JTBC : [인터넷 JTBC에 정정보도] 2013년 6월 28일 15:00부터 인터넷 JTBC 뉴스 섹션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되, 그 지속시간은 72시간 이상으로 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JTBC : 『'잠깐에 아이들 태운 ○○ 어린이집 논란' 관련 고침』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013강원조정11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짐칸... “위험해 보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짐칸 논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아이들 좌석으로 최초 출고된 차량”』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경기조정68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짐칸, 어린이집 “좌석으로 개조했다” 해명 ‘논란 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짐칸 논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보자 “선부른 행동 죄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조정883~884		(정정·손배청구) 정○○ 외 2인 對 KBS-1TV
조 정 대 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마을의 맨얼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7일자 22:50)	
신청인주장	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특혜를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885~89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한국은행 對 주간조선 ⁽⁸⁸⁵⁻⁸⁸⁶⁾ , 인터넷 주간조선 ^(887-888, 885-886과 병합) , 조선닷컴 ⁽⁸⁸⁹⁻⁸⁹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조선·인터넷 주간조선 :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3년 6월 10일자 커버스토리면, 인터넷 주간조선 6월 10일자) 조선닷컴 : 『MB맨 김○○ 한은총재의 △△금융자주 봐주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은행이 국내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여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조선·인터넷 주간조선 : [인터넷 주간조선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커버스토리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조선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3년 7월 8일자 16면, 인터넷 주간조선 7월 10일자, 조선닷컴 7월 9일자)	

2013대전조정53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잠깐 논란 “이 모습 어이없어 촬영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대구조정25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잠깐 논란 “아이를 트렁크 짐짝 취급?” 원장 해명 들어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잠깐 논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보자 “선부른 행동 심려끼쳐 죄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조정891~894, 897~898	오○○ 對 전자신문 인터넷^(891-892 정정·손배청구), 네이버^{(893-894, 897-898 기사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인터넷 : 『살인진드기 같은 ‘짜통’제품, 기업 경쟁력 잡아먹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 네이버 : (1) 『살인진드기 같은 ‘짜통’제품, 기업 경쟁력 잡아먹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2) 『○○전자 세계 제패 꿈, 협력사 짜통 제품에 발목』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짜통 전자제품을 불법 유통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895~896	(정정·손배청구) 오○○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전자 세계 제패 꿈, 협력사 짜통 제품에 발목』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짜통 전자제품을 불법 유통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899~90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북○○○○ 對 동아닷컴,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수상한 독서캠페인... ‘단 한 번의 연애’등 22권 변종 사재기 의혹』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3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6월 1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진행한 얼리버드 캠페인이 사재기 수단으로 변질된 캠페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출판물 불법 유통 신고센터가 신청인의 ‘얼리버드 캠페인’에 대해 ‘사재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결론을 내린 후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동아닷컴에 반론보도]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수상한 독서캠페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3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7월 10일자 12면)

2013서울조정903~904 (반론·손배청구) 한국원자력연구원 對 전기신문	
조정대상	『막대한 돈 쏟아붓고도 ‘애물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듀픽, 초임계경수로 등 연구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행결과	『원자력 연구 폐해’ 관련 한국원자력연구원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1면)
2013서울조정905 (정정청구) ○○○○○사업협동조합 對 전자신문 인터넷	
조정대상	『동반성장 역행하는 ○○○ 협동조합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움직임에 역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그리데일리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사업협동조합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2013경기조정69~7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하남시 對 하남신문, 인터넷 하남신문	
조정대상	『부채비율 전국2위 하남시』 제하의 기사 (하남신문 2013년 6월 6일자 7면, 인터넷 하남신문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하남시가 부채비율 전국 2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하남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칼럼·인터뷰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행결과	『‘부채비율 전국2위 하남시’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하남신문 2013년 7월 4일자 7면, 인터넷 하남신문 6월 25일자)
2013서울조정906~907 (정정·반론청구) 유○○ 對 KBS-1TV	
조정대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마을의 맨얼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7일자 22:50)
신청인주장	주민자치단체 회장인 신청인이 거액을 받고 외지인들을 마을 가옥의 세대주로 둔갑시켜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908~912 (매체별 손배청구) 조○○ 對 국민일보 ⁽⁹⁰⁸⁾ , 쿠키뉴스 ^(909, 908과 병합) , 네이버 ⁽⁹¹⁰⁾ , 네이트 ⁽⁹¹¹⁾ , 다음 ⁽⁹¹²⁾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 『쏟아지는 복지정책 수발하느라 현장방문 엄두 못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10면) • 쿠키뉴스·네이버·네이트·다음 : 『위기의 사회복지공무원 “쏟아지는 복지정책 수발하느라 현장방문 엄두 못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사회복지공무원의 심층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교수인 신청인의 논문 내용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실명을 적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쿠키뉴스 기사수정,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국민일보·쿠키뉴스 : 기사수정 내용을 포털에 전송하여 포털기사에도 반영되도록 함
2013서울조정913 (손배청구) 배○○ 對 꼴통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도로교통공단, 감정사자격시험 문제로 책 장사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획·출판하고, 도로교통공단 교육처의 직원이 함께 편찬한 수험서가 일반인에 비공개된 문제를 수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71~72 (정정·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나○○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기사 및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가 재보도 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천 ○○초, ○○형 교육감 현장지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조정914 (반론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철도시설공단 노사관계 파탄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이사장의 독단 경영과 자질 부족으로 신청인 공단의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 ‘철도시설공단 노사관계 파탄 이유는?’ 기사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2013서울조정915 (정정청구) 박원순 對 신동아	
조 정 대 상	『특급호텔보다 비싼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작은 결혼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호 표지, 목차, 82~8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특급호텔보다 비싼 곳에서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르면서 가격인하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호 91면)
2013서울조정916~917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e파이낸셜신문	
조 정 대 상	(1) 『‘○○ ○○병원’ 의료과실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 『‘○○ ○○병원’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과실 사고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 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이슈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 ○○병원 의료과실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918~919 (정정 · 손해청구) 강○○ 외 179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5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굴비를 해풍에 자연 건조하지 않고 소금을 쳐서 냉동하는 방식으로 가공해 보통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920 (손해청구) 박○○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불법 쌍꺼풀 눈썹문신 시술 피부미용업소 20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불법피부미용시술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가게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921~922 (정정·손배청구) 성남시청 對 경제투데이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괴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조폭수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성남시 LH 습격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2013광주조정20 (정정청구) 함평군 對 무등일보	
조 정 대 상	『“○○○산단 추진 재검토히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함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사업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조성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히라 하고 통보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단 추진 재검토히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11면)

2013광주조정21 (정정청구) 광주○○○○고등학교 對 KBC-TV	
조 정 대 상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 『자격증 없는 교사』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4일자 19:1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에서 무자격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7월 11일까지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방송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 『광주○○○○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0일자 19:10)

2013서울조정923~92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재)○○문화재단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세금 먹는 하마, ○○ 예술의전당』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9일자 19:55) • iMBC : 『세금 먹는 하마, ○○ 예술의전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운영하는 예술의전당 재정 적자가 30여억 원에 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925~926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보청기협회 對 SBS CNBC-TV, 인터넷 SBS CNBC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CNBC-TV :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소셜벤처’ 딜○○○, 34만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4일자 19:00) • 인터넷 SBS CNBC : 『소셜벤처’ 딜○○○, 34만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사회적 기업인 딜○○○가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 및 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조정대상보도 및 기사 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3대전조정54~5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오○○ 對 대전투데이, 인터넷 대전투데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투데이 : (1) 『홍성군의원 이권개입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1면) (2) 『홍성군의원님 왜 이리시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오피니언면) (3) 『홍성군의원 관급 공사 개입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1면) (4) 『군민은 안보이고 돈만 보이는 홍성군의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기자수첩면) • 인터넷 대전투데이 : (1) 『홍성군의원 이권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2) 『홍성군의원님 왜 이리시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3) 『홍성군의원 관급 공사 개입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4) 『군민은 안보이고 돈만 보이는홍성군의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홍성군 의원인 신청인이 관급 공사에 개입하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대전투데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 뉴스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도록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홍성군 의원 이권개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대전투데이 2013년 6월 28일자 2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6월 27일자)
2013대전조정58~5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태안미래신문, i태안미래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특산물판매장 불법 ‘수두룩’』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3년 5월 30일자 1면, i태안미래 5월 29일자) (2) 『해녀법인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3년 6월 6일자 사회경제면, i태안미래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해녀법인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i태안미래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뿐만 아니라 『화력, 영수증 한 장 받고 3억여 원 지급』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 기사에 대해서도 파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 이행방법 : [i태안미래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인물·사회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미래신문 : 『○○ 특산물 판매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4일자 2면) • i태안미래 : 『[○○ 특산물 판매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경기조정73~7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사회복지공무원 증원·보호장치 있어야』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6월 12일자 23면, 인터넷 경기일보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사회복지공무원의 심층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교수인 신청인의 논문 내용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실명을 적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3면)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013경기조정77~8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조○○ 對 인천일보,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아파트 聯 전·현직 회장 區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3년 6월 6일자 15면, 인터넷 인천일보 6월 6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인 신청인이 해당 구청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81~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박○○, 2. 김○○ 對 미디어와이,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와이 : 『화성에서 수십억대 아파트 하자보수금 분쟁』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뉴스1 코리아 : 『화성시 아파트, 수십억대 ‘하자보수금’ 어디로 갔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현직 대표인 신청인들에게 횡령혐의 등이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와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뉴스1 코리아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와이 :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와이 : 『[화성시 ○○동 ○○차 아파트 하자보수금] 관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경남조정32 (반론청구) 황○○ 對 함안신문	
조 정 대 상	『주택단지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근 돼지 100여 마리 폐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 중인 주택단지 현장소음으로 인해 인근 농장의 돼지 1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주택단지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근 돼지 100여마리 폐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5면)

2013서울조정927~928, 948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현직 경찰관과 민원인 ‘먹살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파출소장인 신청인이 수렵용 총기 수령과정에서 민원인의 먹살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전국면의 주요 뉴스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현직 경찰관 민원인 먹살시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2013광주조정22~2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주)○○○○○○○○ 對 광주타임즈, 인터넷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타임즈 : (1) 『진도군, 태양광발전 사업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7면) (2) 『‘특혜논란’ 진도 태양광사업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9면) (3) 『특정업체, 특혜 위한 ‘짜 맞추기 행정’ 비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8면) (4) 『진도군, 멋대로 행정 “심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1면) (5) 『진도 태양광 발전사업 전면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9면) • 인터넷 광주타임즈 : (1) 『진도군, 태양광발전 사업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 『‘특혜논란’ 진도 태양광사업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3) 『특정업체, 특혜 위한 ‘짜 맞추기 행정’ 비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4) 『멋대로 행정 “심하다” 비난... ‘허위 공문서, 특정회사 결탁’ 수사 시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5) 『진도 태양광 발전사업 전면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유명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광주타임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진도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3년 7월 5일자 4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7월 4일자)

2013광주조정26~2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 對 주간진도신문, 인터넷 주간진도신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진도신문 : (1) 『태양광발전 및 LED 조명사업... 특혜이자 ‘폭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1면) (2) 『태양광 발전 및 LED조명사업에 대한 박○○의원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8면) (3) 『태양광 사업, 진도군의 이상한 행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1면) (4) 『태양광 사업, 언론플레이 시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2면) (5) 『[기획] 민선5기, 군정 막장 드라마 제1화 - 태양광사업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3면) (6) 『막장드라마 기사화... 이군수 낙선운동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6면) • 인터넷 주간진도신문 : (1) 『태양광발전 및 LED 조명사업... 특혜이자 ‘폭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2) 『태양광 사업, 진도군의 이상한 행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3) 『태양광 사업, 본격적인 언론플레이 시작되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4) 『[기획] 민선5기, 군정 막장 드라마 제1화 - 태양광사업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0일자) (5) 『막장드라마 기사화... 이군수 낙선운동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6) 『태양광 협정 “세상에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진도군이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931		(정정청구) 주식회사 ○○종합건설 對 KBS-1TV
조정대상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거실이 흰히 보이는데 건축허가 문제없다고요?』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8일자 18:5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4개 동만 짓기로 아파트설계허가를 받았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1개 동을 추가로 건축해 8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 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	
이행결과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아파트 사생활침해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6일자 18:55)	
2013서울조정932		(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삐 풀린” 공무원들의 성추행 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2) 『“나사 풀린” 양주시 공무원, 여직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유감표명,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933, 949~950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 주식회사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탄산수 제조기 소다○○○ 행세 ‘소다○○○○’ 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 · 판매하는 탄산수 제조기가 타 업체제품의 모방품이며 정체불명의 탄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934~937, 1200~1206	변○○ 對 한겨레 ^(934-935 정정 · 손해청구) , 인터넷 한겨레 ^(936-937 정정 · 손해청구, 934-935와 병합) , 노컷뉴스 ^(1200 정정청구) , 뉴스엔 ^(1201 정정청구) , 인터넷 스포츠조선 ^(1202 정정청구) , CNBNEWS ^(1203 정정청구) , 엑스포츠뉴스 ^(1204 정정청구) , 오에스이엔(OSEN) ^(1205 정정청구) , 조선닷컴 ^(1206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과 아무개』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4월 22일자 30면, 인터넷 한겨레 4월 21일자) • 노컷뉴스 : 『BBC, ○○○ 초청 ‘퍼포먼스’ 전면 취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 뉴스엔 : 『[단독] ○○○, 英 BBC 섭외 ‘거지여왕 퍼포먼스’ 전면 취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 英 BBC 섭외 전면취소... “父 논란 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CNBNEWS : 『○○○, BBC 초청 ‘거지여왕 퍼포먼스’ 부친논란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엑스포츠뉴스 : 『○○○, 친부 박○○ 논란부터 BBC 행사 취소까지... ‘힘든 한 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 오에스이엔(OSEN) : 『○○○, BBC 방송취소? “드릴 말씀 없다” 당혹』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조선닷컴 : 『○○○의 ‘거지여왕’ 퍼포먼스 초청... “英 BBC ‘전면취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모 방송인이 부친의 생존을 부인한 데 대해 신청인은 부친 생존설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방송인의 초청 행사를 열거자 했던 BBC에 관련된 항의 이메일을 보내 그 행사를 무산시켰다고 보도했으나 BBC는 해당 방송인을 초청한 바 없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정정보도, 부제소) • 노컷뉴스 · 뉴스엔 · 인터넷 스포츠조선 · CNBNEWS · 엑스포츠뉴스 · 오에스이엔(OSEN) · 조선닷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오피니언 사실 · 칼럼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조건부 정정보도] 추가취재를 통해 조정대상기사에 언급된 ‘BBC ○○○ 초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한겨레 및 인터넷 한겨레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2013년 7월 31일까지 게재하도록 함 (단, 2013년 7월 31일 이후에 밝혀질 경우, 사실관계가 밝혀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1) 『“○○○과 아무개의 경우’ 칼럼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33면), (2)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반론] ‘○○○과 아무개의 경우’ 칼럼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0일자) • 노컷뉴스 : 『“BBC, ○○○ 초청 ‘퍼포먼스’ 전면 취소”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뉴스엔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CNBNEWS : 『“○○○, 비비시(BBC)로부터 행사초청을 받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엑스포츠뉴스 : 『[정정] “○○○, 친부 박○○ 논란부터 BBC 행사 취소까지... ‘힘든 한 주”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 오에스이엔(OSEN)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었다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조선닷컴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

2013서울조정938~94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對 뉴스1 코리아 ⁽⁹³⁸⁻⁹³⁹⁾ , KNS뉴스통신 ⁽⁹⁴⁰⁻⁹⁴¹⁾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⁹⁴²⁻⁹⁴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 코리아 : (1) 『인천시, ‘○○복지회 파행 운영 방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2) 『“○○사회복지법인 비리 의혹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KNS뉴스통신 : 『“인천 H복지법인 불법 매매 의혹’ 제기... 인천시, 알고도 묵인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천시, ‘○○복지회 파행 운영 방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 코리아·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각 취하 (사유 : 인터뷰기사 게재) • KNS뉴스통신 : 취하 (사유 : 인터뷰기사 및 사과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 코리아·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복지회 운영 불법 없어... 거짓 민원에 큰 피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KNS뉴스통신 : 『○○복지회, 정상적인 대표자 승계 불법 법인 매매로 호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2013서울조정944 (정정청구) 경북공관리소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난장판 된 경북공의 밤... “야간개장 상설화 · 관람객 제한” 목소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면)
신청인주장	경북공 야간개장 행사 중에 일부 관람객이 근정전 앞까지 돛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먹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난장판 된 경북공의 밤”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3면)
2013서울조정945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인터넷 스페셜경제	
조 정 대 상	『최○○ ○○제약 회장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헛구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제약회사가 의약품 연구개발은 소홀히 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음료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946 (정정청구) 오○○ 외 11인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보험개발원 ‘AOS’ 독점체제 무너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자동차 관련 연합회 이사장인 신청인들이 간담회 명분으로 제주도에 모여 연합회장의 회장추대나 위로금 전달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자동차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자동차○○○○연합회 제주간담회”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2013대전조정60~6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태안군○○기계연합회 對 태안신문, 인터넷 태안신문	
조 정 대 상	『태안군○○기계협회, 표준 약관 준수 요구하며 집단행동 돌입』 제하의 기사 (태안신문 2013년 6월 6일자 2면, 인터넷 태안신문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명분 없는 집회를 열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태안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전체기사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태안군○○기계협회, 표준 약관 준수 요구하며 집단행동 돌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태안신문 2013년 7월 11일자 2면, 인터넷 태안신문 7월 5일자)

2013광주조정30 (정정청구) 1. 윤○○, 2. 윤△△ 對 목포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공사 본격화』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5일자 21:30)
신청인주장	강진 다산유물전시관의 건축양식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 대표와 강진군이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KBS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공사 본격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2일자 21:30)

2013전북조정20~2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여객자동차(주) 對 전주매일, 인터넷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매일 :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9면) • 인터넷 전주매일 : 『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임원들 출퇴근 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을 임원들의 개인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전주매일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9면) • 인터넷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951~952 (정정·손배청구) 이○○ 對 YTN 사이언스TV	
조 정 대 상	김생민의 프로파일 프로그램 『굿을 둘러싼 진실공방』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1일자 00:00, 6월 23일자 02:00)
신청인주장	무속인인 신청인의 주거지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고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향후 조정대상보도를 재방송하지 않고, 포털 사이트나 YTN 사이언스TV가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해당 영상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953~970, 1103~1122	김○○ 對 연합뉴스 ^(953-954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서울신문 ^(955-956 정정·손배청구) , SBS ^(957-958 정정·손배청구) , 노컷뉴스 ^(959-960 정정·손배청구) , 동아닷컴 ^(961-962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MBN ^(963-964 정정·손배청구) , EBS 뉴스 ^(965-966 정정·손배청구) , SSTV ^(967-968 정정·손배청구) , 뉴데일리 ^(969-970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YTN ^(1103 정정청구) , 뉴시스 ^(1104 정정청구) , 데일리안 ^(1105 정정청구) , 뉴스핌 ^(1106 정정청구) , 뉴스엔 ^(1107 정정청구) , 이투데이 ^(1108 정정청구) , 오마이뉴스 ^(1109 정정청구)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1110 정정청구) , 아시아경제닷컴 ^(1111 정정청구) , 스포츠서울닷컴 ^(1112 정정청구) , 엑스포츠뉴스 ^(1113 정정청구) , 민중의소리 ^(1114 정정청구) , 인터넷 문화일보 ^(1115 정정청구) , 세계닷컴 ^(1116 정정청구) , 인터넷 헤럴드경제 ^(1117 정정청구) , wow한국경제TV ^(1118 정정청구) , 한경닷컴 ^(1119 정정청구) , 컨슈머타임스 ^(1120 정정청구) , 폴리뉴스 ^(1121 정정청구) , 뉴스한국닷컴 ^(1122 정정청구)
-------------------------------	---

조정대상

- 연합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원장도 영장』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2)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동영상] 때리고…던지고…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CCTV 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SBS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원장도 폭행”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 노컷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SNS고발부터 불구속 입건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영아 폭행” 부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원장은 영장 기각』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동아닷컴 : (1) 『부산 어린이집 교사, 17개월 된 아이 피멍 들도록…』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원장에게 맞은 원생 더 있다”…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인터넷 MBN : 『“맞은 아이들 더 있다”…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EBS 뉴스 : 『부산 어린이집 교사가 17개월 아기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SSTV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생후 17개월 아이 때려 ‘불구속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뉴데일리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들어서 생후 17개월된 여아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인터넷 YTN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원장 폭행 여부 수사』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원장, 교사 영장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뉴시스 : (1) 『17개월 여아 폭행 부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3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맞은 아이 더 있다’…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3) 『“부산 어린이집 원장도 원아 학대” 학부모들 탄원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4)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데일리안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에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아 기르라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천인공노 부산 어린이집 원장 알고보니 상습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뉴스핌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원장 때리는 것 봤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뉴스엔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가장 연약한 아기를 어떻게’ 공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이투데이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17개월 아기 등에 피멍… 네티즌 “내 아이 이제 어디에 맡기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맞은 원생 더 있다”…경찰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3)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 : 『“때리고, 꼬집고...” 부산 어린이집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수사 확대…“원장도 때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원장도 때렸다”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교사가 17개월 여자 자주 운다고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엑스포츠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CCTV 확보에 여교사 징징대 짜증나서 때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민중의소리 : (1) 『경찰 “부산 어린이집 원장도 때렸다” 진술 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 『부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영장 신청.. 피해자 4명으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부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 원장외 다른 교사도 가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세계닷컴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원장도 폭행 가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피해자 아동 4명으로 늘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17개월 여아를 무참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부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원장도 폭행”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 wow한국경제TV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피해아동 아빠 “짐승만도 못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충격’.. “우리 아이는 괜찮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한경닷컴 : 『부산 어린이집 교사들, 17개월 여아 폭행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컨슈머타임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교사가 17개월 아기를 ‘피명’ 들도록...』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폴리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교사 ‘17개월 여아’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피해 어린이 아빠 “짐승만도 못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뉴스한국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CCTV 화면 봤더니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p>신청인주장</p>	<p>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 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인터넷 서울신문·SBSi·노컷뉴스·동아닷컴·인터넷 MBN·EBS 뉴스·SSTV·뉴데일리 : 각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YTN · 뉴시스 · 데일리안 · 뉴스핌 · 뉴스엔 · 이투데이 · 오마이뉴스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아시아경제닷컴 · 스포츠서울닷컴 · 엑스포츠뉴스 · 민중의소리 · 인터넷 문화일보 · 세계닷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wow한국경제TV · 한경닷컴 · 컨슈머타임스 · 폴리뉴스 · 뉴스한국닷컴 : 각 취하 (알림기사 게재) ※ 이행방법 • 연합뉴스·인터넷 서울신문·SBSi·노컷뉴스·동아닷컴·인터넷 MBN·EBS 뉴스·SSTV·뉴데일리 : [알림기사]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SBSi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노컷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동아닷컴 : 『[조정합의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인터넷 MBN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EBS 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SSTV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뉴데일리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인터넷 YTN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 뉴시스 : 『[알림] ‘부산어린이집 폭행 사건 수사’ 기사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데일리안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뉴스핌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뉴스엔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이투데이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오마이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엑스포츠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민중의소리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0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세계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wow한국경제TV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한경닷컴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0일자) • 컨슈머타임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폴리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뉴스한국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

2013서울조정971~97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서○○ 對 관악뉴스, 인터넷 관악뉴스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뉴스 : (1) 『관악 ○○○○ 아파트 內 분쟁 ‘뜨거운 감자’ 대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1면), (2) 『아파트 비리 문제 서울시 ‘감사철회’ 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7면) • 인터넷 관악뉴스 : 『관악 ○○○○ 아파트 內 분쟁, ‘뜨거운 감자’ 대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 전 부녀회장인 신청인이 회장 연임을 위해 회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이행결과	『관악 ○○○○ 아파트 분쟁의 실제, 부녀회장 D씨 “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제하의 기사 (관악뉴스 2013년 7월 31일자 1~2면, 인터넷 관악뉴스 7월 23일자)

2013서울조정975~97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창원시청 對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서울 : 『창원시 ‘유령보고서’로 진해 선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3면) • 스포츠서울닷컴 : 『[단독] 창원시, 미완성 재조사로 신축야구장 선정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창원시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재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야구구단인 NC의 신축구장 부지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스포츠서울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서울 : 『“창원시 ‘유령보고서’로 진해 선정”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3면) • 스포츠서울닷컴 : 『[“창원시 ‘유령보고서’로 진해 선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2013서울조정977 (정정청구) ○○○○○운전전문학원연합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합격을 90%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4일자 22:50)
신청인주장	합격률이 높은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시험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978 (손배청구) 최민희 對 IPF 국제방송	
조 정 대 상	『민주당 여자의원 최민희에 항의합시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에게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979 (손배청구) 1. 김○○, 2. 김△△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TV조선 뉴스 7 프로그램 『출소 20일 만에 또 소매치기』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9일자 07:30)
신청인주장	범죄관련 보도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직원의 얼굴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별 각 손해배상 50만 원,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경기조정85~96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對 기호일보 ⁽⁸⁵⁻⁸⁶⁾ , 인터넷 기호일보 ⁽⁸⁷⁻⁸⁸⁾ , 수도권지역뉴스 ⁽⁸⁹⁻⁹⁰⁾ , 인천뉴스 ⁽⁹¹⁻⁹²⁾ , 한국기자연대 ⁽⁹³⁻⁹⁴⁾ , 연에스포츠포츠방송 ⁽⁹⁵⁻⁹⁶⁾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일보 · 인터넷 기호일보 : 『인천시 불법적인 사회복지법인 매매 눈감아 줬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6월 5일자 3면, 인터넷 기호일보 6월 5일자) • 수도권지역뉴스 :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온갖 비리에 휘말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천뉴스 : 『○○복지회 파행, 인천시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한국기자연대 : 『○○복지회 불법매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연에스포츠포츠방송 : 『“○○사회복지법인 비리의혹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일보 · 인터넷 기호일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수도권지역뉴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인천뉴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한국기자연대 · 연에스포츠포츠방송 : 각 취하 (사유 : 인터뷰기사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일보 · 인터넷 기호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7월 15일자 2면, 인터넷 기호일보 7월 14일자) • 수도권지역뉴스 : 『건설사 기자회견에 대한 ○○복지법인 입장 표명』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 인천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한국기자연대 : 『○○복지회 법리 논쟁 하자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연에스포츠포츠방송 : 『“○○복지회 법리 논쟁 하자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980~981	
(정정 · 손배청구) (사)○○주유소협회 對 e파이낸셜신문	
조정대상	『정부 보조금에 눈먼 ‘○○주유소협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려고 이 과정에서 폐업 주유소 통계 및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p>
이행결과	『[반론보도] ‘○○주유소협회’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013강원조정12~15		(매체별 반론·손배청구) (병합) 김○○ 외 3인 對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3년 6월 12일자 12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잘못 보도 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4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에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지역-평창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12면)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013서울조정982		(반론청구) ○○상조○○○(주) 對 상조뉴스
조 정 대 상	『○○상조공제조합, 부산 소재 ○○○ 폐업 고객 피해보상 돌입』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모 상조회사의 기존 회원들이 해당 법인을 인수한 신청인 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상조종합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주)○○○ 폐업 관련 ○○상조○○○(주)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8일자)	
2013서울조정983		(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관찰카메라 24시간 프로그램 『하룻밤의 힐링, ○○ 캠핑장 24시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8일자 19:00)	
신청인주장	캠핑장의 24시를 관찰하여 그 안에서의 일상을 담아 보도하면서 신청인 가족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각 포털에 신청인들이 나온 부분이 삭제된 보도를 다시 전송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2013년 7월 19일까지 해당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들이 나온 부분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984		(반론청구) (사)한국○○○○협회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 부수조작 의혹 없다면 자료 공개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2010년 종편방송사업자 신청당시 일부 신문사의 발행부수보고를 받지 않는 등 부수 조작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협회 부수조작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2013충북조정28~2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보은군청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보은군의 고집스런 ‘성과 부풀리기’』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5월 9일자 11면, 인터넷 보은신문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보은군이 미국의 한 환경단체의 방문 체험단 규모를 부풀리는 등 성과를 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보은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보은군의 고집스런 성과 부풀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7월 25일자 11면, 인터넷 보은신문 7월 25일자)	
2013충북조정30~3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보은사람들, 인터넷 보은사람들
조 정 대 상	『보안등 교체사업 몸통 있을까』 제하의 기사 (보은사람들 2013년 6월 6일자 3면, 인터넷 보은사람들 6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을 낙찰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보은사람들에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사람들 : 『“보안등 교체사업 몸통 있을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2면) 	

<p>2013광주조정31~38</p>	<p>(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외 4인 對 광주in⁽³¹⁻³²⁾, 인터넷 광주타임즈⁽³³⁻³⁴⁾,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³⁵⁻³⁶⁾, 광주KBS-1TV⁽³⁷⁻³⁸⁾</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in : 『[광주앨범업체] ‘1원 입찰’ 이어 가격담합 시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 인터넷 광주타임즈 : 『광주 앨범업체 담합 해마다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광주 앨범업체 ‘가격인상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6일자) • 광주KBS-1TV : KBS 뉴스 9 프로그램 『광주 초중고 졸업앨범 가격 급등... 담합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7일자 21:00)
<p>신청인주장</p>	<p>학교 앨범을 제작하는 신청인들이 가격담합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in · 인터넷 광주타임즈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광주KBS-1TV : 조정불성립결정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in · 인터넷 광주타임즈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이후 48시간 동안 게재함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in : 『[반론보도문] <광주앨범업체 ‘1원’ 입찰 이어 가격담합 시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 인터넷 광주타임즈 · 광주타임즈 : 『<반론보도> “광주 앨범업체 담합 해마다 골머리” 관련』 제하의 기사 (인터넷 광주타임즈 2013년 7월 14일자, 광주타임즈 7월 15일자 8면)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반론보도문] “광주 앨범업체 ‘가격인상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p>2013서울조정985~986, 1061~1062</p>	<p>(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동아일보⁽⁹⁸⁵⁾, 동아닷컴^(986, 985와 병합), 쿠키뉴스⁽¹⁰⁶¹⁾, 헬스포커스뉴스⁽¹⁰⁶²⁾</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말기암 어머니 영터리치료 한의사... 어찌해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A12면) • 동아닷컴 : 『[窺] “말기암 어머니 영터리치료 한의사... 어찌해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 쿠키뉴스 : 『“유방암 말기환자에 부항 뜨고 달군 볼트로 지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 헬스포커스뉴스 : 『한의사 말기유방암 치료법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p>신청인주장</p>	<p>한의사인 신청인이 유방암 말기환자에 부항을 뜨고 달군 볼트로 지지는 등 엽기적인 치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쿠키뉴스 · 헬스포커스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키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헬스포커스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본보 6월 20일자 A12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7월 19일자 A31면, 동아닷컴 7월 19일자) • 쿠키뉴스 : 『[반론보도] “유방암 말기환자에 부항뜨고 달군 볼트로 지저”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 헬스포커스뉴스 : 『[“한의사 말기유방암 치료법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2013서울조정987~988 (정정·손배청구) 도○○ 對 주택뉴스	
조정대상	『도○○ 이사장, 외국인 A씨와 주차장 시비 취재방향』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재단 이사장인 신청인이 자택 주차장 앞 소방도로에 주차금지 푼말을 설치해서 이웃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홈페이지 상의 권○○(신청인 배우자) 관련 제보 안내는 2013년 7월 11일 09:00까지 삭제하고, 분쟁당사자 간 대승적 화해를 위해 신청인 건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평하게 보도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도○○ ○○○재단 이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2013부산조정42~44 김○○ 對 울산매일 ^(42-43 정정·손배청구) , UBC ^(44 정정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매일 : (1) 『한통 우편물로 시작된 악몽... 남 일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5면), (2) 『‘병원비 폭탄’ 억울한 시민에 검찰도 도움 손길 내밀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5면) • UBC : u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스치지도 않았는데.. 치료비까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8일자 20:1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가해자의 자전거와 별다른 접촉 없이 넘어졌음에도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매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UBC : 취하
이행결과	• 울산매일 : 『“한통 우편물로 시작된 악몽... 남 일 아니다”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5면)
2013부산조정45~4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한국기독교신문,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독교신문 : 『무혐의 판결 난 임○○ 장로, ○○교회 수습국면 들어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0일자 7면) •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 : 『검찰 무혐의 통보 받은 임○○ 장로, 하단교회 수습국면 들어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교회 당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에 체결된 협약서가 없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신청인이 협약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989~990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1. ○○○○(주), 2. 권○○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정 대상	(1) 『‘○○ 압박’ 권○○ ○○○○○○ 회장 노림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1일자) (2) 『‘○○ 비방’ 권○○ ○○○○○○ 회장 철퇴 사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3) 『‘주민생계 위협’ 권○○ ○○○○○○ 대표의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와 국내의 한 대기업이 추진했던 리조트 합작사업의 결렬 사유와 결렬 이후의 법적 분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수정] 각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을 삭제하도록 함
이행 결과	『‘○○○○-○○’ 관련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서울조정991~994	
(매체별 반론청구) (사)○○어린이집○○○회 對 인터넷 서울신문 ⁽⁹⁹¹⁾ , 인터넷 경향신문 ⁽⁹⁹²⁾ , 인터넷 위클리오늘 ⁽⁹⁹³⁾ , 인터넷 뉴스포스트 ⁽⁹⁹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사설] 고통받는 어린이보다 원장 눈치보는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어린이집 원장들 “낙선” 위협... 무릎 꿇은 의원들 법안 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 인터넷 위클리오늘 : 『어린이집 원장들 협박에 백기든 국회의원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일자) • 인터넷 뉴스포스트 : 『어린이집 원장들의 도 넘은 횡포에 무릎 꿇은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보좌관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신문 : 『‘고통받는 어린이보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인터넷 위클리오늘 : 『‘어린이집 원장들 협박에 백기든 국회의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 인터넷 뉴스포스트 : 『‘어린이집 원장들의 도 넘은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013서울조정995~996 (정정·손배청구) 권 ○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보물섬 명단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34면)
신청인주장	‘선박왕’으로 불리는 신청인이 홍콩에 비밀계좌를 두고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MK뉴스에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하도록 함 ※ 이행방법 : [MK뉴스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26면) • MK뉴스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서울조정997~999 (정정·반론·손배청구) 정○○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침을 맞으면 가슴이 커진다? 수상한 한의원』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0일자 19: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술중인 한방가슴성형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KBS미디어의 다시보기 코너에서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한방가슴성형 기술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일자 19:30)
2013경기조정97~102, 115 김○○ 對 인터넷 경기일보 ^{(97~98, 99~100 기사별 정정·손배청구)(병합)} , 인터넷 경인일보 ^(101~102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중부일보 ^(115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일보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아이 등에 피멍 들도록 때린 이유? “짜증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맞은 아이가 또 있다고? 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 피멍이 들도록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女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아 마구 폭행…비난 봇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기사삭제, 부제소) • 인터넷 경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기사수정, 부제소) • 인터넷 중부일보 :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기사]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위 앞부분에 알림기사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인터넷 경인일보 [알림기사]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위 앞부분에 알림기사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부산 어린이집』을 『부산의 모 공립 어린이집』으로 정정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1)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 피멍이 들도록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p>2013서울조정1000</p>	<p>(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집 對 경인KBS-1TV</p>
<p>조 정 대 상</p>	<p>KBS 뉴스9 프로그램 『이상한 장애인 시설』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7일자 21:00)</p>
<p>신청인주장</p>	<p>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신청인 법인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8월 9일까지 <KBS 뉴스9> 프로그램 중 경인 뉴스 시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하도록 함</p>
<p>이 행 결 과</p>	<p>KBS 뉴스9 프로그램 『이상한 장애인 시설』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1:00)</p>

<p>2013서울조정1001~1002</p>	<p>(정정·손배청구) (사)○○○○저작권협회 對 인터넷 PD저널</p>
<p>조 정 대 상</p>	<p>『○○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도입에 대한 기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p>
<p>신청인주장</p>	<p>신청인 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제멋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1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16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p>
<p>이 행 결 과</p>	<p>『○○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도입에 대한 기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p>

2013서울조정1003~1004 (정정 · 반론청구) 국회사무처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국회사무처 도청탐지시스템 공개경쟁입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사무처의 도청탐지시스템 도입과정에 특정 입찰업체와 커넥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정치 섹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국회사무처 도청탐지업체선정 커넥션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2013강원조정16~17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부산 어린이집 원생 학대 “원장도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013경남조정33~3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종합건설(주)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이라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005~1008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1. (주)문화방송, 2. 박○○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오늘 : (1) 『靑비서실장 MBC기자에 후임사장 물어봤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면), (2) 『김○○ 사람들, MBC 보도국 요직 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청와대 비서실장, MBC기자에게 후임사장 물어봤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 『김○○ 사람들, MBC 보도국 요직 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MBC 출입기자에게 후임 사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청와대가 MBC 사장선임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미디어오늘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오늘 : 『〈MBC 기자, 청와대 비서실장에 후임사장 의견제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2면)

2013경남조정37~4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 ○○종합건설(주), 2. ○○디엔씨(주)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1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이라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축공사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와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들이 공사장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매입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민일보 : 『진해 ○○동 아파트시공사 “주민민원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4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진해 ○○동 아파트시공사 주민민원 반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009~1011 (정정·반론·손배청구) ○○○○기자협회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정 대상	『○○○○기자협회, 기업돈 받고 세미나 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의 부회장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반발해 사퇴했으며, 해당 세미나에서 기업의 후원금으로 수상스키 타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12~101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동아일보, 성동신문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배심원들 “허위로 보기 힘들지만 비방목적 더 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12면) • 성동신문 : 『성추행 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배심원단이 그녀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에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허위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성동신문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기타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2013년 7월 26일까지 동아닷컴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7월 26일자 27면, 동아닷컴 7월 26일자) • 성동신문 : 『〈정정보도문〉 재판부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 거짓으로 의심 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3면)

2013서울조정1016~1017 (정정 · 손해청구) 1. (주)○○○○○, 2.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애써 개발해 냈더니... 의류업계도 ‘갑의 횡포’』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9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1 회사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2의 의류 브랜드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018~1019 (정정 · 손해청구) 신○○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우리 전쟁”에 미국은 팔짱 끼고 무기나 판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52~5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작성한 칼럼을 동의 없이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인터넷 시사저널에 알림기사,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에 알림기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알림 기사를 6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시사저널 : 『“우리 전쟁”에 미국은 팔짱 끼고 무기나 판다?』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53면) • 인터넷 시사저널 : 『“우리 전쟁”에 미국은 팔짱끼고 무기나 판다?』 관련해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020~1021 (매체별 손해청구) 백○○ 對 tvN, 인터넷 tvN	
조 정 대 상	• tvN :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만능 가제트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5일자 00:20) • 인터넷 tvN : 『[다시보기] 만능 가제트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방송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022~1027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1. 전국○○노동조합, 2. 전국○○노동조합 ○○자동차지부 對 e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 : 『일자리 창출 대신 일자리 없애는 한국의 귀족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 머니투데이 : 『“증산” 막는 노조 때문에... 일자리 늘린 협력업체들 ‘고통 2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5면)
신청인주장	귀족노조인 신청인 단체가 집단 이기주의를 띄고 강경투쟁을 통해 회사의 폐업을 자초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 2013년 8월 9일 전까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산업면 중앙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 : 『일자리 없애는 귀족노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머니투데이 : 『“증산 막는 노조 때문에”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2면)

2013경기조정103~108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재건축조합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일보 : (1) 『건물 명의변경 허가에 불만 60대 ○○시청서 흥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19면), (2) 『업체 “적법 절차 거친 합법적 취득”, 조합 “절차상 문제 있다”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20면) • 인터넷 경인일보 : (1) 『건물 명의변경 허가에 불만 60대 ○○시청서 흥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2) 『시공사 부도 ‘미완성 주상복합아파트’ 소유권 다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청에 난입해 흥기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1차 조정심리 후 2013년 7월 24일에 경인일보와 인터넷 경인일보에 게재한 신청인 관련 반론보도문을 2013년 7월 29일 20:00까지 포털에 제공하여 인터넷 검색이 되도록 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일보 : 『“대주보 서류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20면) • 인터넷 경인일보 : 『“대주보 서류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2013광주조정39 (손배청구) 김○○ 對 교차로신문	
조정 대상	『정원박람회, 시민권 부정사용 여전 ‘단속 강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정원박람회에 입장중인 신청인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하면서 시민권을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028~10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對 전자신문, 전자신문 인터넷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 『LED 공급 과잉시대...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 재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3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전자, LED 사업 수직 계열화 포기... LED 사업 수익성 위주로 개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국내 전자회사와 일본의 모 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신청인 회사의 채산성이 낮고 업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 『○○전자, 미래 전략 새판 ‘돈 되는 사업 역량 집중’... 합작사 대폭 정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전자, 미래 전략 새판 ‘돈 되는 사업 역량 집중’... 합작사 대폭 정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032~1033 (정정 · 손해청구) 1. 조○○, 2.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6일자 09:15)
신청인주장	출연한 부부 중 가짜부부를 찾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신청인 1의 남편(신청인 2의 아버지)과 내연녀를 진짜 부부라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결정사항 : iMBC 내 아래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함 (1)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문화 즐기고 돈도 벌고! 즐거운 백발 청춘』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8일자 08:00) (2) TV 특종 놀라운 세상 프로그램 『황혼의 댄서, 백발의 노부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3일자 18:50)
이 행 결 과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8일자 09:15)
2013서울조정1034~1035 (정정 · 손해청구) 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학문의 자유 침해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교육부 산하 연구원 교수인 신청인이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1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으며 남미 출장경비를 과다 집행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중앙연구원 권○○ 교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036 (정정청구) 권○○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이승만 · 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표 집필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독재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 '이승만 · 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037		(반론청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부산, 7급 공무원에 변호사 채용 공고, 로스쿨생들 “법조계 욕... 신상 털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13면)	
신청인주장	로스쿨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산시 7급 공무원 채용 전형 지원자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고, 20여개의 옹호댓글이 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3부산조정49~50		(정정·손배청구) 김○○ 외 10인 對 크리스찬타임
조 정 대 상	『예정합동 ○○○노회 김○○ 목사 등 11명 면직』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5면)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들이 헌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노회 임원을 조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김○○ 목사외 11명 불법 면직,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5면)	
2013경기조정109, 110, 113~1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안양시 對 경기뉴스신문^(109, 113), e-경기뉴스인^(110, 114)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뉴스신문 :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1면) • e-경기뉴스인 : 『[긴급취재]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 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안양시가 재활용선별장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62		(정정청구) 양○○ 對 인터넷 굿모닝충청
조 정 대 상	『대전 모 대학 의대교수 폭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의대 교수인 신청인이 후배 교수를 구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뉴스PLUS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대전 의대교수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p>2013서울조정1038~1042, 1585~1590</p>	<p>(매체별 정정청구) 박○○ 對 연합뉴스⁽¹⁰³⁸⁾, 국민일보⁽¹⁰³⁹⁾, 동아일보⁽¹⁰⁴⁰⁾, 서울신문⁽¹⁰⁴¹⁾, 인터넷 MBN⁽¹⁰⁴²⁾, 세계일보⁽¹⁵⁸⁵⁾, 아시아일보⁽¹⁵⁸⁶⁾, 매일경제⁽¹⁵⁸⁷⁾, 일간스포츠⁽¹⁵⁸⁸⁾, 노컷뉴스⁽¹⁵⁸⁹⁾, 데일리안⁽¹⁵⁹⁰⁾</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가수 ○ 때문에 성폭행당해” 거짓말 50대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 국민일보 : 『“가수 ○에 성폭행 당했다” 현수막 건 5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0면) • 동아일보 : 『“○ 때문에 성폭행 당하고 노숙자 돼” 거짓말한 50대 여성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A14면) • 서울신문 : 『“가수 ○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한 50대女 벌금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0면) • 인터넷 MBN : 『“가수 ○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50대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 세계일보 : 『“가수 ○ 때문에 성폭행” 50대女 벌금 300만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8면) • 아시아일보 : 『“건물 임대분쟁” 가수 ○ 명예훼손 세입자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4면) • 매일경제 : 『“가수 ○ 때문에 성폭행” 거짓말 50대 여성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31면) • 일간스포츠 : 『“○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현수막 명예훼손 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2면) • 노컷뉴스 : 『“가수 ○ 때문에 성폭행당해” 거짓말 50대女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 데일리안 : 『“가수 ○때문 성폭행 당해” 허위 주장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p>신청인주장</p>	<p>가수 소유의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신청인이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가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세계일보·아시아일보·매일경제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일간스포츠·노컷뉴스·데일리안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3일자 8면) • 인터넷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7월8일자 8면 “가수 ○ 때문에 성폭행” 50대女 벌금 300만원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3일자) • 아시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4면) • 매일경제 : 『고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사회면) • 일간스포츠 :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 데일리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2013대전조정63 (정정청구) ○○산업 주식회사 對 꼴통뉴스	
조 정 대 상	『[고발] 충격적인 도로안전시설물 부설시공 실태고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도로안전시설물 규격에 미달되거나 사고로 파손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꼴통뉴스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도로안전시설물 부설시공실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043~1044 (정정·손배청구) ○○○○○○수련원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수련원 밤엔 술집?』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9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 수련원이 최근 몇 년간 술장사를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8월 5일까지 <마감뉴스> 프로그램 전국뉴스 시간대에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MBC 뉴스 24 프로그램 『“○○○○수련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일자 00:40)

2013서울조정1047~1048 (정정·손배청구) (주)○○가구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47년 전통의 ○○가구, 수입가구 판매사로 '전락'』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가구 판매사로 전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사진은 삭제함
이 행 결 과	『○○가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049~105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창원시 對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서울 : 『시의회 승인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1면) • 스포츠서울닷컴 : 『창원시의 변명. 신축야구장 재조사는 중단됐지만, 보고서는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가 진해구장 선정거로 내세운 야구장 신규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서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고서라 보도했으나 해당 보고서는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용역물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스포츠서울닷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서울 : 『“창원시 중간보고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3면) • 스포츠서울닷컴 : 『“창원시 중간보고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056~105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안 ○, 2. 이○○ 對 코메디닷컴,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메디닷컴 : 『UAE 귀족 소녀 국내서 척추교정 받다 사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 프레시안 : 『[단독] UAE 16세 귀족女, ○○○병원서 수술 중 사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수술 중 사망한 아랍에미리트(UAE) 귀족 소녀가 의료관광 프로그램으로 유치한 환자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60 (정정청구) 한국○○○협동조합 對 전자신문	
조 정 대 상	『○○○조합 출범, 독점·담합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청인 조합이 오히려 조합 내 대기업 등의 독점과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대구조정26~27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사)○○○○○○수련원 對 안동MBC-TV	
조 정 대 상	(1) 특집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인성교육장... 밤에는 술장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8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인성교육장... 밤에는 술장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9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수련원이 최근 몇 년간 술장사를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수련원 ‘술장사 한 바 없다’ 주장』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8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수련원 ‘술장사 한 바 없다’ 주장』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06:00)
2013대구조정28~2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고○○, 2. 박○○ 對 대구일보, 인터넷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종전 이사측 무리한 주장 안타까워”』 제하의 기사 (대구일보 2013년 5월 6일자 22면, 인터넷 대구일보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전임 이사인 신청인들의 비협조로 학원 이사회가 파행을 달리고 있다는 현 이사장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30~3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운동고령군협의회 對 고령군민신문, 인터넷 고령군민신문	
조 정 대 상	『“여직원 월급이 30만 원’ 저임금 노동착취 의혹』 제하의 기사 (고령군민신문 2013년 6월 18일자 1면, 인터넷 고령군민신문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의회가 직원 월급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임금 노동착취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063~1066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박영선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정무위도 모르게 FIU법 수정... 법사위, 또 수퍼갑 논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7월 4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4일자)
신청인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신청인이 월권을 행사하여 정무위원회도 모르게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수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인스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및 조인스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의 각 정치면 전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6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조인스닷컴 : 『[알려왔습니다] 7월 4일자 5면 ‘정무위도 모르게 FIU법 수정... 법사위, 또 수퍼갑 논란’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067~106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유)○○주택건설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안전 D등급’ 군산 ○○○○○타워에선 어떤 일이...』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6월 15일자 B2면, 한경닷컴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한 건축물에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 중앙 상단에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경제·한경닷컴 : 『군산 ○○○○○타워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7월 25일자 26면, 한경닷컴 7월 24일자)
2013서울조정1069~1070 (정정·손배청구) 이○○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회원 “박원순 아들 차로 치겠다” 범죄계획』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원순 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범죄 계획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71	(정정청구) ○○○ 유한회사 對 MBC-TV
조정대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우리아이 생명을 책임지는 카시트 잘못 고르면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4일자 08:30)
신청인주장	영아가 영아용 카시트가 아니라 범용 카시트를 사용하면 차량 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행결과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휴가철 어린이 사고 급증! 올바른 카시트 착용법은?』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9일자 08:30)
2013서울조정1072~1088	김○○ 외 44명 對 동아닷컴 ^(1072 반론청구)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73 반론청구) , 연합뉴스 ^(1074 반론청구) , 한경닷컴 ^(1075 반론청구) , MK뉴스 ^(1076-1077 기사별 반론청구)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1078 반론청구) , e머니워크 ^(1079 반론청구) , 인터넷 서울경제 ^(1080 반론청구) , 인터넷 헤럴드경제 ^(1081 반론청구) , e머니투데이 ^(1082 반론청구) , 조선비즈닷컴 ^(1083 반론청구) , 아시아경제닷컴 ^(1084 반론청구) , EBN ^(1085 반론청구)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1086 반론청구) , 인터넷 스포츠조선 ^(1087 반론청구) , 노컷뉴스 ^(1088 반론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닷컴 : 『말 많던 청라 ○○ ○○○○ 아파트 준공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안전성 이상무』 청라 ○○○○ 사용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연합뉴스 : 『청라 ○○○○, 사용승인 받아... 입주 개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한경닷컴 : 『부실 논란 청라 ○○ ○○○○ 안전진단결과로 준공처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MK뉴스 : (1) 『인천 청라 ○○○○ 사용승인 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 『○○ 청라 ○○○○ 안전 이상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 『청라 ○○○○』 사용승인 획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e머니워크 : 『○○건설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건설 ‘인천 청라 ○○○○’ 사용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e머니투데이 : 『청라 ○○○○ 안전성 ‘이상무’... 사용승인 받아 입주 개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조선비즈닷컴 : 『청라 ○○○○ 사용 승인... “안전 이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청라 ○○○○’ 사용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EBN : 『철근 누락 논란 ‘청라 ○○○○’, 사용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건설 ‘인천청라 ○○○○’ 사용승인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건설, 인천 청라 ○○○○ 사용승인 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노컷뉴스 :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들이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준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닷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 인터넷 서울경제 · e머니투데이 · 아시아경제닷컴 · EBN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노컷뉴스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연합뉴스 · 환경닷컴 · e머니위크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조선비즈닷컴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 MK뉴스 : ▷ 2013서울조정1076 -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 2013서울조정1077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반론보도문] ‘청라○○○○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연합뉴스 : 『청라○○○○ 입주민 “안전진단결과 나오기 전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환경닷컴 : 『청라 ○○○○ 입주자측 “인천경제청 안전진단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MK뉴스 : 『“청라 ○○○○ 안전진단 결과 나온 적 없어” 시공사 · 입주자 간 입장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 『[반론보도문] ‘청라 ○○○○, 사용승인 획득’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e머니위크 : 『○○건설,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인천 청라 ○○○○ 안전이상 無’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인천 청라○○○○ 입주예정자들 “사용 승인 주장,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e머니투데이 :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 조선비즈닷컴 : 『청라 ○○○○, 사용승인 과정 논란... “주민 의견 반영 안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반론보도문] ‘청라 ○○○○’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EBN : 『인천 청라○○○○ 사용 승인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반론보도문〉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경남조정41 (손배청구) 이○○ 對 영남방송	
조 정 대 상	『○○소방본부, 휴대폰 역추적으로 응급환자 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지역소방본부에서 휴대폰 역추적으로 응급환자를 살렸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응급상태에 있었던 신청인의 근무처와 집주소 등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11~112 (매체별 반론청구) 김○○ 외 44인 對 인터넷 경기신문,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신문 : 『청라○○○○ 최종 사용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철근 일부 누락 ‘청라○○○○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준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기신문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인터넷 중부일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부일보 : 『청라○○○○아파트 준공승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089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채’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표 출원한 농산물이 당뇨, 고혈압, 암, 다이어트,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허위·과장 광고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090~1092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e그린경제	
조 정 대 상	『S대 미용예술학과 K교수 연수·교육비 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교육비를 부풀려 학생들로부터 600만 원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p> <p>※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삭제하고, 구글에 남아있는 조정대상기사에 대해서도 2013년 7월 25일 09:00까지 삭제함</p> <p>※ 이행방법</p> <p>[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p>[조건부 추후보도] 신청인에 대한 검찰조사결과가 무혐의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도함</p> <p>[기사삭제] 삭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달리 아직 삭제되지 아니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삭제하도록 함</p>
이 행 결 과	『[보도문] S대 미용예술학과 연수교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093~1094 (정정·손배청구) ○○○○○(주) 對 e그린경제	
조 정 대 상	『S대 미용예술학과 K교수 연수·교육비 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모 대학교수가 신청인 회사가 주최한 미용교육의 교육비를 부풀려 학생들로부터 600만원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삭제하도록 하고, 구글에 남아있는 조정대상기사에 대해서도 2013년 7월 25일 09:00까지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조건부 추후보도] 신청인에 대한 검찰조사결과가 무혐의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도하도록 함 [기사삭제] 삭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달리 아직 삭제되지 아니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삭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보도문] S대 미용예술학과 연수교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대구조정34~35 (정정·손배청구) 1. ○○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2. 김○○ 對 인터넷 중부신문	
조 정 대 상	(1) 『○○○ 지회 막무가내식 ‘떼법’ 고질적 병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 『성명서 (사)한국○○장애인○○협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3) 『장애인 폄하 발언한 ○○○ 지회에 강경 대응키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4) 『과연 그들이 근로자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5) 『“○○○ 지회에 장애인 비방 공개사과 요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 지회의 회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전북조정22 (정정청구) 정읍시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정읍시, 인사 근평점수 늘리고 빼고 마음대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정읍시가 특정 직원들의 근평점수를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1095~1096 (정정·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외 2인 對 JTBC	
조 정 대 상	리얼시사매거진 뉴스맨 프로그램 『2회 - 나는 구청장이다』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4일자 21:55)
신청인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가옥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신청인의 사업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뉴스맨>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및 내용을 블루바탕에 흰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뉴스맨 프로그램 『4회 - 「박정희기념공간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4일자 21:55)

2013서울조정1097 (정정청구) 경찰청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새누리 의원, 경찰 고위간부 술자리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12면)
신청인주장	경찰 고위 간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회식자리에서 뺨을 맞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98 (정정청구) 이○○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종합] ‘甲’ 국회의원, 경찰 수뇌부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경찰 고위 간부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회식도중 뺨을 맞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甲’ 국회의원, 경찰수뇌부 폭행 논란』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099 (정정청구) 허○○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계곡주?”... 야구장女에 음란댓글 달더니 어떡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음란댓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100~1101 (정정 · 손해청구) (주)뉴스미디어그룹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스타데일리’ 연예인 사생활 가점 아우팅 비판이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아이돌 그룹 멤버 중 한 명의 태국 게이바 출입 의혹을 보도했다고 기사화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미디어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스타데일리, 연예인 사생활 간접 아우팅’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2013서울조정1102 (손배청구) 1. 오○○, 2. 오△△ 對 YTN 사이언스 TV	
조 정 대 상	김생민의 프로파일 프로그램 『곳을 둘러싼 진실공방』, 대한민국 사회악 권력형 성폭력』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1일자 24:00)
신청인주장	무속인인 신청인 과 지인에게 무속인을 소개한 신청인 2가 무속 사기의 공범인 것처럼 보도하고, 신청인들의 주택과 가게 등을 무단으로 촬영,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1에게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부산조정5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1) 『17개월 영아, 부산어린이집 폭행(동영상)』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원장실서 맞은 애 더 있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 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123~112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환경운동연합 對 KBS-1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해외 수주에 ‘고춧가루’』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7일자 21: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데스크 분석] 도 넘은 NGO 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1:00) • 인터넷 KBS-1TV : (1) 『환경단체, ‘수공, 물 사업 능력 의문’ 발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 『[데스크 분석] 도 넘은 NGO 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태국에서 우리나라 수자원공사를 실제보다 저평가 되도록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27		(정정청구) 1. 김○○, 2. 김 △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890회 - 밀물에 떠오른 손, 바다 위 과학 수사』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0일자 23:25)	
신청인주장	해양 경찰의 과학 수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가족이 관련된 살인 사건에 대해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128~1130		(매체별 정정청구) 변○○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¹¹²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¹²⁹⁾ , 쿠키뉴스 ⁽¹¹³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법원 “이정희 증복 발언 변○○, 이정희 대표에 1,500만 원 배상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법원, ‘이정희 증복’ 발언 변○○에 1,500만 원 배상 판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쿠키뉴스 : 『‘변○○ 대표 어떡해’ 진○○·김○○ 등 줄소송 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증복 주사파로 단정지어 표현한 것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쿠키뉴스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83~186 참조)]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2013대전조정64 (정정청구) 예산군청 對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옛 산과대 불법토사 반입 말썽』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예산군이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토용 토사 수백 톤을 불법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산과대부지 불법토사 반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15면)
2013대전조정65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부산 어린이집 폭행, “아이가 하루종일 징징대서 짜증났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2013서울조정1131~1132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헬스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베일 속 리베이트 고발자 알고보면 ...』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제약회사 직원이었던 신청인이 회사퇴직에 불만을 품고 검찰에 소속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고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133~1136, 1142~114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1. ○○○○교회연합회, 2. 박○○ 對 주간 교회연합신문 ^(1133~1134)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1135~1136) , 기독교신문 ^(1142~1143) , 인터넷 기독교신문 ^(1144~1145)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교회연합신문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교회, 후임 청빙 두고 내홍 일어』 제하의 기사 (주간 교회연합신문 2013년 7월 14일자 14면,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7월 11일자) 기독교신문 · 인터넷 기독교신문 : 『○○○교회 목사 청빙에 원로목사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4일자 1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교회 원로목사인 신청인이 후임 담임목사 청빙 작업에 개입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사과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교회연합신문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정정보도 및 사과문> ‘○○○교회, 후임 청빙 두고 원로목사의 개입 의혹’ 기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주간 교회연합신문 2013년 8월 25일자 1면,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8월 16일자) 기독교신문 · 인터넷 기독교신문 : 『‘○○○교회 목사청빙에 박○○ 목사의 개입’ 에 관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제하의 기사 (기독교신문 2013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8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137 (정정청구) (주)○○유타워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통합 연금재단, 이번엔 비상장사에 불법 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행 중인 분당수지 유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일부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의 사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기타 결정사항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함</p> <p>※ 이행방법 : [정정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교계교단면 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1138~1139 (정정·손배청구) 강○○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 『甲의 행패… 매 맞는 乙』 고발은커녕 ‘쉬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10면) (2) 『코레일관광개발 납품중단 통보… 강 회장 “폐업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제빵회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코레일관광개발(주)의 납품 중단 통보 때문에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40 (손배청구) 도○○ 對 SBSi	
조 정 대 상	(1) 『“온도를 26도로…” 찜통 지하철, 절약이 최선?』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1일자) (2) 『출퇴근 ‘찜통 지하철’,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141 (정정청구) 박 ○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박○, 진보당 비례경선 데이터조작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비례경선부정 진상조사위원이었던 신청인이 ‘진보당 비례경선 데이터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66 (정정청구) 대전 ○구 ○○○○○연합회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대전○○○○연합회 예산집행 내역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운영진이 후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회비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여 이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신청 외 보도 하단에 기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링크를 삭제함
2013서울조정1146~114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성남시회의 새누리당협의회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성남시, ‘지불유예’ 3년 만에 벗어나』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9일자 17:00) • SBSi : 『[수도권] 성남시, ‘지불유예’ 3년 만에 벗어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시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위례 신도시 사업을 무산시켰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SBS-TV에 반론보도]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끝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 [SBSi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순서 앞부분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성남시 지불유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6일자 17:00) • SBSi :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148~1149 (정정 · 손배청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단독취재] 빗더미 공기업 퇴직금 ‘핑핑’』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7일자 19:55)
신청인주장	서울메트로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어겨가며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퇴직금 산정과 지급은 관련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iMBC의 반론보도문이 반영된 기사를 네이버, 다음 등에 전송함 ※ 이행방법 : [iMBC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빗더미’ 서울메트로, 규정 어겨가며 퇴직금 잔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150~11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 ○○ 빨대에 꺾데기만 남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2012년에 큰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모기업이 재투자를 막아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 ○○ 빨대에 꺾데기만 남았다”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 빨대에 꺾데기만 남았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2013서울조정1152~1157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전국○○노동조합 외 2인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 : (1) 『살아나던 ○○○○○ ‘청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1면) (2) 『그때 그 세력이 ○○○○○존폐 ‘위협’』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5면) (3) 『한국 철수 검토한다는 ○○○○○의 사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36면) • 한경닷컴 : 『살아나던 ○○○○○ ‘청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 『[사실] 한국 철수 검토한다는 ○○○○○의 사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이 벌이는 농성이 불법투쟁이며, 모 외국계회사의 한국 지사 청산이 신청인 노동조합 때문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58 (정정청구) 안○○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땅주인, 골목길에 ‘불법’ 벽돌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골목길의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골목길에 불법으로 창고를 지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동 골목길 불법 벽돌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12면)

2013서울조정1159~1160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수신료 2배↑ ?...국민 82% “인상반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24면)
신청인주장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 대다수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으나, KBS는 그 동안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공영적 서비스 방송을 해왔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헤럴드경제·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3년 8월 5일자 22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8월 5일자)

2013서울조정1161 (반론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서울일보	
조 정 대 상	『[사회] 태극모양 빨간색이 아래에 있는 이상한 태극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함으로써 국가를 모독했다는 주장을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中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2013서울조정1162~116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권○○ 외 15인 對 아시아일보,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일보 : 『영양, 이장들 관광성 외유 지원에 반장들 ‘허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14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영양군, 이장단 관광성 외유 지원에 반장들 허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영양군청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반장들에게 배정된 산업시찰 예산을 신청인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지원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아시아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지방정부섹션 내 영남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일보 : 『영양군 이장들 해외연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14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영양군 이장들 해외연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2013서울조정1166~1168 (정정·반론·손배청구) ○○ 對 JTBC	
조 정 대 상	리얼시사매거진 뉴스맨 프로그램 『1회 - 암 치료, 한방병원 산삼 약침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7일자 21:55)
신청인주장	신청인 한방병원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서 가짜 산양산삼을 공급 받아 산삼 약침을 시술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69~1170 (정정·손배청구) 진○○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진익철 서초구청장, 직권남용·불법정치자금 수수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으로 송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이 모씨가 조성한 불법후원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며, 경찰이 신청인이 모씨의 불법후원 사실을 인식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됐으므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이행방법 : [정정보도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1171~117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1) 『전○○의 ○○○, 고액 국외판권 ‘수상한 지급’』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1면), (2) 『○○○, 적자에도 연78억 수수료 ‘큰손’…비자금 ‘통로’ 의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3면) • 인터넷 한겨레 : 『○○○, 적자에도 연78억 수수료 ‘큰손’…비자금 ‘통로’ 의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가 해외판권 수입과정에서 인세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은닉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75 (정정청구) 대한성형외과○○회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1건 의료사고 낸 성형외과, 아무도 못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성형외과에서 11건의 의료사고를 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176~1181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1. (사)○○○○ 시민연합, 2. 최○○ 對 헬로티비 은평뉴스,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로티비은평뉴스 : 헬로TV 서울뉴스 프로그램 『‘위탁 운영 특혜?’』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9일자 19:30, 7월 19일자 21:30, 7월 19일자 24:00, 7월 20일자 07:15, 7월 20일자 10:00, 7월 20일자 11:50) •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 『[다시보기] 헬로TV 서울뉴스 106화』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단체이고, 신청인 2가 구청장의 대학 선배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2의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헬로티비은평뉴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19시 30분 뉴스> 프로그램 중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이후 8월 19일 20시, 21시 30분, 익일 오전 7시 15분, 10시, 12시 뉴스에 모두 6회에 걸쳐 보도함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헬로티비은평뉴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즉시 홈페이지에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다시보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뉴스 텍스트는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 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로티비은평뉴스 : 헬로TV 서울뉴스 프로그램 『신나는 애프터센터 위탁』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9일자 19:30) •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 『[다시보기] 헬로TV 서울뉴스 126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182 (정정청구) 변○○ 對 국민TV뉴스	
조 정 대 상	『출판사 대표, “변○○, 혼자 고고한 척...보다못해 “폭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출판하기로 하여 선인세 1,500만 원을 받고 10년째 책을 내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83, 1207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국회사무처 對 인터넷 일요시사,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일요시사 : 『〈단독〉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일요시사 :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쌌짓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장의 차량 주유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일요시사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이상 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일요시사 2013년 8월 19일자, 일요시사 9월 1일자 10면)
2013서울조정1184 (반론청구)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 21 프로그램 『101회 - 가짜 베스트셀러』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7일자 20:55)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가 지난해 발간한 책 세권에 대해 사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85~118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송○○ 對 온라인 중앙일보, 뉴시스	
조 정 대 상	『‘軍장교 민간인 위협’ 검찰서 밝혀져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세종시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과 관련, 보육교사의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임을 내세워 피해 학부모를 위협한 사실이 국방부 직무감찰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89 (정정청구) ○○○○아파트를 사랑하는 모임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아파트 잡 수입 3년간 1억 넘게 빼내 선물비용·행사비용으로 쓴 부녀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A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운영비뿐만 아니라 회의비도 매달 관리비에서 빼갔다고 보도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비만 잡수익에서 지원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190~1191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부천 ○○병원, 환자가 봉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할 정도가 아닌 환자의 어깨 연골을 인위적으로 절개한 후 다시 봉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192~1193, 1387~139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주식회사 ○○○, 2. 홍○○ 對 시사저널 ^(1192~1193) , 일요신문 ^(1387~1388) , 인터넷 일요신문 ^(1389~1390, 1387~1388과 병합)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저널 : 『[특집1] ○○○○○ Outlet 이명박·원세훈도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34~40면) • 일요신문 : 『○○○아울렛 선물리스크 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12면) • 인터넷 일요신문 : 『[단독공개] ○○○아울렛 정관계 '선물 리스트' 뇌관 터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익 원대를 지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저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1,0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소송으로 관련 사안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피신청인은 중재부가 결정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일부에 관해 동의할 수 없고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일요신문·인터넷 일요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일요신문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일요신문·인터넷 일요신문 : 인터넷 일요신문의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함과 더불어 포털에 전송한 조정대상기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일요신문·인터넷 일요신문 : [인터넷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신문 : 『○○○아울렛 보도 관련, 정정및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3면)

2013서울조정1194~119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 ○○○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 보니 毒티슈?』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8월 1일자 16면, 인터넷 문화일보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문화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기사목록(전체리스트)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3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196~119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이○○ 對 서대문신문, 서대문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인사(人事)는 만사(萬事)가 만사지탄(萬事指彈)으로!』 제하의 기사 (서대문신문 8월 1일자 2면, 서대문인터넷뉴스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금전적 뇌물, 성상납, 불륜관계 등 인사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신문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서대문인터넷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피신청인이 사과 등이 없이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음에 불만을 갖은 반면,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인사의 공평과 객관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신청인을 특정하여 지적하는 내용이 없으며, 제보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사라고 주장했다)
2013전북조정23~2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신○○ 對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여중생 강간사건’ 부실수사 날선 공방』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3년 7월 18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경찰관인 신청인이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새전북신문 기사삭제,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새전북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여중생 강간사건’ 부실수사 날선 공방”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3년 8월 30일자 2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8월 30일자)

2013전북조정27~3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유성엽 對 정읍신문, 인터넷 정읍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신문 : 『[망부상]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유권자 한 표의 결과치는...』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3면) • 인터넷 정읍신문 :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유권자 한 표의 결과치는...』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지역구에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거짓 공약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08, 1217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 『남양주췌, 유치권 빌미 탈·불법 자행 사채업자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남양주 ○○빌리지 유치권 빌미 불법 난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사채업자인 신청인이 청년 수십 명을 동원해 특정 건물의 유치권을 빌미로 점거 후 일반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p> <p>• 인터넷 서울뉴스통신·인터넷 경인종합일보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조건부 후속보도] 피신청인은 유치권불법행사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유치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 관련 내용을 수사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후보도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 『“불법 유치권 행사 사채업자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0일자)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불법 유치권 행사 사채업자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0일자)

2013광주조정40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경기도교육청 일선 여교사 학부모 앞 막말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학부모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209~1210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노○○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대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 학칙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0:00) • 인터넷 MBN : 『[단독] ○○대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 학칙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대학내 성폭행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학칙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동의없이 신청인의 신체 일부(하반신) 등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인터넷 MBN 기사삭제, 부제소) -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공익적 성격이 큰 보도이므로 중재부의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이행방법 : [인터넷 MBN 기사삭제]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및 VOD 영상을 삭제함. 또한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및 VOD 영상을 삭제함</p>
2013서울조정1211~1216 (매체별 정정·반론·손해청구) (병합) 안○○ 對 MBC,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64회 - 딸기칩쌀떡의 눈물』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8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시사매거진 2580 864회 - 딸기칩쌀떡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개발한 딸기칩쌀떡을 다른 사람이 개발 판매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건부 후속보도 게재 약속)
2013경기조정116~117 (매체별 정정청구) 경기도○○○○○사업조합 ○○지부 對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중고차 허위 매매 ‘감시자들’ 없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7월 12일자 8면, 인터넷 기호일보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 지부가 무허가 중고차매매상사의 불법 매매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218 (손해청구) 유○○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기름덩어리에 정화조가 자꾸 막혀요』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18:55)
신청인주장	돼지고기 가공공장이 관련 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근거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공장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p>2013서울조정1219~1220, 1291~1293</p>	<p>○○○○○○○아파트 재건축조합 對 뉴시스^(1219~1220 정정·손배청구), e그린경제^(1291~1293 정정·반론·손배청구)</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안양시 ‘○○○○○○ 재건축’ 4년째 표류중』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7일자) • e그린경제 : 『안양 ‘○○○○○○ 재건축, 4년째 해결책 난항』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 조합의 재건축 사업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e그린경제 : 기각결정 (사유 : 피신청인은 기사제공언론사(뉴시스)의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사실을 인지한 후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해당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시하였는 바, 신청인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조건부 후속보도] 피신청인은 고소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위조된 것으로 결론나면 그 결과를 신청인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도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안양시 ○○○○○ 재건축사업 표류”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p>2013서울조정1221~1244, 1289~1290</p>	<p>(매체별 정정·손배청구) ○○○○○○ 병역비리 ○○○○○○ 對 연합뉴스^(1221~1222), 인터넷 한겨레^(1223~1224), 오마이뉴스^(1225~1226), 조선닷컴^(1227~1228), 인터넷 경향신문^(1229~1230), 쿠키뉴스^(1231~1232), KBS미디어^(1233~1234), SBSi^(1235~1236), 뉴스 코리아^(1237~1238), 고발뉴스닷컴^(1239~1240), 노컷뉴스^(1241~1242), 한강타임즈^(1243~1244), 인터넷 서울타임스^(1289~1290)</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서울시 “시장아들 병역논란 ‘국정원 문건’과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인터넷 한겨레 : 『박원순 아들 병역 기피 혐의 고발, 국정원 추정 문건 실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오마이뉴스 : (1)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추정 문건 탕”』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2) 『서울시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배후에 국정원 있는 듯”』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조선닷컴 : 『서울시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배후에 국정원 있는 듯”』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서울시 “국정원 문건 12건 중 5건은 실제 진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쿠키뉴스 : 『“국정원, 비방 문건 작성하고 공작 실행?” 서울시, 고강도 대응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KBS미디어 : 『“박원순 제압” 국정원 추정문건, 실행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SBSi : 『서울시 “시장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문건’과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 코리아 : 『서울시,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실체 분석 보고서 작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고발뉴스닷컴 : 『“박원순 아들 병역 고발, ‘국정원 추정문건’ 지침대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 노컷뉴스 : 『서울시 ‘국정원 문건’ 문석...적극 대응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 한강타임즈 : 『○○○연합, 박원순 문건? “우리는 국정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인터넷 서울타임스 : 『“박 시장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추정 ‘문건’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인터넷 한겨레 · 오마이뉴스 · 조선닷컴 · 인터넷 경향신문 · 쿠키뉴스 · KBS미디어 · SBS · 뉴스1 코리아 · 고발뉴스닷컴 · 노컷뉴스 · 인터넷 서울타임스 : 각 조정불성립결정 • 한강타임즈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타임즈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9일자)

2013서울조정1245~1246 (정정 · 손배청구) 황○○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수원 삼성 경기에 등장한 ‘프로이센기’...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서포터 모임인 청미르의 깃발이 독일 제국주의 상징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스포츠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수원삼성 서포터 ‘청미르’ 깃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013서울조정1247~1248 (매체별 손배청구) 조○○ 對 KBS-1TV, SBS-TV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울산 도심서 조직폭력배들이 시민 집단 폭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19:00)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왜 빵빵거려” 조폭 몰려와 폭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20:00)
신청인주장	조직폭력배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SBS-TV :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부산조정52 (손배청구) 조○○ 對 UBC	
조 정 대 상	ubc프라임뉴스 프로그램 『경적 왜 울러..시민 집단폭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20:35)
신청인주장	조직폭력배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249~125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국회사무처 對 일요시사,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시사 : 『뒷돈 거래 의혹으로 ‘와글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10면) • 인터넷 일요시사 : 『국회 수상한 60억 리모델링 의혹 추적』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사무처가 향후 5년간 60억 원이 들어가는 국회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일요시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시사 : 『국회 본회의장 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10면) • 인터넷 일요시사 : 『[국회 본회의장 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253~1254 (정정·손배청구) 남○○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천주교인 출신과 담임목사의 재혼, 어떻게 봐야 하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천주교인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왜곡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55~1257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위기에 빠진 ‘1박2일’, 가을 폐지설 ‘모락모락’』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내부적으로 ‘1박2일’ 프로그램 폐지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연예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1박2일’ 가을 폐지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2013경남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이○○ 對 아시아뉴스통신(경남)	
조 정 대 상	『경남 거제 지심도 “도선”, “유람선” 둔갑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관리하는 거제 지심도 운항 도선(여객선)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58 (정정청구) 이○○ 對 스타데일리뉴스	
조정대상	『‘프레스바이플’ 본지 관련 기사 반론 보도 게재,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본인의 트위터에 스타데일리뉴스와의 분쟁 관련 내용을 호도하여 글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1) 신청인은 『아이돌이 게이바 출입하면 사생활 공개되도 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스타데일리’ 연예인 사생활 간접 아우팅 비판이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경찰 “연예인 사생활 공개 연예매체 비판, 명예훼손 아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가 프레스바이플 및 3개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을 통해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에 2013년 7월 15일부터 2013년 8월 21일 사이에 올린 피신청인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함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기사제작 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함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단독] 남성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A군, 태국서 게이바 출입?』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가 홈페이지 및 3개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을 통해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259~1260 (매체별 정정청구) 송○○ 對 뉴시스, 온라인 중앙일보	
조정대상	(1)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들 세종시에 사건규명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2) 『세종○○ 아동학대 교사 마땅히 처벌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3)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들 뿔났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4) 『탄원서 서식 작성하는 세종○○ 학부모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5)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들, 세종시에 억울함 호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세종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에 연루된 보육교사인 신청인의 딸과 신청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261~1262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진성준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의원 3분의 1 ‘천막’ 불참 ‘의욕 없고’... ‘역풍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6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민주, 의원 3분의 1 ‘천막’ 불참 ‘의욕 없고’... ‘역풍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불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 이행방법 : [후속보도] 신청인이 2013년 8월 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참한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적절한 기회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및 인터넷 문화일보에 게재하기로 약속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 『대공수사권 폐지 “赤化 고속도 갈아주는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3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대공수사권 폐지는 赤化 고속도 갈아주는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2013경기조정118~119 (정정·손배청구) 1. 김○○, 2. 김△△ 對 파도TV	
조 정 대 상	(1) 『[동영상뉴스] IBN 뉴스 - 담담자, 판매점에서 물품 갈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 『[동영상뉴스] IBN 뉴스 - 대형마트, ‘피해자만 해고’ 논란 부추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대형마트의 직원인 신청인들이 납품업체의 물건을 무단으로 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동영상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제작함 [기사삭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재방송에도 방송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청라지구 대형마트 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263 (손배청구) 공○○ 對 인터넷 독립신문	
조 정 대 상	『국정원 앞 ‘종북감시단’ 발족식』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모 진보단체가 국가정보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어린 아이들을 동원했다고 보도하면서 농성에 참여하지 않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대전조정67		(정정청구) 1. 김○○, 2. 최○○ 對 TJB-TV
조 정 대 상	(1)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향토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07:00) (2) TJB 8뉴스 프로그램 『향토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0:35) (3)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특화거리, 만들기만 하면 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07:00) (4) TJB 8뉴스 프로그램 『특화거리, 만들기만 하면 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20:35)	
신청인주장	판매 중인 고기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는 무관한 신청인 업체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 후속보도를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 ※ 이행방법 : [후속보도] 피신청인은 2013년 8월 31일까지 TJB '6시뉴스' 및 '8시뉴스'에 조정대상보도의 내용과 관련한 후속보도를 각 1회 방송하되, 조정대상보도에서 사용된 화면을 이용하여 단속된 두 개 업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TJB 8뉴스 프로그램 『한우전문점서 수입고기 판 2명 입건...관리감독 강화』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6일자 20:00)	
2013대전조정70		(정정청구) 재단법인 ○○시복지재단 외 2인 對 CTN
조 정 대 상	『[칼럼] ○○문화복지재단의 이상한 조직체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복지재단이 퇴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직위를 마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칼럼 '○○문화복지재단의 이상한 조직체계'와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2013경남조정44~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손○○ 對 영남매일, 영남방송
조 정 대 상	『남의 집 담장 허물어 돌·흙 가져간 이웃』 제하의 기사 (영남매일 2013년 7월 24일자 6면, 영남방송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허락 없이 이웃집 담장과 창고벽을 헐고 돌과 흙을 훔쳐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64		(정정청구) 손○○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스페셜 프로그램 『[밀착취재] 도망자의 천국, 필리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계획하다가 체포된 범죄자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65~1267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정대상	(1) 『황교안 법무 아들, ‘이○○ 방어’ ○○ 법무실 근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2) 『○○, 낙하산엔 돈 ‘핑퐁’ 직원에겐 ‘허리띠 줄라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3) 『“언론이 사망자 왜곡 보도” ○○, 알고 보니 ‘자기 부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4) 『○○ 노동자 또 자살, 올해만 벌써 24명』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5) 『이○○ ○○회장, 미련은 비극을 낳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사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임기를 채우기 위한 활동에는 돈을 ping ping 쓰는 반면 통신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9월 13일까지 홈페이지 경제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행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2013서울조정1268~127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송○○ 對 뉴시스, 온라인 중앙일보	
조정대상	『○○○○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경찰 고소로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세종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 보육교사의 아버지인 신청인이 이를 제보한 학부모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3대구조정36~37 (정정·손배청구) 김형태 對 인터넷 경북제일신보	
조정대상	(1)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김무성 추대’ 여론 高潮』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7일자) (2) 『“김형태 의원 상고 버티기...4월 재선거 물건너 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회의원직 유지 기간 벌기를 위해 상고를 제기해 재선거 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72~1273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MBN	
조정대상	MBN뉴스8 프로그램 『[단독] 뿌리 깊은 동성애 성매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3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용하는 휴게텔이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2013부산조정53		(손배청구) 최○○ 외 2인 對 JCN 울산중앙방송
조 정 대 상	김PD의 맛짱 프로그램 『팔빙수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8일자 17:29) (2013년 7월 18일자 10:28)	
신청인주장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빙수를 먹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임의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들에게 각 7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손해배상)	
2013서울조정1274		(정정청구) ○○○○항공사 한국지점 對 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외국 항공사 배짱 장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3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1부) 프로그램 『외국 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4일자 06:00)	
신청인주장	외국계 항공사인 신청인이 비행기 정비로 인한 출발지연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275~1278		(매체별 반론청구) 공립○○어린이집 對 연합뉴스 ⁽¹²⁷⁵⁾ , 뉴스1 코리아 ⁽¹²⁷⁶⁾ , 인터넷 한겨레 ⁽¹²⁷⁷⁾ , 인터넷 YTN ⁽¹²⁷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 뉴스1 코리아 :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내부고발자 탄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 인터넷 한겨레 : 『"어린이집 내부고발 교사 보호해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 인터넷 YTN :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이 원장의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 뉴스1 코리아 : 『"공익제보 부당해고" vs "계약기간 만료해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 인터넷 YTN :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279~128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이○○, 2. 이△△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12뉴스 프로그램 『성남시의원 2명 명예훼손 피소』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7일자 12:00) • SBSi : 『성남시의원 2명 ‘시의회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회 의원인 신청인들이 근거 없는 이유로 시의회의장을 비난하다 피소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i : 2013년 9월 26일 13:00까지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시 하도록 하되, 그 게시 지속시간은 최소 48시간 이상으로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TV : SBS 12뉴스 프로그램 『성남시 의원 2명, 시의회 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8일자 12:00) • SBSi : 『성남시 의원 2명, 시의회 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2013강원조정18~19 (정정·반론청구) 정○○ 對 강릉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덤프트럭 근로자 집단 시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6일자 19:55)
신청인주장	지역 덤프트럭 근로자 집단 시위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불법 중간알선업자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대구조정38~4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권○○ 對 대구신문, 인터넷 대구신문	
조 정 대 상	『車사고 진술서 받기도 전에 신호위반 단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6면, 인터넷 대구신문 8월 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측 운전자 진술조서를 받기도 전에 특정 운전자 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하며 사고 상황 설명조차 거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신문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대구신문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신문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9일자 5면)

2013경기조정120~125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아파트 재건축조합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안양 주상복합 인수 항소심 각하판결』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3년 8월 1일자 19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재건축 사업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83~1284 (매체별 정정청구) 1. 강○○, 2. 김영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정대상	『정○○의 법과 사회』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8월 1일자 A31면, 조선닷컴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김영란 대법관의 남편인 신청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부인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에 관여했으며 대법원 선고 후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85~1288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정대상	『KBS 불공정 보도 논란에…수신료 인상 토론도 ‘난항’』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8월 16일자 1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KBS의 수신료 인상 토론이 불공정 보도 논란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약속)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9월 6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5일자)
2013충북조정32~3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대한예수교○○○교회 對 충청일보, 인터넷 충청일보	
조정대상	『서산시 불법 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8월 12일자 1면, 인터넷 충청일보 8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가 교회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p> <p>※ 기타 합의사항 : 2013년 9월 6일 09:00 이후부터 서산시 자유게시판에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을 게재한 민원 내용을 삭제하며, 추후 다시 게재하지 않음</p> <p>※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p>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일보 : 『(알려왔습니다) ‘서산시 불법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2면) • 인터넷 충청일보 : 『[‘서산시 불법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p>2013경남조정48~51, 56~57</p>	<p>(매체별 손배청구) 박○○ 외 2인 對 인터넷 경남신문⁽⁴⁸⁾, MBC경남(진주, 창원)⁽⁴⁹⁾, 경남도민일보⁽⁵⁰⁾, 인터넷 경남도민일보⁽⁵¹⁾, 창원일보⁽⁵⁶⁾, 인터넷 창원일보⁽⁵⁷⁾</p>
<p>조 정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남신문 : 『대리운전 노조 “대리업체 3곳 불배운동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MBC경남(진주, 창원)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진보단체, “악덕 대리운전업체 불배운동”』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3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2부) 프로그램 『진보단체, “악덕 대리운전업체 불배운동”』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4일자 06:30) • 경남도민일보 : 『“업체 번호 지워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4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이들 대리운전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창원일보 : 『“대리운전업체 불공정 행위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7면) • 인터넷 창원일보 : 『대리운전 기사는 5초 지각시 500원! … “이는, 甲의 횡포입니다”, “대리운전업체 불공정 행위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p>신청인주장</p>	<p>대리운전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업체 상호명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p>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남신문 · MBC경남(진주, 창원) · 창원일보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경남도민일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인터넷 창원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민일보 : 『대리운전 업체, 노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5면)
<p>2013서울조정1294~1295</p>	<p>(정정 · 손배청구) 금천구청 對 채널A</p>
<p>조 정 대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단독/재래시장 공사 ‘뇌물파티’…금천구청 전면수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1:40) (2)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단독/재래시장 현대화 비리…구청 결재라인 모두 적발』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07:30) (3)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단독/영터리 사업에 나랏돈 ‘핑핑’…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11:40)
<p>신청인주장</p>	<p>금천구청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이 재래시장 시설개선공사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채널A 종합뉴스>(21:40~23:00)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9월 16일 까지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2단 자막으로 게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함</p>
<p>이 행 결 과</p>	<p>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금천구청, 재래시장 공사 ‘뇌물파티’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3일자 21:40)</p>

2013경기조정126~128		문○○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126 정정청구)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27~128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배우해 ‘패밀리’ 있다고?』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 『문○○ 의원 신상발언, 다시 반박한 2차 특위의 ‘반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3) 『2차조사특위, 특정단체에 수탁기준점수표 사전 유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1) 『복지시설 위탁에 M의원 개입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2) 『엇갈린 주장..문○○ 의원, 돈 반납하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3) 『경력증명서도 없는데..안했나, 눈감아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4) 『퇴직금도 호봉으로 결정되는데..』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의원인 신청인이 복지시설위탁 선정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취하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2)와 (3)의 자료사진을 삭제함 		
2013부산조정54~55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최○○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조정대상	『아내와 다툼 50대 동반 음독 시도…혼자만 숨져』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3년 8월 8일자 8면, 인터넷 국제신문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의 불화로 음독자살한 남편의 신원과 자살방법, 신청인의 신원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1296~1298, 1359~1362		(병합) 1. 이○○, 2. 유한회사 ○○○ 對 한겨레 ^(1296~1298 정정·반론·손배청구, 1359~1360 장정·손배청구) , 인터넷 한겨레 ^(1361~1362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	『전북경찰 간부의 ‘부적절한 외상’』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8월 15일자 14A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지방경찰청의 간부인 신청인이 경찰조사 중인 피의자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제때에 음식값을 변제하지 않는 식의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게재함		
이행결과	『전북경찰 간부의 ‘부적절한 외상’』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0월 15일자 14A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299~130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닷컴,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김○○ 벌금형, “故장○○ 소속사 대표 관련 성 상납 발언은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 인터넷 MBN : 『김○○, 故장○○ 관련 성 상납 발언 유죄...500 만 원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고인이 된 한 연예인의 전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8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9월 26일 15:00부터 홈페이지 연예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 인터넷 MBN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9월 26일 15:00부터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닷컴 : 『‘김○○ 벌금형’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인터넷 MBN : 『‘성 상납 발언 김○○ 벌금형’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303~130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이○○ 외 3인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 『고가 선물은 인기 척도...‘오빠’가 품목 지정하기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0일자 6면) • 쿠키뉴스 : 『비뚤어진 팬문화] 고가 선물은 인기 척도...‘오빠’가 품목 지정하기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 연예인의 ‘악플러 고소 비용’을 모금하던 신청인들이 모금한 비용을 착복해 잠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쿠키뉴스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팬 소송 비용 모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3년 9월 7일자 6면, 쿠키뉴스 9월 7일자)

2013서울조정1305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뉴라이트가 부끄럽나? ○○사학회의 자기부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우파성향의 교원노조의 상임대표를 지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사학회 이○○ 교수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2013경기조정129~130 (정정·손배청구) 최○○ 對 미디어투데이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화성시는 지금 “그 나물에 그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발행하는 지역매체가 한국기자협회윤리강령의 공정정보 강령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WHY에 반론보도 게재 노력)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수도권뉴스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화성시는 지금 그 나물에 그 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306 (정정청구) (주)○○○코리아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19회 - 금연보조제의 불안한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19: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무연담배를 ‘금연보조제 부작용’ 관련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KBS미디어에 알람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알람보도] 알람보도문을 2013년 9월 9일부터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 [기사삭제] 2013년 9월 9일까지 KBS 미디어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함, 단,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의 제품 관련 화면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음
이 행 결 과	• KBS미디어 : 『19회 금연보조제 방송 관련 알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013서울조정1307~1310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안○○ 對 주간 강남신문,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강남신문 : (1)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1면) (2) 『폭력사태로 얼룩진 강남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1면) (3) 『국제도시 이미지에 ‘먹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1면) •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 (1)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2) 『폭력사태로 얼룩진 강남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3) 『어수선한 강남구 ... 폭력·고소·고발·시위로 국제도시 이미지에 ‘먹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신청인주장	부녀회장인 신청인이 부회장을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 [추후보도] 2013년 10월 11일까지 추후보도문을 홈페이지의 각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강남신문 :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1면) •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	--

2013서울조정1311 (정정청구) 우윤근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時論]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위헌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38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겸직 허용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칼럼으로써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정보도내용에 현실적 약의가 없다)

2013서울조정1312 (손배청구) 1. 차○○, 2. 김○○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대리운전 업체, ‘불매운동 말라’ 가치분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의 횡포,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업체 대표인 신청인들의 성명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이행방법 : [기사삭제] 2013년 9월 26일 이후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조정 대상기사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함

2013경기조정131~134 (매체별 정정청구) 광명시 對 경도신문 ⁽¹³¹⁾ , 인터넷 경도신문 ^(132, 131과 병합) , 인천일보 ⁽¹³³⁾ , 인터넷 인천일보 ⁽¹³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도신문·인터넷 경도신문 : 『광명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법논란』 제하의 기사 (경도신문 2013년 7월 17일자 11면, 인터넷 경도신문 7월 17일자) • 인천일보·인터넷 인천일보 :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 불법투성이』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3년 7월 22일자 10면, 인터넷 인천일보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육조례를 어기는 등 위법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도신문·인터넷 경도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인천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인터넷 인천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도신문·인터넷 경도신문 : [인터넷 경도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도신문·인터넷 경도신문 : 『‘광명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법논란’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도신문 2013년 9월 12일자 11면, 인터넷 경도신문 9월 12일자) • 인천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10면) • 인터넷 인천일보 : 『『광명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법논란』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2013서울조정1313~1314 (매체별 정정청구) ○○대학교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보 : 『○○대 여직원 성추행 간부, 명퇴처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12면) • 세계닷컴 : 『“○○대 여직원” 성추행 간부, 명퇴처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직원을 징계 없이 명예퇴직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7일자 10면) • 세계닷컴 : 『[알려왔습니다] 7월9일자 12면 “○○대 여직원 성추행 간부, 명퇴처리 의혹”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013서울조정1315~1316 (정정·반론청구) ○○오브 ○○○○코리아 對 SBS-TV	
조정대상	현장 21 프로그램 『113회 - 사람 잡는 ‘사설 캠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20:55)
신청인주장	국토대장정을 진행해오던 신청인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단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SBS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기타 합의사항 : SBS의 조정대상기사의 기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사과문을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48시간 이상 게재함</p> <p>※ 이행방법 : [SBS에 반론보도] 신청인의 사과문 이행을 확인한 후 2013년 9월 12일 전까지 반론보도문을 SBS 홈페이지 시청자 코너에 관리자 명의로 48시간 이상 게재함</p>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 ○○오브 ○○○○코리아 홈페이지 : 『[공지] 김○○ 기자님께 사과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317, 1350 (매체별 손해청구) 남○○ 對 채널A, 인터넷 채널A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시즌2 프로그램 『14회 - 폭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5일자 21:50) • 인터넷 채널A : 『[다시보기]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시즌2’ 14회 (유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폭식증 환자인 신청인의 이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2013광주조정41~4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농업협동조합 對 호남매일, 인터넷 호남매일	
조정대상	『○○ 농협, 불법주차장 운영 ‘말썽’』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2013년 8월 14일자 15면, 인터넷 호남매일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이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호남매일에 반론보도] 2013년 10월 2일까지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2013년 10월 1일자 15면, 인터넷 호남매일 10월 1일자)
2013서울조정1318~1321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공영방송 책임 묻게 하는 KBS MBC 보도행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8일자 27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사설]공영방송 책임 묻게 하는 KBS MBC 보도행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축소 왜곡보도를 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지위를 망각한 채 불균형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2013년 8월8일자 사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2013대구조정42~4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서○○ 외 2인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조정대상	『‘아파트 관리비리 의혹’ 입주민들 뿔났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3년 8월 28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8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현직 회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신청인들이 유착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영남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영남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행결과	『‘아파트 비리 의혹’ 정정보도 합니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3년 9월 16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9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322	(정정청구) 한국○○사학회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史)학회가 집필을 주도한 역사교과서가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2013서울조정1323~1327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경향신문⁽¹³²³⁾, 인터넷 경향신문^(1324, 1323과 병합), 아이뉴스24(inews24)⁽¹³²⁵⁾, 오마이뉴스⁽¹³²⁶⁾, 프레스바이플⁽¹³²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병’ 올리는 ‘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1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병’ 올리는 ‘을’ ... 대형마트 우수선점 위탁운영하는 중견업체, 재위탁 점주에 관리비·법인세 등 전가 횡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아이뉴스24(inews24) : 『○○ ○○○위원회, 대형마트 의류수선점 피해사례 접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오마이뉴스 : 『대형마트 입점 수선점,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프레스바이플 : 『○○○○○ 66점 리폼업자 합씨 “대통령도 소용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형마트 우수선점을 위탁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재위탁 점주에게 관리비, 법인세 등을 전가 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 아이뉴스24(inews24)·오마이뉴스·프레스바이플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아이뉴스24(inews24)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일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함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일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함 • 프레스바이플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일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위탁업체 횡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 아이뉴스24(inews24) : 『[“대형마트 의류수선점 피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 오마이뉴스 : 『“대형마트 입점 수선점 불공정 피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 프레스바이플 : 『[“○○○○○ 불공정계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2013광주조정43 (정정청구) 강진군의회 對 장강신문	
조 정 대 상	『[특별기고] 군의원들이여, 의원윤리강령을 되새겨 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11면)
신청인주장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이 불법 도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의원 불법 도축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6면)

2013서울조정1328~1329 (매체별 손해청구) 한○○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1) 뉴스Q (1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근무 중 칼부림』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15:58) (2) 뉴스Q (2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1명 부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16:58) (3) 뉴스만만 (2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1명 부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0:58) (4) YTN 뉴스나이트 (1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흥기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1:58) (5) YTN24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흥기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4일자 00:00) (6)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흥기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4일자 08:50) • 인터넷 YTN : (1) 『[단독]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2) 『[단독]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1명 부상』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3) 『공익요원 교육 중 흥기 휘둘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공익요원이 교육 중 싸움이 나 흥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인터넷 YTN : 각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YTN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YTN 기사수정] 2013년 10월 8일까지 인터넷 YTN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검색되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을 추지할 수 없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330~1346 (주)○○○○○ 對 뉴시스^(1330-1331 정정·손배청구), 조선닷컴^(1332-1333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헤럴드경제^(1334-1335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파이낸셜뉴스^(1336-1337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레프트21^(1338-1339 정정·손배청구), 민중의소리^(1340-1341 정정·손배청구), 디지털 에코데일리^(1342-1343 정정·손배청구), 프레스바이플^(1344-1345 정정·손배청구), 오마이뉴스^(1346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민주, 대리기사 처우개선 입법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 조선닷컴 : 『‘乙종의乙’ 대리기사들, 강남 한복판서 구호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새벽 3시, 대리기사들이 강남에 모인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5초내 대답안하면 500원!”.. 대리운전업체의 황당한 벌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 인터넷 레프트21 :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 “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민중의소리 : 『집회도 새벽에 해야하는 ‘올빼미’ 대리 기사들의 절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에코데일리 : 『○○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 발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 프레스바이플 : (1) 『난폭운영으로 대리기사 갈취한 대리운전업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2) 『〈민주乙위〉 새벽2시 “대리기사” 길거리 간담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5일자) • 오마이뉴스 : 『“손님에게 2만원 받아서 3천원은 업소에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운전 요청을 받은 업체와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신청인이 대리기사에게 소개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조선닷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레프트21 · 민중의 소리 · 디지털 에코데일리 · 프레스바이플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오마이뉴스 : 취하
2013서울조정1347~134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무성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아침 햇발] ‘백년전쟁’은 계속되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31면) • 인터넷 한겨레 : 『[아침 햇발] ‘백년전쟁’은 계속되는가?/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부친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의 <칼럼>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이 행 결 과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0월 11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349 (정정청구) 라○○ 외 2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싸구려 컬러렌즈 착용 후 싹뿔아이...막쓰면 ‘치명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31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사가 아닌 점원이 미용렌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iMBC에 정정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iMBC에 정정보도] MBC-TV에서 정정보도 한 후에는 i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p>
이 행 결 과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미용렌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27일자 17:00)

2013서울조정1351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단독] 뉴라이트 교과서 저자 “위안부 서술 잘못” 인정』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신청인이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정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저자 “위안부 서술 잘못” 인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2013전북조정31 (정정청구) 1. (사)익산○○○○○○○○보전관리주민협의회, 2. 강○○ 對 익산시민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 ○○마을가꾸기사업, ‘수상한 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마을가꾸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상한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마을가꾸기 ‘수상한 거래’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352~135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파주시청 對 파주신문,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	
조 정 대 상	『1억 5천, 영국에 전달한 성금 불법으로 모금했다』 제하의 기사 (파주신문 2013년 8월 28일자 1면,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 8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파주시장 일행이 영국을 방문해 전달한 전쟁박물관 지원을 위한 시민 성금이 기부금품 모집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에 반론보도] 2013년 10월 1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파주시장 불법 모금 성금 전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파주신문 2013년 10월 10일자 2면,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 10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354~1355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코스콤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사의표명 석달째인 사장이 인사권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사의를 표명한 신청인 회사의 사장이 후임 전무이사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금융·증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사의 표명 코스콤 사장, 인사권 행사 시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일자)

2013서울조정1356~1357 (정정·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기독교신보	
조 정 대 상	『이단과 이단연루자 소환조사키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모 기독교 연합회 측이 목사인 신청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신청인의 교회의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이단과 이단연루자 소환조사키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358 (정정청구) 전○○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단독 인터뷰] 이○○ “허위 사실 유포 경찰, 문책성 좌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사건에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이○○, “허위 사실 유포 경찰, 문책성 좌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363 (정정청구) 1. 황○○, 2. 최○○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연예 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프로그램 『3회 -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6일자 19:40)
신청인주장	유명 아나운서가 남편과 별거 중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증권가의 거짓 루머를 신청인의 실루엣 사진을 게재하여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35~13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협동조합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고금리 대출 ‘○○’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8월 12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동조합이 아파트의 계약금 대출 금융사로 선정돼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타운 계약금대출금융사 선정의혹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9월 26일자)

2013경기조정137~13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산시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고금리 대출 ‘○○’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8월 12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안산시가 아파트 계약금 대출 금융사 선정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타운 계약금대출금융사 선정의혹 반론』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9월 26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9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364 (정정청구) (주)○○플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단독] 박○○ 전 차관 ‘○○랜드 공사청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2010년 수주한 경관사업에 대해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청탁을 통해 수주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후속보도] 2013년 9월 27일 10:00부터 홈페이지 사회면에 대체기사를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찰, ○○랜드 석연치 않은 사업자선정 ‘내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365~136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주식회사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뉴스 TALK] 마이너스 3만8914원 주식을 5,000원에 사라는 ‘○○○○’』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9월 3일자 40면, 조선닷컴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20% 싼 기름’ 공급사업의 주식공모를 위해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이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중재부의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 부당하다고 여기는 보도에 대한 정정내용이 제외됐다) ※ 이행방법 : [조선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2013서울조정1367 (손배청구) 이○○ 對 e채널	
조 정 대 상	대한민국 사건파일 No.5 프로그램 『11화 - 진실게임, 죽은 자는 알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3:00)
신청인주장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2013경기조정139 (반론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조정대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가 한 민간위탁업체의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3경기조정140~141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조정대상	『우리는 깃털일 뿐.. 몸통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의 민간위탁업체의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2013경남조정52~53 (매체별 정정청구) 거제시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신문 : 『○○○ 협력사 기숙사 건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6면) 인터넷 경남신문 : 『거제 ○○협력사 기숙사 건립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가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를 허가해 특혜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자연녹지지역도 심의대상이며 개발행위는 최종 허가된 바가 없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약속)
이행결과	『거제시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가속화』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3년 10월 7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10월 7일자)
2013서울조정1360~1369 (정정·손배청구) 채○○ 對 SBS-TV	
조정대상	모닝와이드 (3부) 프로그램 『[현장] ① 버스에서 넘어진 남자, 왜?』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2일자 07: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내버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사고에 상습성과 고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는 신청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사항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유추되거나 특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언론사로서의 주의의무(모자이크, 음성변조, 반론권 등)를 충분히 기울였으며,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2013대구조정46 (정정청구) 최○○ 對 뉴스웨어	
조 정 대 상	『타인의 채권, 채무 개입 ○○○파, 피의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물출입문 파손 외에도 횡령, 폭행, 주대 갈취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타인의 채권, 채무 개입 ○○○파, 피의자 검거’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370~1371 (매체별 반론청구) (주)○○○코리아 對 국토매일, 매일일보 인터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매일 : 『○○산업 공항철도 확충공사 속알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매일일보 인터넷 : 『○○○ 철도신호제어시스템 ‘부르는 게 값’』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공사 사업자에게 고액의 시스템 확장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매일 : [반론보도] 2013년 9월 30일 09:00부터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 매일일보 인터넷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매일 : 『[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 매일일보 인터넷 : 『“○○○ 철도신호제어시스템 ‘부르는 게 값’”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2013서울조정1372 (정정청구) (주)○○홈즈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름만 ‘전기절감기’...』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7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전기절감기 제품이 효과가 거의 없어 한 대형건물에서 제품설치 후 보름만에 떼어버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iMBC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C : 『‘전기절감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373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 차선 페인트 불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6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차선 페인트 '불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7일자 06:00)
신청인주장	서울시 차선도색작업에 쓰이는 페인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가 페인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374~1376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한○○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문캠프 투표 독려 카트에 여성가슴사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9일자 6면) (2) 『[알려왔습니다] ◆2012년 12월 9일자 6면』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성의 가슴에 대선 투표독려 글이 적힌 사진을 유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 (1)은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 기사가 될 수 없으며, 조정대상기사 (2)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013광주조정44 (정정청구) 신○○ 對 무안신문	
조 정 대 상	『노인회, 신구 회장간 폭력사태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10면)
신청인주장	노인회 군지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지회 사무실을 방문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인회, 신구 회장간 폭력사태로 비화』 관련 반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일자 10면)
2013서울조정1377 (정정청구) ○○○성형외과병원 對 MBC-TV	
조 정 대 상	PD 수첩 프로그램 『969회 - 손님을 모십니다? 성형관광의 함정』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0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중국인 환자가 양악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생겼으며, 상담의와 집도의가 다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이행방법 : [피신청인 유감표명]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중국인 환자의 수술 부작용이 신청인 병원의 시술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부정확하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대리인 명의로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함

2013경기조정142 (정정청구) ○○○노인복지회관 對 안성뉴스24	
조 정 대 상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엉망’』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인복지회관이 복지관 소속 활동보조인들의 근무일지를 위조하도록 부추기는 등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부산조정56~5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울산신문, 인터넷 울산신문	
조 정 대 상	『이념편향적 규정 운영 비판 확산』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3년 9월 9일자 1면, 인터넷 울산신문 9월 8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신청인 회사에 울산 북구청의 지원과 일감주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울산신문에 정정 및 사과보도)
이 행 결 과	• 울산신문 : 『(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2면)

2013서울조정1378 (정정청구) (주)○○제약 對 뉴시스헬스	
조 정 대 상	(1) 『“간 때문이야” ○○제약 ○○○…“건강한 사람에게 오히려 독(?)”』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2) 『종합』 ○○제약 ‘○○○’…“건강한 사람에게 오히려 독(?)”』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해온 간기능 의약품이 피로회복 효과가 없는 간질환 치료제로서 건강한 사람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2013년 10월 2일 전까지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란에서 조정대상 기사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379 (반론청구) (주)○○저축은행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황○○, ○○저축銀 수백억 원 부당이득 의혹증폭』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은행이 특정 회사에 대출모집업무와 대출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과다지급하는 등 부당이득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포털사 네이버에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포털사 네이버를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기업)섹션의 뉴스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3년 10월 17일 전까지 6시간(12:00부터 18:00까지)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저축은행 대출심사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2013경기조정143~14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광명시의회 외 3인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광명시의회, 자매도시 의회와 도박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1면) • 인터넷 경기일보 : 『“광명 vs 안동” 시의원 자존심 걸고 멋진(?) 도박승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의회가 자매도시인 안동시의회와 합동세미나를 실시한 것이 관광성연수에 불과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경기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5면)
2013광주조정45~47 (매체별 정정청구) ○○유치원 對 연합뉴스 ⁽⁴⁵⁾ , 연합뉴스TV(뉴스Y) ⁽⁴⁶⁾ ,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뉴스Y ^(47. 46과 병합)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1) 『<유치원 간식이 국물뿐인 죽, 만두 한 개, 치즈 반쪽>』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2) 『<기자수첩> 어른들 무관심에 배굶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3) 『<“아이들은 상한음식에 부실간식, 보육교사는 라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4) 『광주교육청 ‘부실 급식’ 유치원 특별 점검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5) 『<고침> 지방(“아이들은 상한음식에 부실간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6) 『‘부실 급식’ 유치원 합동 점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 (7) 『광주교육청 ‘부실 급식’ 유치원 특별 감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8) 『<아이들에게 상한 김치 먹여도 처벌어렵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 연합뉴스TV(뉴스Y) : 지방시대 프로그램 『국물뿐인 죽, 치즈 반쪽...부실 급식 분통』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9일자 18:50) • 인터넷 연합뉴스TV(인터넷 뉴스Y) : 『국물뿐인 죽, 치즈 반쪽...부실 급식 분통』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취하 • 연합뉴스TV(뉴스Y) · 인터넷 연합뉴스TV(인터넷 뉴스Y)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연합뉴스TV(인터넷 뉴스Y)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p>2013서울조정1380~1383, 1525, 1577</p>	<p>성○○ 對 국민일보^(1380~1381 정정·손배청구), 경향신문^(1382~1383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파이낸셜뉴스^(1525 정정청구), 뉴스1 코리아^(1577 정정청구)</p>
<p>조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 『강사는 성희롱, 원장은 폭행... 조폭 뺨치는 무등록 과외학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8면) • 경향신문 : 『강사 성희롱 알렸다고 여중생 폭행, 무등록 학원 40대 원장 경찰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10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뉴스1 코리아 : 『‘여중생 둔기 폭행’ 무등록 과외교습소 원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이 운영하는 과외학원이 무등록 불법교습소이고, 학원 강사의 성희롱 때문에 과외를 그만두려는 여중생을 학원 원장인 신청인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으며, 신청인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p>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취하 • 뉴스1 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조정대상기사가 2013년 10월 22일 이후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섹션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함 • 뉴스1 코리아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단, 이는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 뉴스1 코리아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p>이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반론보도] <강사 성희롱 알렸다고 여중생 폭행>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 뉴스1 코리아 : 『‘교습소 원장 여중생 폭행’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013광주조정48~5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對 조간호남일보 ⁽⁴⁸⁻⁴⁹⁾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50-51, 48-49와 병합) , 에버뉴스 ⁽⁵²⁻⁵³⁾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간호남일보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1면), (2) 『[社説]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15면)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에버뉴스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013년 6월 23일자, 에버뉴스 6월 24일자) (2) 『교육청·구청 관리감독 이중 구조가 주범』 제하의 기사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013년 6월 23일자, 에버뉴스 6월 26일자) (3) 『○○ 유치원 합동 조사착수』 제하의 기사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013년 6월 25일자, 에버뉴스 6월 26일자) (4)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간호남일보·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에버뉴스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간호남일보·조간호남일보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10월 11일 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 시간 동안 게재함 • 에버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10월 11일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간호남일보·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간호남일보 2013년 10월 10일자 8면,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10월 11일자) • 에버뉴스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384, 1396	(정정·손배청구) 도○○ 對 일요닷컴
조정대상	『[박○○ 칼럼] 도○○ ○○○○ 재단 이사장의 해바라기는?』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최근 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홍보성 기사가 늘어난 이유가 신청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이웃주민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손해배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손배청구 : 취하

2013서울조정1385~1386 (매체별 정정청구) (주)○○지오텍 對 전자신문 인터넷, 인터넷 주간조선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인터넷 : 『[기상청 그들만의 리그] (상)끊이지 않는 기상장비 입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3일자) • 인터넷 주간조선 : 『5개월 만에 청장 돌연 사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기상산업진흥원의 지진조기경보관측 장비 입찰 과정에서 신청인 회사가 대표 배우자의 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인터넷 · 인터넷 주간조선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인터넷 : 『“기상장비 입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 인터넷 주간조선 : 『“기상장비 입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2013서울조정1391~1393 (매체별 손해청구) 손○○ 對 e머니투데이 ⁽¹³⁹¹⁾ , 뉴스1 코리아 ^(1392, 1391과 병합) , 네이트 ⁽¹³⁹³⁾	
조 정 대 상	<p>(1) 『이력서 사진 너무 잘 나와도 취업에 불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p> <p>(2) 『도공동女 취업 면접 준비에 450만 원…뭘 했기에?』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p>
신청인주장	이력서에 들어갈 증명사진의 보정에 대한 채용담당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뉴스 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연대하여 손해배상 2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머니투데이 · 뉴스 코리아 : 피신청인들은 각 포털사(네이버, 다음, 네이트, 파란, 구글 등)에 해당 사진 삭제(뉴스 및 이미지)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2013서울조정1394~1395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현대일보	
조 정 대 상	『광명, 어린이집 단속공무원 원장과 관외 ‘은밀한 식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지역 어린이집의 지도감독과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시청 공무원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진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현대일보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 : [인터넷 현대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원장과 공무원의 은밀한 식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2면)

2013서울조정1397~140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조○○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1) 05:57 - 뉴스출발 (3,4부) 프로그램 『[현장24] 남대문 상인 ‘도로 사용료’ 날벼락』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8일자 05:57), (2)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현장24] 남대문 상인 ‘도로 사용료’ 날벼락』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8일자 22:58) • 인터넷 YTN : 『남대문 상가 ‘도로 사용료’가 3억에 천만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남대문시장 인근 도로 소유자인 신청인이 도로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p> <p>[YTN에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10월 11일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3:00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원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p> <p>[인터넷 YTN에 정정 및 반론보도] YTN이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다시보기 코너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남대문 상가 도로사용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9일자 23:40) • 인터넷 YTN : 『남대문 상가 도로사용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013경기조정147~14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타운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운 계약금 대출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0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22일자) (2) 『[테스크] 의문이 풀리지 않는 김 시장의 성명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9일자 20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회사가 아파트 계약금 대출 금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금융사 보다 높은 금리의 금융사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49 (손배청구) 김○○ 對 사자TV	
조 정 대 상	『성기노출 자위행위한 BJ○○ 8.15 특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음란행위 중인 모습을 중계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p> <p>※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모든 사진을 2013년 10월 8일 09:00까지 삭제하고 포털 사이트의 기사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완료된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함</p>

2013서울조정1401~140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농림축산식품부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줄 새는 쌀 직불금』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3일자 19:55) • iMBC : 『‘줄줄 새는’ 쌀 직불금…공무원, 농촌공사 직원 부정수령』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에 정부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올라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MBC-TV에 정정보도]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끝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그 동안 화면에는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푸른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계속 표시하도록 함 [iMBC에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경제면에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 하고,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조 정 대 상 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도 이어서 게재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쌀 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정정』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9일자 19:55) • iMBC : 『‘쌀 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2013서울조정1403~140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산학협력단 對 전자신문, 전자신문 인터넷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 『교육과정 늘리고 창업 활성화…○○·○○○·○○○대 최상위권 포진』 제하 의 기사 (2013년 9월 24일자 4면) • 전자신문 인터넷 : 『[2013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평가]종합평가 1위부터 113위까지 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피신청인의 대학평가 조사에 응한 바 없음에도 일부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측이 조정결과와 별도로 추가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 이행방법 : [전자신문 인터넷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1405~1408 (매체별 정정청구) 허○○ 對 연합뉴스 ⁽¹⁴⁰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¹⁴⁰⁶⁾ , 노컷뉴스 ⁽¹⁴⁰⁷⁾ , 쿠키뉴스 ⁽¹⁴⁰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허○○ “일제시대 수탈과 개발 병존” 논란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일본 드라큐라 물려, 영생 얻어…‘일제강점기는 북한용어’”』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노컷뉴스 : 『‘일제시대에 ‘경제성장’을 했다고?’…국사편찬위원회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쿠키뉴스 : 『“일제시대 수탈·개발 병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일제시대에는 수탈과 개발이 병존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노컷뉴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쿠키뉴스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보도] 홈페이지 정치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허○○ 경희대 교수 특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보도] “허○○ 경희대 교수 특강”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 노컷뉴스 : 『〈허○○ 경희대 교수 특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 쿠키뉴스 : 『허○○ 교수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2013서울조정1409~1410	(정정 · 손해청구) 1. 재단법인 ○○의료재단, 2. 주식회사 ○○ 對 투데이코리아
조정 대상	『○○한방병원 “가족회사 통해 수십억 빼돌린 것 아니냐” 의혹에 .. “근거 없는 오해일 뿐?”』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의료재단의 이사장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재단 이익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행 결과	『[보도문] ‘○○의료재단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411	(정정청구) 조달청 對 이데일리(인터넷)
조정 대상	(1) 『[단독] ①○○, 10여년간 정부상대 4조 원 부당 이익』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2) 『[단독] ②조달청 담합, 전자업체에 고질적 관행』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3) 『조달청, ‘○○, 정부상대 4조 원 부당이익’ 본사기사에 변명 일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4) 『○○ 조달청 비리의혹, 조달청 일방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조달청이 실제 유통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국내 대기업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4조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케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 결과	『[‘○○전자 정부 상대 부당이익’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6일자)

2013서울조정412~1423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윤○○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1) 『파괴력 15배 강화한 장난감 총 주문하자 2시간만에 배송완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7일자 A10면), (2) 『진짜같은 장총·권총 즐비… 경찰 “무기庫 수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2일자 A11면) • 조선닷컴 : (1) 『파괴력 15배 강화한 장난감 총 주문하자 2시간만에 배송완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7일자), (2) 『[단독] 파괴력 강화 ‘장난감 총’ 판매현장 단속 가 보니 … 진짜같은 장총·권총 즐비…경찰 “무기庫 수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으로 모의 총기를 개조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조선닷컴에 반론보도] 2013년 10월 24일까지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도록 함 [조선닷컴 기사수정] 2013년 10월 24일까지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신청인 업체의 사진을 삭제하도록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불법 총기 개조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2면) • 조선닷컴 : 『◇불법 총기 개조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2013경기조정150~15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어린이집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정대상	『곰팡이 핀 위생 ‘찐찐한 어린이집’』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3년 8월 22일자 22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이 소속 원아들의 용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칫솔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점검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인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2면) • 인터넷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424 (정정청구) 이○○ 對 교회와신앙	
조정대상	『이○○ 목사 교회건물 등기, 여전히 진행 중?』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의 교회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이단&이슈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동안 (단, 12:00부터 게재 시작) 게재함
이행결과	『[○○○○교회 교회건물 등기이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425~1426 (매체별 손해청구) 안○○ 對 KBS-2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천차만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27일자 08:00) • KBS미디어 : 『[화제포착] ‘천차만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교통사고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2TV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이행강제금) • KBS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미디어 : [기사수정] 2013년 10월 25일 15:00까지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 되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427 (정정청구) 김명연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19대 국회, 땅 보고서』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일자 23:20)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시의원 시절 의회에서 자신의 땅이 포함된 신길동 그린벨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신청인은 2013. 10. 4. 당 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 상에 보도일자를 2013. 5. 1.,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2013. 5. 2.로 표기하였는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일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시점이므로 신청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2013서울조정1428~1429 (정정 · 반론청구) 1. 해양수산부, 2. 윤○○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조 정 대 상	(1) 『해양수산 공기관 임직원들, 부산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 『해양수산부, 부산민심 무시 “대연혁신도시 집단투기, ‘처음 듣는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부산으로 이전이 예정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 받은 혁신도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해양수산부 고위층 대연혁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430~1435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서울 : (1) 『이○○ 회장 비리 의혹 문건 단독 입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3면) (2) 『○○ 내부 방패막 움직임 검찰, 이○○ 회장 겨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16~17면) (3) 『영포라인+이○○ 살생부작성→감찰→퇴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3면) • 인터넷 일요서울 : (1) 『[긴급점검]흔들리는 ○○ 기로에 서다-①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 『○○ 비자금 용처 주시...MB정권에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3) 『[흔들리는 ○○ 기로에 서다-②탄] “이○○ 인사 전횡 화 부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자회사가 96개나 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에도 전송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6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3년 11월 15일자 3면, 인터넷 일요서울 11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436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한국마케팅신문
조정대상	(1) 『6억여 원 매출 누락, 피해자들 어쩌나?』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2) 『매출 누락은 자살행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모 대기업 통신사의 상품에 주력하여 다단계판매 사업을 해온 신청인이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이행결과	『○○○○○○○, ○○판매공제조합과 소송 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2013서울조정1437~1438, 1478~147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흥○○○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정대상	『흥○○○ 국기원 이사장 전횡...망가진 태권도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0월 4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4일자)	
신청인주장	국기원 이사장인 신청인이 1억 원에 가까운 국기원 예산을 개인용으로 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스포츠> 섹션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행결과	• 인터넷 한겨레 : 『<흥○○○ 국기원 이사장 전횡...망가진 태권도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2013서울조정1439~1440 (정정 · 손해청구) 성○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천만 원 ‘약침치료’·병원 피소』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8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던 환자가 신청인 병원의 거짓말 등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광주조정54 (정정청구) 강진군의회 對 장강신문	
조 정 대 상	『강진군의회, 의정비 동결 ‘눈 가리고 아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강진군의회 의정비가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상위권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441~1443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연합뉴스⁽¹⁴⁴¹⁾, 네이버⁽¹⁴⁴²⁾, 네이트⁽¹⁴⁴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1) 『장병원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병원 “윤○○, 장애인후원물품 지역구 배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3) 『민주, 내곡동 사저·윤○○ 의혹에 공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선관위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5) 『장애인체육회, 직원 동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6) 『민주,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의혹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7) 『여야, ‘윤○○ 후원물품 횡령의혹’ 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8) 『〈여야, ‘윤○○ 후원물품 횡령의혹’ 공방〉(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9) 『‘윤○○ 옥매트 횡령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10) 『검찰,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9일자) (11) 『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윤○○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12) 『옥매트 횡령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13) 『옥매트 횡령 윤○○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14) 『장병원 “윤○○ 장애인체육회장 해임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5) 『〈‘벌금형 선고’ 장애인체육회장 거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16) 『〈윤○○ 직무정지..체육단체장 도덕성에 엄중한 잣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17)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18)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19) 『체육단체 임원 직무상 범법 기소되면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1) 『장병원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애인체육회, 직원 동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3) 『장애인체육회, 직원 동원 무상급식투표 독려(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4) 『‘벌금형 선고’ 장애인체육회장 거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5) 『‘직원 폭행’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6) 『윤○○ 직무정지..체육단체장 도덕성에 엄중한 잣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7)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p>2013서울조정1444~1447</p>	<p>(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인터넷 한겨레⁽¹⁴⁴⁴⁾, 네이버⁽¹⁴⁴⁵⁾, 네이트⁽¹⁴⁴⁶⁾, 다음⁽¹⁴⁴⁷⁾</p>
<p>조정 대상</p>	<p>(1) 『“기업 장애인용 기부→의원이 가로채→정치목적 사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애인체육회장 한나라 윤○○ 의원 장애인 후원물품, 지역구·의원들에 뿌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3) 『“윤○○ 의원이 직원들 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선관위, 옥매트 빼돌린 윤○○ 의원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5) 『[사설] 장애인 기부물품 유용 의혹, 진상 규명 왜 피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6) 『“옥매트의 보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7) 『검찰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0일자) (8)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 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p>
<p>신청인주장</p>	<p>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p>
<p>처리 결과</p>	<p>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p>
<p>2013서울조정1448~1451</p>	<p>(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오마이뉴스⁽¹⁴⁴⁸⁾, 네이트⁽¹⁴⁴⁹⁾, 네이버⁽¹⁴⁵⁰⁾, 다음⁽¹⁴⁵¹⁾</p>
<p>조정 대상</p>	<p>• 오마이뉴스·네이트·네이버 : (1) 『“장애인 지원용 ‘옥매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착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노조 간부 “윤○○이 욕설 후 얼굴 때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3) 『음주 방송·옥매트 횡령, MB 아들까지... 나경원 먹구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장애인 폭행한 자가 장애인올림픽 개막식 참가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다음 : (1) 『“장애인 지원용 ‘옥매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착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노조 간부 “윤○○이 욕설 후 얼굴 때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3) 『“장애인 폭행한 자가 장애인올림픽 개막식 참가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p>
<p>신청인주장</p>	<p>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p>
<p>처리 결과</p>	<p>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p>
<p>이행 결과</p>	<p>『윤○○ 장애인체육회장, 업무상횡령·선거법위반 무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p>
<p>2013서울조정1452~1454</p>	<p>(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뉴스1 코리아⁽¹⁴⁵²⁾, 네이버⁽¹⁴⁵³⁾, 네이트⁽¹⁴⁵⁴⁾</p>
<p>조정 대상</p>	<p>• 뉴스1 코리아·네이트 : (1) 『민주, 문방위 소속 의원들 “윤○○ 회장 장애인올림픽 참석은 국가적 망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2) 『장병완 의원 “윤○○ 회장 장애인올림픽 참석은 국가적 망신” 성명』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3)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 네이버 :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p>
<p>신청인주장</p>	<p>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p>
<p>처리 결과</p>	<p>• 뉴스1 코리아·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네이버 : 취하</p>

2013서울조정1455~1457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인터넷 문화일보 ⁽¹⁴⁵⁵⁾ , 네이트 ⁽¹⁴⁵⁶⁾ , 다음 ⁽¹⁴⁵⁷⁾	
조 정 대 상	『선거법 위반』 윤○○ 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458~1459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프레시안, 네이버	
조 정 대 상	(1) 『“한나라, 장애인 지원용 옥매트까지 빼돌려 지역에 살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옥매트 횡령” 의혹 윤○○, 장애인체육회 직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3) 『나경원, ‘음주방송’ 불끄니 ‘옥매트’에 ‘MB타운’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옥매트’ 윤○○ “폭행할 찰나까지 갔는데 말려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5) 『한나라 의원, ‘무상급식 투표’ 부정 행위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횡령·선거법 위반 무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460~1465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¹⁴⁶⁰⁾ , 네이버 ⁽¹⁴⁶¹⁾ , 뉴스토마토 ⁽¹⁴⁶²⁾ , 다음 ⁽¹⁴⁶³⁾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¹⁴⁶⁴⁾ , 네이트 ⁽¹⁴⁶⁵⁾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네이버 : 『“의혹 제기”를 ‘미담’으로 둔갑시킨 KBS』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뉴스토마토·다음 : (1) 『“투표법 위반” 윤○○ 前의원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네이트 : (1) 『장애인체육회, 무상급식투표 직원동원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2) 『민주당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 혐의’ 윤○○ 의원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3) 『윤○○ 후원물품 횡령의혹 ‘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4) 『“옥매트 빼돌린 혐의”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네이버·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뉴스토마토·다음 : 각 취하
2013서울조정1466~1467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트	
조 정 대 상	(1) 『한나라당, ‘옥매트 스캔들’로 부패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윤○○ 장애인체육회장, 후원물품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468~1476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에이블뉴스⁽¹⁴⁶⁸⁾, 뉴스캔⁽¹⁴⁶⁹⁾, 동아닷컴⁽¹⁴⁷⁰⁾, 민중의소리⁽¹⁴⁷¹⁾, 디지털 포천신문⁽¹⁴⁷²⁾, 인터넷 서울타임스⁽¹⁴⁷³⁾, 인터넷 데일리경제⁽¹⁴⁷⁴⁾, KNS뉴스통신⁽¹⁴⁷⁵⁾, 다음⁽¹⁴⁷⁶⁾

조 정 대 상

- 에이블뉴스 : (1) 『장애인체육회 공채, 부정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 (2) 『윤○○ 회장, 후원 옥매트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7일자)
- (3) 『“윤○○ 회장, 직원폭행에 사직강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 (4) 『민주당, ‘윤○○ 회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 (5) 『선관위, 윤○○ 회장 선거법 위반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 (6) 『윤○○, ‘아니잖아’ vs 노조, ‘맞는데’』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 (7) 『민주,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의혹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 (8) 『윤○○, 알아서 의원·회장에서 물러나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9) 『“윤○○, 옥매트 횡령 해명 새빨간 거짓”』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10) 『민주당 진상조사위, ‘윤○○ 회장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11) 『“윤○○ 회장, 모든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12) 『윤○○ 회장 ‘일부 의혹’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13) 『체육회 사무총장·홍보부장 직위해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4) 『“윤○○ 회장, 보복인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5) 『“정부, 윤○○ 회장 직무정지 시켜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6) 『“불법적 인사조치는 명백한 보복행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7) 『장애인체육회 직원, 윤○○ 회장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 (18)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태 냉정하게 대처하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 (19) 『윤○○ 회장 의혹 진위여부 가려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8일자)
- (20) 『“윤○○ 회장 해명자료 거짓” 질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 (21) 『“적반하장 윤○○ 회장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 (22) 『윤○○ 회장 즉각 사퇴 촉구 침묵시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 (23) 『“윤○○ 회장 사퇴촉구” 투쟁 강도 높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4일자)
- (24) 『장병완 의원, 윤○○ 회장 해임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 (25) 『[속보] 동부지검, 체육회 압수 수색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 (26) 『검찰,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 (27) 『장병완 의원, 윤○○ 회장 해임 촉구 등 주간뉴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 (28) 『문광부, 윤○○ 회장 사태 뒷집지지 말아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 (29) 『장애인체육 무시 장애인문화체육과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 (30) 『체육회 노조, ‘사무총장 임명 절차’ 반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0일자)
- (31) 『장병완 의원, 윤○○ 회장 해임 촉구 등 주간뉴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0일자)
- (32) 『“옥매트” 윤○○, 이번에는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 (33) 『강동구선관위, 윤○○ 의원 검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 (34) 『옥매트 횡령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 (35) 『윤○○ 회장 불구속 기소 엇갈린 ‘반응’』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 (36) 『윤○○ 회장 정치노름 중단하고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 (37) 『대한장애인체육회이사회 회장 해임 결의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 (38) 『“대의원들 윤○○ 회장 해임 결의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2일자)
- (39) 『“윤○○ 회장 장애인올림픽 참석, 국가 망신”』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 (40) 『윤○○ 회장, 투표법위반·직원폭행 ‘유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 (41) 『윤○○ 회장은 모든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 (42) 『장애인체육회 윤○○ 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 (43) 『문광부, 윤○○ 회장 ‘직무정지’ 배경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p>조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 『문광부의 윤○○ 회장 취임 상인 철회 환영』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45) 『윤○○ 회장 직무정지...법정공방 예고 등 주간 뉴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46) 『윤○○ 회장님 제발 물러나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47) 『윤○○ 회장, 향소심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뉴스캔 : 『민주당 “윤○○ ‘옥매트 차떼기’ 수사외뢰』』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동아닷컴 : (1) 『선관위, 장애인후원 옥매트 뿌린 윤○○ 의원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2) 『[@뉴스룸/이○○] 누가 그를 떠나게 했을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7일자) (3) 『갈 데까지 간 장애인체육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민중의소리 : (1) 『한나라당 의원 5인, 장애인 ‘옥매트 차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3)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장애인체육회 직원 증언 확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4) 『‘옥매트’ 윤○○ 의원, 이번에는 주민투표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 디지털 포천신문 : (1) 『김영우 의원 ‘옥매트 사건’ 연루...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社説] ‘옥매트 연루’ 김영우 의원의 도덕적 책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3) 『검찰, 옥매트 횡령 의혹 윤○○ 의원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0일자) • 인터넷 서울타임스 : (1) 『윤○○ 의원 서울 강동을 옥매트 배포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2) 『윤○○ 의원(강동을) ‘옥매트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3) 『윤○○ 의원 업무상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 인터넷 데일리경제 : 『민주, 한나라 ‘옥매트 차떼기’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 KNS뉴스통신 : (1) 『민주당 “한나라당 옥매트차떼기 사건 규탄, 즉각적인 수사 착수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병완 의원 “한나라당 윤○○ 의원, 장애인 후원품 착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3) 『민주당 “옥매트 차떼기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민노당 “옥매트 사건, 윤○○ 의원 즉각 사퇴하라”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5) 『민주당 “윤○○, 옥매트 의혹 거짓 해명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6) 『“윤○○ 회장 해명시 제시한 기부금영수증도 가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7) 『검찰, 윤○○ 한나라당 의원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9일자) (8) 『강동구 선관위, 강동구 윤○○ 한나라당 의원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9) 『옥매트 횡령 새누리당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 다음 : (1) 『‘벌금형 선고’ 장애인체육회장 거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2)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3) 『윤○○ 직무정지..체육단체장 도덕성에 엄중한 잣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p>신청인주장</p>	<p>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뉴스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기사삭제) • 뉴스캔 · 민중의소리 · 인터넷 서울타임스 · 인터넷 데일리경제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디지털 포천신문 · KNS뉴스통신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 취하 ※ 기타 합의사항 • 동아닷컴 :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네이버, 다음, 네이트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이행방법 • 동아닷컴 [기사삭제] 조정대상기사 (1)을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3)의 내용 중 특정 문구를 삭제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뉴스 : 『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 디지털 포천신문 : 『윤○○ 장애인체육회장, 업무상횡령·선거법위반 무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 KNS뉴스통신 : 『[추후보도문 대한장애인체육회 윤○○ 회장, 업무상횡령과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477	(정정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공항 ‘서비스 평가 8연패’ 비결은 ‘특혜 보안검색’』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4일자 14면) (2)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9면) (3) 『[마감 후] 인천공항의 눈치와 억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30면)
신청인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평가 1위를 지키기 위해 평가 대상 항공편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7일자)

2013광주조정55~57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광주일등뉴스⁽¹⁴⁶⁸⁾, 인터넷 시민의소리⁽¹⁴⁶⁹⁾, 중앙통신뉴스⁽¹⁴⁷⁰⁾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일등뉴스 : 『장병완 “비리혐의 기소 윤○○ 장애인체육회장 패럴림픽 참석은 국가적 망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인터넷 시민의소리 : 『[장병완] 윤○○ 회장 해임 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 중앙통신뉴스 : (1) 『윤○○ 의원 ‘장애인 후원 물품 옥매트 횡령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2) 『장병완 의원 ‘윤○○ 옥매트 횡령 사건’ 해명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3) 『장병완 의원 ‘윤○○ 회장이 제시한 기부금 영수증 가짜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4) 『장병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윤○○ 회장 해임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5) 『장병완 의원 “윤○○ 장애인체육회장 올림픽 참석 국가 망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남조정54		(정정청구) 의료법인 ○○재단 對 창원KBS-1TV
조 정 대 상	뉴스인사이드 프로그램 『사천노인병원 횡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5일자 22:50)	
신청인주장	도립 사천노인병원의 전 위탁운영자인 신청인 재단이 병원 진입로를 막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현 수탁자가 병원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0~1485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노조사무실 단전단수에 농약살포까지...판결 짓밟는 ○○○○』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7월 16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노조사무실 앞 잔디밭에 머물던 노조원들에게 대놓고 농약을 살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6		(정정청구) 1. ○○교회, 2. 윤○○ 對 MBC-TV
조 정 대 상	PD 수첩 프로그램 『967회 - 목사님,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7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부당하게 재정을 전횡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7		(정정청구) ○○○○교육문화회관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교육문화회관 소속 수영강사들 부당 대우 '반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 소속 수영강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교육문화회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488		(정정청구) 황교안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A01면) (2) 『삼성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과 관련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A02면)	
신청인주장	법무부 장관인 신청인이 과거 검사 시절 삼성 관련 수사 후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9~149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地自體 기관長 궤찬 통진당원 38명… 野圈연대의 특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A05면) • 조선닷컴 : 『[단독] 地自體 기관長(산하 단체장, 지자체 지원 사회적 기업·민간단체 대표 등 포함) 궤찬 통진당원 38명… 野圈연대의 특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통합진보당 당위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2면) • 조선닷컴 : 『[바로잡습니다] 11일자 A5면 ‘地自體 기관長 궤찬 통진당원 38명…野圈 연대의 특혜?’ 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2013서울조정1493~149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네트워크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정대상	『통진당, 서울시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바람처럼 궤찼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9월 6일자 4면, 동아닷컴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당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에 진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단체를 소개하였으나 신청인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없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0월 26일자 22면, 동아닷컴 10월 26일자)
2013광주조정58~62 (매체별 정정청구) ○○○○교육문화회관 對 뉴시스 ⁽⁵⁸⁾ , 전남매일 ⁽⁵⁹⁾ , 인터넷 전남매일 ⁽⁶⁰⁾ , 호남신문 ⁽⁶¹⁾ , 인터넷 호남신문 ^(62, 61과 병합)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하루 7시간을 물속에서” 비정규직 수영 강사 반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5일자) • 전남매일·인터넷 전남매일 : 『“생리 중 물속에서 강습하라고?”』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3년 9월 16일자 8면, 인터넷 전남매일 9월 16일자) • 호남신문·인터넷 호남신문 : 『광주시 비정규직 수영 강사 ‘뿔났다’』 제하의 기사 (호남신문 2013년 9월 16일자 8면, 인터넷 호남신문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소속 수영강사들에게 하루 7시간을 물속에서 강습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전남매일·호남신문·인터넷 호남신문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전남매일 : 취하 (사유 : 전남매일에 정정보도 게재)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반론보도문] ‘하루 7시간을 물속에서’ 비정규직 수영강사 반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1일자) • 전남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6면) • 호남신문·인터넷 호남신문 : 『[바로잡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수영강사 관련』 제하의 기사 (호남신문 2013년 10월 30일자 2면, 인터넷 호남신문 10월 29일자)

2013서울조정1497		(정정청구) ○○○○○협회아시아 서울지점 對 경향신문
조정대상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업체, 8년간 기기 검증 '0』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17면)	
신청인주장	원전의 품질서류 재검증 업체로 선정된 신청인이 최근 8년간 원전 기기검증 실적이 전무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498~1501		(매체별 추후청구) 양○○ 외 12인 對 조선일보 ⁽¹⁴⁹⁸⁾ , 중앙일보 ⁽¹⁴⁹⁹⁾ , 동아일보 ⁽¹⁵⁰⁰⁾ , MBC-TV ⁽¹⁵⁰¹⁾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광고주 협박 24명 전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1면) 중앙일보 : 『광고주 압박 24명 모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2면) 동아일보 : 『광고주 협박' 누리꾼 24명 모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1면)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모두 유죄” .. 반발』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19일자 20:5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문에 대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조선닷컴에 추후보도, 부제소) 중앙일보 : 취하 (사유 : 온라인 중앙일보에 추후보도 게재) 동아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동아닷컴에 추후보도, 부제소) MBC-TV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 방송사 내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p>※ 기타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조선닷컴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검색되도록 함 동아일보 : 동아닷컴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검색되도록 함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조선닷컴에 추후보도]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법원·검찰·경찰)색션의 뉴스 목록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동아일보 : [동아닷컴에 추후보도] 동아닷컴 홈페이지 사회면(검찰-법원판결)색션의 뉴스 목록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MBC-TV : [추후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추후보도, 진행자가 추후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일보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2면) 조선닷컴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온라인 중앙일보 : 『중·조·동 광고불매운동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동아닷컴 : 『동·조·중 광고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11일자 2면, 동아닷컴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02~1503 (정정·손배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뉴포커스	
조정대상	『[단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현 직원 인터뷰(1)』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정부예산 등으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예산낭비 등 운영전반에 문제가 많다는 신원불명의 직원 인터뷰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현 직원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504~1505 (정정·손배청구) 임○○ 對 노컷뉴스	
조정대상	(1) 『민주평통 ○○ 회장 ‘북한 막말 발언’ 도마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2) 『안일한 민주평통 ○○ 회장...안보 ‘연수’를 ‘여행’으로 여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3) 『공·사 구분 못하는 민주평통 ○○ 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4) 『○○ 민주평통 “조국 통일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 협의회장인 신청인이 공식 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막말을 하고, 안보연수를 여행쯤으로 여기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지역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행결과	『○○ 평통 회장의 북한 막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8일자)

2013서울조정1506 (정정청구) ○○○○(주) 對 SBS-TV	
조정대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 ‘임대 수수료’ 덜 내려고...』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3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멀리플렉스 영화관의 홍보시설 재임대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8억 6천여만원의 임대수수료를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SBS에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 “○○○점 이면계약 및 수수료 누락 사실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5일자)

2013서울조정1507~1508 (정정·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U s line	
조정대상	(1) 『교육부, “번져가는 ○○○대 사태 보고만 있지 않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2일자) (2) 『[단독] 이사회-대학본부 내홍 ○○○대, 30일부터 감사원 감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내홍으로 인해 2013. 9. 30부터 감사원 특별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감사받은 사실이 없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509		(정정청구) (주)○○제약 對 이버즈
조 정 대 상	『○○○가 피로회복제?...‘고객님~세뇌되었군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피로회복제 광고를 하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권고조치는 이미 광고를 수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510~1513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1. 한국방송공사, 2. 이○○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KBS, 이○○ 이사장 ‘인사청탁’ 의혹 특별감사』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3년 10월 9일자 1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KBS 이사장이 자신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KBS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의혹을 부각하고 감사결과를 부정적으로 예단하여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514~1515		(정정 · 손해청구) 재단법인 ○○시청소년수련관 對 구리남양주넷
조 정 대 상	『○○시청소년수련관, 중증장애인에 “XX욕감하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인이 주차문제로 항의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련관의 장애인 출대가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89~190 참조)]	
2013경기조정152~153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미디어와이
조 정 대 상	『슈퍼 ‘갑’의 대명사 이○, 그 명예를 모르는 이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언론사 편집국장인 신청인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법적책임은 후배에게 강요하고 회사 수익을 챙긴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54~15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산시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김철민 시장에게 상식이란?』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10월 4일자 18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10월 4일자)	
신청인주장	안산시장이 특정 지역신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전체기사’면 초기화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24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타임스 : 『김철민 시장에게 상식이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7일자) 인터넷 안산타임스 : 『[반론보도문] ‘김철민 시장에게 상식이란?’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7일자) 	

2013서울조정1516~1519 (매체별 손해청구) 유○○ 對 연합뉴스 ⁽¹⁵¹⁶⁾ , 뉴스1 코리아 ⁽¹⁵¹⁷⁾ , 미디어스 ⁽¹⁵¹⁸⁾ , 오마이뉴스 ⁽¹⁵¹⁹⁾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신문 보는(?) 회장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 뉴스1 코리아 : 『‘○○일보’로 얼굴 가린 장○○ 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 미디어스 : 『○○일보 전직기자들 ‘장○○ 구속수사’ 탄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오마이뉴스 : 『신문으로 얼굴 가리는 장○○ ○○일보 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모 언론사 회장의 수행기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삭제) • 뉴스1 코리아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수정) • 미디어스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수정) • 오마이뉴스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520~152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제약 對 헬스경향, 인터넷 헬스경향	
조 정 대 상	『‘○○○ 효능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헬스경향 2013년 10월 17일자 5면, 인터넷 헬스경향 10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일반의약품이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 피로회복 효능이 없다는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헬스경향 반론보도] 홈페이지 <기획특집>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경향 : 『○○제약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6면) • 인터넷 헬스경향 : 『‘○○제약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헬스경향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22 (정정청구) 이○○ 외 12인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뉴스! 정면승부] “완공 5개월된 송례문, 단청 벗겨진 이유는?” [YTM FM]』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참여한 송례문 보수 공사 석공팀이 전통기법이 아닌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현대공법으로 작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523~1524 (정정·반론청구) 국회사무처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430억짜리 ‘국회 전용 콘도’ 짓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제2국회의원 회관이 지나치게 호화스러우며, 장애인 편의성은 열악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후속보도] 후속보도문([알림])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기사 중 첫 머리 [편집자의 말]에 이어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함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2013전북조정32~34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이○○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VIEW 프로그램 『〈오늘의 이슈〉 전북지방경찰청 부적절한 외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9일자 18:20)
신청인주장	경찰청 경무과장인 신청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제때 음식값을 내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생방송 VIEW 프로그램 『지난 8월 19일 생방송 뷰에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9일자 18:20)
2013서울조정1526~15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학교, 2. 전○○ 對 서울문화투데이,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투데이 : (1) 『예술계 대학 각종 비리 또다시 도마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1면), (2) 『비리로 흔들리는 예술대학, 출구는 어디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5면)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예술계 대학 각종 비리 또다시 도마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 대학의 교수 임용에 비리가 있었으며, 소속 교수(신청인 2)가 학생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p> <p>※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서울문화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는 합의사항을 이행한 직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인터넷서울문화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함</p>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투데이 : 『“H대학 비리 의혹”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면)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H대학 비리 의혹”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013경남조정55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논평] ‘MOU’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가 한국해양대와 거제캠퍼스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캠퍼스 부지 20만평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최상단에 조정대상기사 상의 MOU 체결 사진과 함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p>
이 행 결 과	『거제시, 한국해양대 거제캠퍼스 구축 MOU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28, 1535~1536, 1564~1565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인 對 1. 전자신문 인터넷 ^(1528, 1535~1536, 1565 각 정정청구) , 2. 전자신문 ^(1564 정정청구)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인터넷 : 『[2013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평가]종합평가 1위부터 113위 까지 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 • 전자신문 : 『교육과정 늘리고 창업 활성화...○○·○○○·○○○대 최상위권 포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들이 피신청인의 대학평가 조사에 응한 바 없음에도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전자신문에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들이 조정결과와 별도로 추가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혀온 바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 이행방법 : [전자신문 인터넷에 정정보도] 전자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날의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자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2013서울조정1529~153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정대상	『영주시, 시의원 땅 용도변경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0월 16일자 13C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시의원인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용도변경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광주조정63		(정정청구) 장성군 對 장성군민신문
조정대상	『군, 내년도 예산 줄어들 것으로 관측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장성군의 국비 사업 유치와 관련해 적자가 예상되는 수영장 건립을 제외하고 새로운 국비사업 유치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군, 내년도 예산 줄어들 것으로 관측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2면)	
2013서울조정1533~1534		(정정·손배청구) 광○○ 對 서울교육방송
조정대상	『양기대 시장을 데리고 살아-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시장을 데리고 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취재수첩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주일 이상 게시함, 이를 완료한 후 정정보도문을 삭제할 경우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나 조정대상기사도 함께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행결과	『광명시 ○○○○실 ○○, 민원인에 “시장 데리고 살아라” 사실과 달라(2013서울조정1533·1534 정정, 손배1,000만 원 사건 조정합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7일자)	

2013강원조정20 (손배청구) 최○○ 對 삼척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삼척) 프로그램 『대형마트 영업제한 행정예고, 다음달 시행 예정』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9일자 20:40)
신청인주장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삼척MBC-TV 홈페이지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삼척MBC-TV 홈페이지 기사삭제] 조정대상보도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도록 함
2013서울조정1537~1538 (정정 · 손배청구) 옥○○ 對 미디어펜(Mediapen)	
조 정 대 상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왜 옥○○ 사무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받은 것임에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기사수정]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와 남편 구속, 법의 준엄한 판단 필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중 “옥○○ ○○○ 발전위원회 前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부분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1539 (손배청구) 재단법인○○○○장학재단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장학숙 부지매입과정 들여다보니 (수정 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숙소사 건립부지를 시세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매입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540~1541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對 MBC-TV ^(1540 반론청구) , 쿠키뉴스 ^(154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납’ 함유 과일주스 수백 톤 유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0일자 19:55) • 쿠키뉴스 : 『수입이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주스, 납 범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국제 기준치보다 3배 높은 납 성분이 포함된 과일주스를 현재에도 유통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 • 쿠키뉴스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후속보도 게재) ※ 이행방법 • MBC-TV [반론보도]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하고,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한 <○○○> 제품 그림이 포함되도록 함 [iMBC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의 VOD 화면을 보도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반론 보도문 “남아공산 주스, 2011년 이후 수입 제품은 국제 기준치 적합”』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5일자 17:00) • 쿠키뉴스 : (1) 『“남성분 제로 ○○○ 주스, 안심하고 드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2) 『친절한 쿠키자』 ○○○야, 미안~ 섹시한 기사로 많이 아팠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2013서울조정1542 (정정청구) 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청와대 춘추관장 부친 조의금 10억 넘었다는데...”』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춘추관장인 신청인이 부친상 중 받은 조의금이 15~17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최○○ 춘추관장 조의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2013대전조정7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LH ○○신도시 첫 아파트 청약미달 사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일반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신도시 LH아파트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사이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만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3서울조정1543~1544 (정정·반론청구) ○○대학교병원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대병원, 환자보다 ‘비용 절감’ 신경』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각종 검사실적을 늘리고 진료용 물품을 저렴한 것으로 구입해 환자보다 비용절감에 신경 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사회>섹션 초기화면 주요기사 코너의 기사목록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2013년 10월 4일자 12면』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545~154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류○○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민간단체 기부금 쌈짓돈처럼 사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12면) • 동아닷컴 : 『[단독] 유니세프 한국총 첫 공채출신 사무총장 1월초 해임 이유 알고 보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해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47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對 대가야신문
조정대상	(1)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한 회천제방 붕괴 원인, 성주댐 방류가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1면) (2) 『2013년 회천 제방붕괴 사건 재구성』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6~7면)
신청인주장	고령군 회천 제방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성주댐의 방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신청인 언론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관련 논란을 둘러싸고 충분히 사실과 후속보도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2013서울조정1549~156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함○○ 외 7인 對 컵뉴스 ^(1549~1550) , 크리스찬연합신문 ^(1551~1552)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1553~1554) , 주간 교회연합신문 ^(1555~1556)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1557~1558) , 기독교한국신문 ^(1559~1560) ,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1561~1562)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컵뉴스 : (1) 『○○○교회 “정당한 권한 절차” 입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 『유언비어에 휩싸인 ○○○교회의 정상화 열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3) 『○○○교회 1년8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4) 『작교연 ○○○교회서 희망콘서트 개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5) 『○○○교회 목사 면직 청원 접수 적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 크리스찬연합신문 : (1) 『○○○교회의 제명 출교 “정당한 권한과 절차” 입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12면) (2) 『유언비어에 휩싸인 ○○○교회의 정상화 열망』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9일자 9면) (3) 『작교연 ○○○교회서 희망콘서트 개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5면),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1) 『징계자 8인 주장에 ‘허위 사실 유포’ 맞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 『노회측 “문제 없다” VS 교회측 “총회 헌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 주간 교회연합신문 : 『○○○교회, “모든 절차 문제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7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1) 『○○○교회, 교인 제명출교처분 두고 상반된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 『“천주교인과 재혼” 두고 진실공방 가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3) 『○○○교회 사태, ‘선부른 판단 이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4) 『○○○교회, 목사면직청원접수 적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교인 제명출교처분 두고 상반된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6면) •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 『교회를 빼앗으려는 노회 기사분류: 교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교회에서 제명출교 처리를 당한 신청인들이 모 목사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이들이 제기한 목사 면직청원 접수에 적법성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캡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크리스찬연합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주간 교회연합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독교한국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87~188 참조)]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캡뉴스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교회·교단> 섹션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 제목을 72시간 이상 게재함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기사>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72시간 이상으로 게재함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교계교단>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72시간 이상 게재하고, 이를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1) 및 (3)의 본문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캡뉴스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 크리스찬연합신문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4일자 2면)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교회 제명출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 주간 교회연합신문 : 『“○○○교회 제명출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4일자 7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6면)
<p>2013광주조정64~6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건설(주) 對 전광일보, 인터넷 전광일보</p>	
<p>조 정 대 상</p>	<p>『○○ 관내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자행 ‘또 말썽』 제하의 기사 (전광일보 2013년 9월 30일자 1면, 인터넷 전광일보 9월 30일자)</p>
<p>신청인주장</p>	<p>도로확장공사를 시행중인 신청인 회사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 리 결 과</p>	<p>▷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전광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p>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광일보 : 『“○○ 관내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자행 ‘또 말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2일자 2면) • 인터넷 전광일보 : 『“○○ 관내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자행 ‘또 말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63 (정정청구) 국가인권위원회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또, 귀 막고 입 닫은 인권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8면)
신청인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송전탑 긴급구제 신청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서울신문에 정정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서울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동안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수정]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중 <표>는 삭제하며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11월 16일자 6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566 (정정청구) 서울시태권도협회 對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국기원 신임 이사 선임은 했지만? 임원 결격 사유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장이 국기원 신임이사로 선출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기원 신임이사 서울시태권도협회 임○○ 회장 결격 사유 안 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67 (정정청구) 장○○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여당의 ‘SNS 흑역사’를 보면 국정원 댓글이 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회의원 시절 제안한 법률개정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이 행 결 과	『“SNS 흑역사” 기사 관련 장○○ 전 의원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9일자)

2013서울조정1568~1569 (정정·손배청구) 심○○ 對 SBS-TV	
조정 대상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네트워크 현장』 청주 - 800만 관객 사로잡은 한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4일자 17:00)
신청인주장	영화 ‘관상’에 나오는 의상 대부분이 청주의 한 한복집에서 만들어졌다는 보도되었으나, 해당 한복집은 신청인에 원단만 제공하였을 뿐 의상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뉴스 퍼레이드 - 네트워크 현장(전국방송)〉 프로그램 말미(기상 정보 전)에 정정보도함
이행 결과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800만 관객 사로잡은 한복』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6일자 17:00)

2013서울조정1570~157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최○○ 對 현대일보, 인터넷 현대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일보 : 『인천시, 비공개 처리 결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1면) • 인터넷 현대일보 : 『4년간 정보공개 청구 1,608건 ‘악성민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천시에 4년간 1,68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많아 최근 신청인이 제기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현대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인천시, 비공개 처리 결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3년 11월 22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11월 22일자)

2013경기조정156~15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최○○ 對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일보 : 『3년여간 진정·민원만 1,608건 악성민원인 알권리 거부 타당』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18면) • 인터넷 기호일보 : 『3년여간 진정·민원만 1,608건 악성민원인 알권리 거부 타당』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천시에 4년간 1,68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많아 최근 신청인이 제기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기호일보에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 결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11월 22일자 2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574~1575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조정대상	『<주미 외교관 영주권 신청설 '진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주한미국 외교관인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미국 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미 애틀랜타주 K영사, "영주권 신청한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576 (반론청구) ○○○코리아 주식회사 對 KBS-1TV	
조정대상	(1) KBS뉴스 7 프로그램 『납품 규정 변경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9일자 19: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의혹의 KTX 선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30일자 06:00) (3) KBS 뉴스12 프로그램 『값싼 부품·AS 단축...의혹의 KTX 선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30일자 12: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구성품이 저가 외국산이며,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단축 변경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약속)
2013광주조정68~6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담양군 對 담양신문, 인터넷 담양신문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양신문 : 『'사설'-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1면) 인터넷 담양신문 : 『[사설]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수입에 대해 의혹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담양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양신문 : 『'사설' - 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2면) 인터넷 담양신문 :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관련 반론 보도문 : '사설'- 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2013전북조정35 (손배청구) 재단법인 ○○○장학재단 對 국제뉴스	
조정대상	『○○장학숙 부지매입과정 들여다보니 (수정 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장학재단의 기숙사 부지 매입 과정에 의혹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남조정58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社告] 거제시의 ‘거제인터넷신문 탄압’ 당당히 맞설 것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 시에 비우호적인 논평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를 삭제하도록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3경남조정59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거제 택시 탑재 내비게이션 부실 의혹 논란 계속될 전망』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택시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부실 의혹에 관해 거제시브랜드택시위원회가 해명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거제시가 위원회와 사전 대책회의를 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메인탑 하단 기사목록에 조정대상기사 하단의 사진과 함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거제시, 브랜드택시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578~157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조○○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초특가” “반값 할인” 조심』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5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할인을 뺏기기” 꿈수』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6일자 06:00) • iMBC : (1) 『소셜커머스 ‘할인을 뺏기기’...“반값 할인” 꿈수 조심』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2) 『“1만 원 할인해준단더니 4천 원?”...소셜커머스업체 ‘꿈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쌀국수집이 소셜커머스에서의 ‘뺏기기 할인’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반론보도] <이브닝 뉴스> 및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iMBC에 반론보도] MBC-TV에 반론보도가 있는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반론보도문을 제공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1)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소셜커머스 할인율’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17:00), (2) MBC 뉴스투데이 (1부) 프로그램 『‘소셜커머스 할인율’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4일자 06:00) • iMBC : 『‘소셜커머스 할인율’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2013경기조정160~161 (정정·손배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공항공사 해외출장비는 ‘쌘짓돈’ 통장으로 받고 법인카드로 결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해외출장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지에서는 법인카드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출장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2면)
2013서울조정1580, 1592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협동조합 對 전자신문 인터넷, 전자신문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인터넷 : 『[이슈분석]속살이 ‘한전PLC’ 사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 전자신문 : 『“담합에 불량까지…스마트그리드 ○○○ 사업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6면)
신청인주장	한국전력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저압원격검침 사업에 사용되는 PLC(전력선통신)기술에 대해 현장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에 관련된 납품업체들의 조합인 신청인이 조합에 참여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PLC칩을 공급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인터넷 : 취하 • 전자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전자신문 인터넷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전자신문 : [전자신문 인터넷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전자신문섹션 내 디바이스섹션 내 전체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문 :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6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칩 공급 담합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581~1582 (정정·손배청구) ○○건설주식회사 對 현대일보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포시, 불법매립으로 ‘몸살’』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1면) (2) 『김포시장 최측근 개입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김포시 고촌지역 토사운반 계약과 관련하여 시장의 최측근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583~158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 : 『“정부 지원금 못 받으니, 졸업유예자 등록금 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10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교육역량사업 탈락한 ○○○○, ‘졸업유예자’에 돈 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육역량사업의 탈락 책임을 졸업유예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섹션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이행결과	『○○○○ 졸업유예자 대상 학칙개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3년 12월 3일자 10면, 아시아투데이닷컴 12월 3일자)
2013서울조정1591 (반론청구) 이○○ 對 선경일보	
조정대상	『부평구 산곡동 ○○산 수백여명 서명 날인하여 본보와 구청에 진정서와 탄원서 제기… 부평구청 확인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9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식당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등산로를 넓혀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산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결과	『부평구 산곡동 △△산 등산로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4면)
2013광주조정70~71 (정정·손배청구) 이○○ 對 무안신안인터넷뉴스	
조정대상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민원인의 상담을 거부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되어 정정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손배청구 : 취하 ※ 기타 결정사항 : [기사수정]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인과 관련된 동영상(제목: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해야 한다’, 제목: ‘무안○○○○실에 왜 경찰이’)을 삭제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1593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對 조선일보
조정대상	『얼빠진 농어촌공사… 72억 詐欺 당하고도 몰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10면)	
신청인주장	한국농어촌공사가 거액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불량 담보물’이어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부동산은 ‘불량 담보물’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조선닷컴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594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對 TV조선
조정대상	TV조선 뉴스쇼 판 프로그램 『“22초 초대형 국책사업” 공무원 고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6일자 21:40)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주관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부풀려진 사업비를 승인하여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고, 총 사업비대비 국가채무상환액이 너무 적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인터넷 TV조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VOD다시보기 및 한글자막)의 본문 바로 아래에도 이어서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TV조선 뉴스쇼 판 프로그램 『“새만금 방조제 사업 공무원 고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1:40)) • 인터넷 TV조선 : 『“새만금 방조제 사업 공무원 고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595~159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1) 『“2012 관권부정선거”, 공영방송도 사실상 ‘공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1면), (2) 『“1면 ‘2012 관권부정선거, 공영방송도 사실상…’서 계속] KBS·MBC의 대 보도·불방 논란…박근혜 당선에 결정적 역할』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3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2012 관권부정선거”, 공영방송도 사실상 ‘공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불공정선거방송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섹션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2012년 관권부정선거” 의혹, 공영방송도 비난 받아야』로 수정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KBS 불공정 선거방송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KBS 불공정 선거방송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2) 『“2012년 관권부정선거” 의혹, 공영방송도 비난 받아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2013경기조정162~16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이○○ 對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성추행 구경간부 징계 받고도 피해여성의 삶 끝없이 난도질』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18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추행과 관련해 징계를 받고도 해당 피해여성을 계속 괴롭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행정심판이나 무고죄 등 재판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함 ※ 이행방법 : [조건부 후속보도]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B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결과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면 기호일보와 기호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면 기사로 이를 즉시 보도함
2013서울조정1597~1598 (정정·손배청구) 남○○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女 담임이 학교에서 어이 왕따시켜” 외조부, 학교앞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급의 아이를 왕따시켜 아이가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599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문체부의 끝없는 ‘갑질’ - ‘찍어서 자르겠다’ 녹취 폭로 이후에도 보복성 압박가해』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아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뉴스타파N>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또한 결정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2013경기조정166~167, 173~174 (병합) 시흥시 對 시흥뉴스라인 ^(166, 173 각 정정청구) , 뉴스라인 ^(167, 174 각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신천역 삼미시장 출구 시흥시가 변경 요구”』 제하의 기사 (시흥뉴스라인 2013년 8월 12일자 1면, 뉴스라인 8월 12일자) (2) 『시흥시장, 삼미시장 출구폐쇄 공문 보내놓고 시위 참여』 제하의 기사 (시흥뉴스라인 2013년 8월 19일자 1면, 뉴스라인 8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시흥시가 복선전철의 사업시행업자 측에 신천역 삼미시장 방향 출입구의 설치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입구의 개설을 요구하는 시위현장을 방문하는 식의 표리부동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600 (정정청구) 사단법인 ○○○○경영연구회 對 KBS-1TV	
조정대상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미납 추징금 25조 원...안 내실 겁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2일자 22:00)
신청인주장	모 전자용품점, 모 중견기업진단 등이 신청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재직하 바 있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언급되거나 거명된 바 없어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동일성을 추지할 수 있거나 이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 할 수 없다)
2013서울조정1601~1602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김○○ 對 KBS-1TV, KBS미디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미납 추징금 25조 원...안 내실 겁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2일자 22:00) • KBS미디어 : 『미납 추징금 25조 원...안 내실 겁니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기업 회장이었던 신청인이 머물렀던 해외 소재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전경과 신청인이 잠을 자는 모습 등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2013서울조정1603~1604 (매체별 정정청구) 신의진 對 한경닷컴, 게임톡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닷컴 :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 게임톡 :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안’이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산업 섹션 초기화면 최신뉴스 코너의 기사목록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게임톡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뉴스섹션 초기화면 좌측상단 기사목록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경닷컴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게임톡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605 (정정청구)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 역북지구 옆 ○○지구 개발사업 성사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지역 개발사업의 자금주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총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알림기사] 홈페이지 전국-경기면에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알림기사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단, 신청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알림기사문을 삭제할 수 있음)
이 행 결 과	『○○ ○○지구 개발』 기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7일자)

2013서울조정1606 (손배청구) 신의진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신의진-게임업계 2차전?...』서명운동 방해』 Vs. “압박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게임종독법 반대서명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이를 중지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07, 1614 (기사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부속○○○○○고등학교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고 전·편입학 부정... 교육 당국은 무덤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 중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으며, 신청인 학교의 일부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2013서울조정1608~1611 (매체별 정정청구) (주)한국○○○카드 對 KBS-1TV, KBS미디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한국 ○○○카드 대부분 수익계약...○○ ○○○만 수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5일자 21:00) (2) 서울시 ○○○카드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5일자 21: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서울 ○○○카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 넘겨』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8일자 21:00) (4) KBS 뉴스9 프로그램 『서울시, 입찰참여 업체에 제안서 대리 작성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9일자 21:00) (5) KBS 뉴스광장 (1부) 프로그램 『서울시 ○○○카드 시스템 특혜 의혹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06:00) (6) KBS 뉴스9 프로그램 『서울시 ○○○카드 최근 입찰에도 비리 있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1일자 21:00) • KBS미디어 : (1) 『한국 ○○○카드 대부분 수익계약...○○ ○○○만 수익』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2) 『[단독] 서울 ○○○카드 사업 ‘특혜 의혹’...복취록 입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3) 『[단독] “서울시 공무원, 선정 당일 심사위원 명단 넘겨”』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4) 『[단독] ○○○카드 사업 제안서 대리 작성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9일자) (5) 『[단독] 서울 ‘○○카드’ 권한 통째로 대기업에 넘어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1일자) (6) 『서울시, 교통카드 최근 입찰에도 비리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612~1613 (정정·반론청구) ○○농산(주) 對 푸드투데이	
조정대상	『○마켓서 구매한 ‘○○떡국’ 먹은 소비자 구토·복통』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떡국’ 제품을 먹고 복통 등을 일으킨 소비자의 항의에 신청인 회사가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기타 결정사항 :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에 있는 ‘○마켓’을 ‘V마켓’으로 수정하고, ○마켓 전경 사진의 상호를 음영처리함</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함</p>
이행결과	『“○○떡국” 먹은 소비자 구토, 복통’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615~1616 (정정·손배청구) 조○○ 對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	
조 정 대 상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통권 88호 45~53면)
신청인주장	공동육아어린이집 조합원인 신청인이 다른 아이의 엄마로부터 ‘그 집 아이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민들레이야기 섹션 ‘알려드립니다’ 코너에 반론보도문을 3개월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 : 『민들레 88호 부모일기를 읽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2013광주조정72~7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담양군 對 담양신문, 인터넷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담양신문 2013년 9월 10일자 1면, 인터넷 담양신문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기사의 오타 등을 문제삼아 조정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담양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양신문 :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2면) • 인터넷 담양신문 :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2013전북조정36~37 (정정·손배청구) (유)○○종합건설 對 익산 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창인시장 주차장, ‘특혜 의혹과 시민들에게 원성 높아져 대책마련 시급』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익산 창인시장 주차장 공사를 시공한 신청인 회사 대표가 언론사 대표이며 이로 인해 익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168~172	(매체별 정정청구)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對 경기신문 ⁽¹⁶⁸⁾ , 인터넷 경기신문 ^(169, 168과 병합) , 인터넷 경기일보 ⁽¹⁷⁰⁾ , 용인신문 ⁽¹⁷¹⁾ , 인터넷 용인신문 ^(172, 171과 병합)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신문·인터넷 경기신문 : 『○○ ○○지구 개발 ‘본궤도’』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1월 5일자 1면, 인터넷 경기신문 11월 4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 ○○지구 개발 기지개 이달중 조합원 총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 용인신문·인터넷 용인신문 : 『○○의 새로운 랜드마크 ‘○○지구’ 개발 청신호』 제하의 기사 (용인신문 2013년 11월 4일자 1면, 인터넷 용인신문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지역 개발사업의 자금주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협약을 맺고, 총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신문·인터넷 경기신문·인터넷 경기일보 : 각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 용인신문·인터넷 용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신문·인터넷 용인신문 : [알림기사] 홈페이지 기사목록 앞부분에 알림기사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신문·인터넷 경기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1월 25일자 2면, 인터넷 경기신문 11월 24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 용인신문·인터넷 용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용인신문 2013년 12월 2일자 2면, 인터넷 용인신문 12월 3일자)
2013서울조정1617~1618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윤○○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여학생회 선거권 우리에게도 달라” ○○대 남학생들의 속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1월 9일자 9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인 신청인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619~1620	(정정·손배청구) 신○○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대통령 동생’ 친구 건드린 께쌘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10~12면)
신청인주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신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인터넷 시사저널에 정정·반론·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에 정정·반론·사과보도] 조정대상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정·반론·사과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대통령 동생’ 친구 건드린 께쌘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15면)

2013서울조정1621~162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옥○○ 對 서울교육방송 ^(1621~1622) , 한국대학방송 ^(1623~1624) , 주택뉴스 ^(1625~1626) , HKBC환경방송 ^(1627~1628)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교육방송 : (1) 『옥○○ 사무총장, 정당한 취재에 ‘검찰고소’로 기자를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2) 『옥○○ ○○관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뭔가 미심쩍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3) 『홍준표 도지사는 왜 옥○○ 사무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 한국대학방송 : (1) 『옥○○ 사무총장 명의수탁 의혹 재산상속 ‘도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2) 『옥○○ 사무총장, “검찰에 고소하겠다”며 기자를 겁박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3) 『옥○○ ○○관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도덕성 계속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4) 『옥○○ 사무총장 여전히 ○○관광발전위원회에...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 주택뉴스 : 『옥○○氏 사무총장으로서 공무원 자격 충분한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 HKBC환경방송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왜 옥○○ 사무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지역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부친명의의 신탁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교육방송·한국대학방송·주택뉴스 : 각 조정불성립결정 • HKBC환경방송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29, 1639, 1641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민중의소리 ⁽¹⁶²⁹⁾ , KBS미디어 ⁽¹⁶³⁹⁾ , 디오데오 ⁽¹⁶⁴¹⁾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의 소리 : 『꾸지뽕이 뇌졸중 약?... 허위·과대광고 일당, ‘덜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 KBS미디어 : 『원산지 둔갑에 과장광고 혐의 건강식품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 디오데오 : 『꾸지뽕추출액 허위광고 역대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의소리·디오데오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KBS미디어 : 취하 	
2013서울조정1630, 1650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노컷뉴스, 네이트
조정 대상	『‘꾸지뽕’ 추출액 알고보니...원산지도 효과도 가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1, 1644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e머니투데이, 네이트	
조 정 대 상	『형성 청정 ‘꾸지뽕’...원산지도, 효능도 ‘가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2, 1648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뉴스1 코리아, 네이트	
조 정 대 상	『과대 · 허위광고, 꾸지뽕 판매 4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3, 1646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인터넷 경향신문,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 추출액으로 치료하세요” 허위광고 한 업자들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4, 1649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한경닷컴, 네이트	
조 정 대 상	『혈전제거에 특효? 꾸지뽕 허위 과장광고한 제조업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5, 1651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인터넷 YTN,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 과장광고로 7억 챙긴 업자들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6, 1653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 추출액 “혈전 제거에 좋다” …속여 7억여 원 편취한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7, 1643, 1645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연합뉴스 ⁽¹⁶³⁷⁾ , 네이버 ⁽¹⁶⁴³⁾ , 네이트 ⁽¹⁶⁴⁵⁾	
조 정 대 상	『꾸지뽕추출액 허위광고 역대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8, 1642, 1647 (매체별 손배청구) 윤○○ 對 뉴스 ⁽¹⁶³⁸⁾ , 네이버 ⁽¹⁶⁴²⁾ , 네이트 ⁽¹⁶⁴⁷⁾	
조 정 대 상	『‘꾸지뽕이 특효약?’…허위·과장광고 판매자 달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40, 1652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추출액, 치료제로 허위광고 일당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54~165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데이 : 『법 이해 못하는 공무원, 분쟁땀 무조건 “甲이 잘못”』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10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법 이해 못 하는 공무원, 무조건 ‘갑’ 잘못?』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축산계열화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협회 계열화사업협의회 분쟁조정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3년 12월 6일자 12면, 아시아투데이닷컴 12월 5일자)

2013서울조정1656~1657 (정정·손배청구) 백○○ 對 동북일보	
조정대상	(1) 『[황설수설 ① 죄총우돌]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무엇이고 대기와 종지와의 차이는 왜있을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7면) (2) 『[황설수설 ② 죄총우돌] 대인이 소인으로 보일 때 그 사람 행동에 있다.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직위를 이용 협박할 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7면) (3) 『[황설수설 ③ 죄총우돌] 큰 그릇이 종지로 보일 때 추하게 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7면) (4) 『[직언 ⑤ 직설] 편리한대로 말 바꾸고 행동 바꿀 때 배신감 생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7면)
신청인주장	2005년 강북구의회 예산심의시 신청인이 선물을 받고 특정신문 구매 예산을 통과시킨 것처럼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인터넷 동북일보에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동북일보에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을 3개월 이상 게재함
이행결과	『[“황설수설-죄총우돌]대인과 소인의 차이, 대기와 종지의 차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동북일보 2013년 12월 6일자 7면, 인터넷 동북일보 12월 6일자)
2013서울조정1658 (정정청구) 1. ○○○○학교, 2. 이○○ 對 KBS-2TV	
조정대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따돌림, 파면, 소송 “내부고발의 늪”』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4일자 22:25)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의 교사가 현장학습 중 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고 인격을 모독한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KBS미디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추적60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 [KBS미디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종료 후에 이어서 게시하여 조정대상보도가 검색되는 한 함께 나타나도록 함
이행결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그들은 곧 돌아온다” 아동성범죄 피해자 긴급 설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4일자 22:25)

2013서울조정1659~166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강○○ (병합)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군산경찰서 한 간부의 수상한 명예퇴직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12A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군산경찰서 한 간부의 수상한 명예퇴직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군산경찰서 간부인 신청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무마한 의혹이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에게 납품압력을 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p>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의 작성 근거가 된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증언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해명을 기사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재부의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p> <p>※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에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 섹션 내 사회섹션 내 지역소식 코너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p>

2013서울조정1661~1667 (매체별 손해청구) 박○○ 對 뉴스 코리아 ⁽¹⁶⁶¹⁾ , 동아닷컴 ⁽¹⁶⁶²⁾ , 인터넷 서울신문 ⁽¹⁶⁶³⁾ , 세계닷컴 ⁽¹⁶⁶⁴⁾ , 아시아경제닷컴 ⁽¹⁶⁶⁵⁾ , 온라인 중앙일보 ⁽¹⁶⁶⁶⁾ , 조선닷컴 ⁽¹⁶⁶⁷⁾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코리아 : 『‘화성인’ 귀족녀, 남친에 복수하다 형사처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7일자) • 동아닷컴 : 『[휴지통]방송 화제 ‘CEO 귀족녀’의 파혼 복수극』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화성인 귀족녀’, 파혼 남친에게 복수하다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세계닷컴 : 『‘화성인’ CEO 귀족녀, 파혼 남친 집·차에 낙서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사회] CEO 귀족녀, 파혼 남친에 복수하다 형사처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여성 사업가, 파혼한 의사 남친에 복수하다 형사처벌...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조선닷컴 : 『‘화성인’ 출연 ‘CEO 귀족녀’, 파혼 전남친에 대한 복수극 형사처벌로 막 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남자친구간 진행중인 소송사건에서 신청인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부산조정58~59 (매체별 손해청구) 조○○ 對 KNN, iKNN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N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부산시체육회 비리 의혹 ‘질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4일자 20:25) • iKNN : 『부산시의회, 체육회 의혹 질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부산시 체육회 복싱팀 감독인 신청인이 폭행혐의로 입건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3경남조정60~6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안○○ 對 주간남해뉴스, 인터넷 남해뉴스	
조 정 대 상	『○○가요제, 나이롱 경품추첨 말썬』 제하의 기사 (주간남해뉴스 2013년 10월 29일자 1면, 인터넷 남해뉴스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품추첨을 진행하면서, 1등 당첨번호를 반복하고 다른 사람을 당첨자로 하는 등 엉터리 추첨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남해뉴스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가요제, 나이롱 경품추첨 말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남해뉴스 2013년 12월 11일자 1면, 인터넷 남해뉴스 12월 9일자)
2013경기조정175~176 (정정·손배청구) 1. 성남시, 2. 이재명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성남시의회 의정연수에 참석해 발렌타인 21년산 21병을 선물하고 건배 제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668~1669 (매체별 정정청구) 허○○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순천 ‘제1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13A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인 신청인이 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교체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부 관할 변경 (서울→광주))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국일보 : 『“순천 ‘제1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670~1671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평북민보	
조 정 대 상	『“자기 얼굴에 스스로 자기가 침을 뱉는 격”』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2면)
신청인주장	2012년 말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인 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옥지구 폐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감사 3인, “총회에서 ‘군옥지구 폐쇄’ 논의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5일자 2면)

2013서울조정1672~1673 (정정·손배청구) 최민희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식품원 원장, 소관기관에 “성추행 아냐” 확인받아>(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 당시 식품연구원 윤 모 원장에 대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폭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기조정177~17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일보 : 『농어촌공 경기본부 ‘거짓 농활’ 술 파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1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단독]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거짓 농촌봉사활동’ 술 파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농어촌공사가 평일 정상업무시간에 농촌봉사활동이라는 거짓명목을 내세워 술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위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일보 : 『 ‘농어촌공 경기본부, 거짓 농촌봉사활동 술 파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2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농어촌공 경기본부, 거짓 농촌봉사활동 술 파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2013경기조정179~18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전국축구연합회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일보 : 『무성의 식단·난민촌 같은 잠자리... “코치님, 한국은 가난한 나라인가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3면), (2) 『“아시아 ○○○ 축구축제 운영 미숙 사실로 드러날 땐 경고 등 행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1) 『“아시아 ○○○ 축구축제” 미숙한 대회 운영 국제적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9일자), (2) 『“아시아 ○○○ 축구축제 운영 미숙 사실로 드러날 땐 경고 등 행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아시아유소년축구축제를 주최하면서 미숙한 대회준비와 운영으로 인해 참가자들로부터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인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일보 : 『“2013년 아시아 ○○○ 축구축제”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23면) • 인터넷 경인일보 : 『“2013년 아시아 ○○○ 축구축제”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2013서울조정1674~1675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신○○ 외 2인 對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	
조 정 대 상	『범인 ‘만들어낸’ 경찰 조서』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3년 9월 2일자 58~63면, 인터넷 한겨레21 8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들이 신청인들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무고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범으로 구속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21에 반론보도] 한겨레21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직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인터넷 한겨레21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21 : 『범인 만들어낸 경찰 조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자 8면) • 인터넷 한겨레21 : 『범인 만들어낸 경찰 조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8일자)
2013서울조정1676, 168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민건강보험공단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1) 『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年 5,075억 ‘평평’』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A01면), (2) 『법인카드 1인 사용액 3,360만 원… 월급 뺀 유학비 1억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A04면) • 동아닷컴 : 『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年 5,075억 ‘평평’』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간접복지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동아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국민생활체육회-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카드 관련 정정·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1일자 29면)
2013서울조정1677~168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구○○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아파트 어린이집이 뭐길래…억대 이권 ‘치열한 입점 경쟁’』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5일자 19:55) • iMBC : 『아파트 어린이집이 뭐길래…억대 이권 ‘치열한 입점 경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수원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입점경쟁과 관련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전경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iMBC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81~1682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 『사고 헬기, 227억 보험 가입… 市, 주내 아파트 안전진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5면) • 조선닷컴 : 『[헬기, 강남 아파트 충돌]사고 헬기, 227억 보험 가입… 市, 주내 아파트 안전진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헬기사고가 난 아파트의 20층 주민인 신청인이 강남구에 불안을 호소하며 억지로 호텔객실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조선닷컴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683~168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대한○○회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마약’ 동물마취제…약국서 판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8일자 20:00) • 인터넷 MBN : 『[단독]사람잡는 동물마취제…약국서 버젓이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동물용 마취제가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약국에서 아무런 원칙 없이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굿모닝 MBN 프로그램 『“동물마취제, 안전하게 취급 노력”』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6일자 07:00) • 인터넷 MBN : 『약사회 “동물마취제, 안전하게 취급 노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686~1691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네트웍스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철도 마피아에 일감 몰아준 철도공단”』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10월 25일자 12면, 온라인 중앙일보 10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보안장비 등을 설치·공급하는 회사인 신청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CTV 사업을 독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섹션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철도 마피아에 일감 몰아준 철도공단”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2013서울조정1692~1697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PD저널, 인터넷 PD저널	
조 정 대 상	『PD 출신 첫 사장의 선택, ‘땡박뉴스’』 제하의 기사 (PD저널 2013년 11월 20일자 3면, 인터넷 PD저널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지난 해 11월 대선후보 인물 검증 프로그램을 방송 하루 전날 ‘불방조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PD저널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미디어뉴스 섹션에 반론보도문을 1주일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PD 출신 첫 사장의 선택, 땡박뉴스』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PD저널 2013년 12월 18일자 2면, 인터넷 PD저널 12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698~1703	(매체별 정정청구) (사)국민생활체육회 對 동아일보 ⁽¹⁶⁹⁸⁾ , 동아닷컴 ^(1699, 1698과 병합) , 채널A ^(1700, 1698과 병합) , 인터넷 채널A ^(1701, 1698과 병합) , TV조선 ⁽¹⁷⁰²⁾ , 인터넷 TV조선 ^(1703, 1702와 병합)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동아닷컴 : (1) 『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年 5,075억 ‘핑핑’』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1일자 A01면, 동아닷컴 11월 21일자) (2) 『법인카드 1인 사용액 3,360만 원… 월급 뱅 유학비 1억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1일자 4면, 인터넷 동아일보 11월 21일자) (3) 『홍청망청 법인카드 방치하면 ‘파티’는 계속된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2일자 A31면, 동아닷컴 11월 22일자) • 채널A : (1)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신의 직장’ 직원 지원금 1조』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07:00) (2) 뉴스 10 프로그램 『‘신의 직장’ 직원 지원금 1조』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0:00) (3) 뉴스특보 프로그램 『‘복지 천국’ 공공기관 지원금 1조 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3:00) • 인터넷 채널A : (1) 『[아침뉴스] ‘신의 직장’ 공공기관, 각종 직원 지원금 1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 『[뉴스 10] 과연 ‘신의 직장’…공공기관들 직원 지원금만 1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3) 『[뉴스특보] ‘복지 천국’ 공공기관, 각종 직원 지원금 1조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TV조선 : 뉴스특보 프로그램 『방만경영 ‘상상초월’』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2:00) • 인터넷 TV조선 : 『법인카드 쌈짓돈처럼 쓰고 수백만 원 복지포인트 뿌리고… 방만 경영 ‘상상초월’』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p>신청인 단체의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간접복지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p>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동아닷컴·채널A·인터넷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동아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동아닷컴 기사삭제, 채널A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채널A 기사삭제, 부제소) • TV조선·인터넷 TV조선 : 조정성립 (내용 : TV조선 반론 및 후속보도, 인터넷 TV조선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동아일보·동아닷컴·채널A·인터넷 채널A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제휴관계에 있는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포털사를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동아일보·동아닷컴·채널A·인터넷 채널A : [채널A에 정정 및 반론보도] <채널 A 아침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 TV조선·인터넷 TV조선 : <뉴스특보>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및 후속보도,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동아닷컴 : 『국민생활체육회-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카드 관련 정정·반론』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2월 11일자 29면, 동아닷컴 12월 11일자) • 채널A :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국민생활체육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1일자 08:10) • TV조선 : 뉴스특보 프로그램 『국민생활체육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1일자 11:39)

2013서울조정1704~17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이○○ 對 인터넷 채널A, 채널A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채널A :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94회 (유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3일자) • 채널A :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94회 - 녹차 안 먹은 녹차 먹인 돼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3:00)
신청인주장	정육점 소매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이 '녹차 먹인 돼지'가 사실은 녹차를 먹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보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광주조정74~75 (매체별 반론청구) 허○○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순천 '재'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13A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인 신청인이 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교체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 취하 (사유 : 인터넷 한국일보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지역소식)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순천 '재'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2013서울조정1708~1709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MBN 뉴스8 프로그램 『'무연 담배' 몸에 덜 해롭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5일자 20:00) • 인터넷 MBN : 『티백 모양 신종 담배, 몸에 덜 해롭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무연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수입·유통하는 제품을 화면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MBN에 PR보도] 조정사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아침뉴스 시간에 신청인 회사의 마케팅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되, 보도전날 신청인 회사에 보도 사실을 우선으로 통보함. 홈페이지 사회면에 관련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굿모닝 MBN 프로그램 『간접흡연 피해 줄이는 담배 화제』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8일자 07:00) • 인터넷 MBN : 『간접흡연 피해 줄이는 담배 화제』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8일자)

2013서울조정1710 (손배청구) 박○○ 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무연 담배' 몸에 덜 해롭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5일자 20:00)
신청인주장	무연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무연담배 수입·유통 회사직원인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711 (정정청구) (주)○○○월드 對 엔디엔뉴스	
조 정 대 상	『○○○월드의 의심스런 ‘○○○○○○ 콘도’ 인수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휴양 시설(콘도)을 경영권을 인수한 것을 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기사] ○○○월드의 의심스런 ○○○○○○ 인수주장의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2013서울조정1712~1713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뉴스에이	
조 정 대 상	(1) 『[사회] 동성애자 이○○씨는 과연 성추행범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2) 『[사회] ○○○○○○○교회에 “후장을 노리는 호모들의 모임” 카페 개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시민기자인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해킹으로 변조되는 바람에 내용이 왜곡되는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부산조정60~63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고등학교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성적 조작 고교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6면, 인터넷 부산일보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3부산조정64~67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한○○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 『성적 조작 고교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6면) • 인터넷 부산일보 : 『성적 조작 고교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감 직무 대행 당시, 수업을 다른 교사에게 맡긴 뒤 자신이 수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산일보에 정정보도, 인터넷 부산일보 기사수정) ※ 이행방법 : [인터넷 부산일보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중 특정 문구를 삭제함
이 행 결 과	• 부산일보 : 『‘A고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7일자 10면)
2013서울조정1714~171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사회복지법인 ○○○○전우회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방위사업청, 비리 처벌 군납업체와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12면, 인터넷 동아일보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방위사업청과 군수의류 납품계약을 맺은 신청인 단체가 뇌물비리로 납품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18~1719 (정정·반론청구) ○○종합개발 주식회사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1부) 프로그램 『YTN현장24 - 호화 골프장에 훼손된 선산...후손들 '한숨만』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7일자 04:4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영월 엄씨 종친회의 선산과 봉분을 훼손하면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대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을 어기고 호텔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반론보도] <뉴스출발 1부> 프로그램 종료 직전에 반론보도,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과 함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하단에 계속 표시함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인터넷 YTN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뉴스출발 (1부) 프로그램 『『호화 골프장에 훼손된 선산』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04:40)
2013서울조정1720 (정정청구) ○○대학교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경기도 대학 3곳 교육부 감사 미이행 입학정원 감축』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 “법원, 교육부 입학정원 감축 가처분 인용”』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9일자)
2013경기조정181~182 (매체별 정정청구) ○○대학교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 『내년 △△대 신입생 입학정원 5% 축소...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교육부 지시사항 콧방귀 뀌던 대학들 결국...』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교육부 ‘○○대, 입학정원 5% 감축 행정처분’ 행정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정지”』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12월 10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2월 10일자)

2013대전조정72~7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 對 대전일보, 인터넷 대전일보	
조정대상	『산림관리 공공근로 인력 사적 동원 논란』 제하의 기사 (대전일보 2013년 11월 4일자 16면, 인터넷 대전일보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부여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조장인 신청인이 조원들에게 사적으로 동원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대전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행결과	『산림관리공공근로 인력 사적동원 관련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2면, 인터넷 대전일보 12월 16일자)
2013대전조정74~75 (정정·반론청구) 이○○ 對 CTN	
조정대상	『대전 ○○○고, 권력남용 영양사 ‘숨방망이 처벌’ 논란 - 행정실장 ‘중징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의 권력 남용으로 조리원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3서울조정1721~1722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뉴스토마토	
조정대상	『“○○○” 블랙박스 시장 미스터리한 ‘1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자사의 자동차용 블랙박스 제품이 ‘업계 판매 1위’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수치나 근거가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주) 블랙박스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2013서울조정1723~1724 (정정·손배청구) ○○개똥쑥산업협회 對 채널A	
조정대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91회 - 개똥쑥, 기적의 함양 약초인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일자 23:00)
신청인주장	개똥쑥이 아닌 다른 풀의 복용자 사례를 개똥쑥 부작용 사례라고 보도해 개똥쑥 재배 농민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 단체의 경우 비법인 사단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기사 그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도에서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조정대상보도의 당사자로서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없다)

2013서울조정1725 (정정청구) 문화재청 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송례문 소방시설 ‘엉망’』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0일자 20:00)
신청인주장	방화로 소실되었던 송례문이 복원되었으나 복원과정에 소방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화재 대비에 미흡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MBN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MBN에 반론보도] <MBN 뉴스8> 프로그램의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함 [인터넷 MBN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다만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 『MBN 뉴스8 프로그램 『송례문 소방시설 미흡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0일자 20:00) • 인터넷 MBN : 『송례문 소방시설 미흡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726~17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한국○○○○협회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신문 안보는데, 조중동 유료부수는 왜 그대로?』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3년 11월 2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문독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일간지의 유료 인증부수는 감소하지 않는 등 한국ABC협회의 일간지 유료부수 인증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오늘 : 『한국○○○○협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5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반론보도문] ‘신문 안보는데, 조중동 유료부수는 왜 그대로?’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2013부산조정68~6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울산광역시 북구청 對 경상일보, 인터넷 경상일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일보 : 『북구청 직원용 고가의류 편법구매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9일자 1면) • 인터넷 경상일보 : 『울산 북구청 직원용 고가의류 편법구매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울산 북구청이 예산부족으로 소나무고사목을 제거하지 못하고 재선충병을 확산시켜 정부로부터 산림사업 일부 제한 등의 벌칙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벌칙을 받은 바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경상일보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경상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인터넷 경상일보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중 특정 문구를 삭제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일보 :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0일자 2면)

2013서울조정1728 (매체별 손해청구) 천○○ 對 채널A	
조정대상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1일자 21:50, 7월 25일자 00:10, 7월 27일자 11:20, 7월 30일자 02:20, 8월 2일자 13:00)
신청인주장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0만 원,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초상권 침해 문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다운받아 배포할 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함.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통지나 삭제를 요청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배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함
2013서울조정1729~1730 (매체별 손해청구) 천○○ 외 2인 對 리얼TV, 디원TV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얼TV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0일자 02:35, 16:25, 23:50, 9월 18일자 02:30, 09:20, 15:50, 11월 12일자 09:05, 16:15, 23:25) 디원TV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8일자, 12월 3일자)
신청인주장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얼TV·디원TV : [기사수정]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함
2013서울조정1731~173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사단법인 ○○○○○○회, 2. 송○○ 對 아시아일보,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정대상	『“○○○○○○지회 관변단체 전락”』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2가 지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신청인 1의 대표가 되면서 지역의 мем건립찬성을 주도하는 등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 : [인터넷 아시아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의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함</p>
이행결과	『“○○○○○○지회 관변단체 전락”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3년 12월 20일자 2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12월 19일자)

2013경기조정183 (정정청구) 임수경 對 뉴스크	
조 정 대 상	『임수경 패소, 재판부 “김일성 주석 ‘아버지’ 발언” 인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임수경 패소, ‘재판부 김일성 주석 아버지 발언 인정’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국립현대미술관 對 시사IN	
조 정 대 상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60~62면)
신청인주장	국립현대미술관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특정 화백들의 작품을 서울관 개관전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청와대 외압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8일자 9면)

2013광주조정76 (손배청구) 김○○ 對 광주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복지 사각지대 소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공근로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기사삭제]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KBS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 보도를 삭제함

2013서울조정1734~1735 (정정·손배청구) (주)○○○○○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월회비 150만 원’ ○○○○○ 아동 폭력사건 뒷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아동 간 폭력사고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가해아동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2013충북조정36~37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이○○ 對 중부매일,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전횡 ‘논란’』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3년 11월 27일자 5면, 인터넷 중부매일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매일에 반론보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전횡 ‘논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3년 12월 23일자 5면, 인터넷 중부매일 12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736~173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박○○, 2. 서○○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 (1) 『상아탑의 파벌싸움, 세계 정상급 테너 교수영입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A12면), (2) 『파벌싸움’ ○○대 성악과 또 교수 임용 갈등』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A10면) • 동아닷컴 : 『[단독] 상아탑의 파벌싸움, 세계 정상급 테너 교수영입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2) 『파벌싸움’ ○○대 성악과 또 교수 임용 갈등』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성악과 교수인 신청인들이 파벌싸움으로 세계 정상급 테너를 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 성악과 교수 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2월 26일자 12면, 동아닷컴 12월 26일자)
2013경기조정184~18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행(주) 對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S경인TV : OBS 뉴스 M 프로그램 『뉴스 M 포커스』 열차 티켓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4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수상한’ 열차 티켓…발매 즉시 매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코레일로부터 철도여행상품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OBS경인TV에 반론보도] <OBS 뉴스 M>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반론보도 [인터넷 OBS경인TV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S경인TV : 뉴스 M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9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코레일 특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738~173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2. 이○○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 조합 ‘세입자 내쫓기’ 계약 맺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1월 28일자 16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법을 어겨가며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를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사회섹션 내 지역 코너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당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조합 계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2월 27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740~1741, 1798~1799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강○○ 對 데일리 위기관리경영
조 정 대 상	(1) 『위기관리경영 소방방재청, R&D사업과 학위취득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2) 『위기관리경영 소방방재청, R&D사업과 학위취득 의혹? 두 번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박사학위 취득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박사학위심사위원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첫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72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現 한국방재협회 회장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2013서울조정1742~1743		(정정·손배청구) (주)○○○○○○○ 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짜퉁부품으로 시속300km 달린 KTX』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제품을 짜퉁 부품이라고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공문발송,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소유 공장 및 부품과 관련한 영상을 DB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여 향후 해당 영상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744~174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철거왕’ 경찰 수사 때 … 간부, 후배 불러 “이○○ 봐 달라”』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12월 5일자 12면, 온라인 중앙일보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횡령혐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등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3서울조정1746~1747 (정정·손배청구) 이○○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내 여동생이랑 누나 몰래 찍었는데, 좀 볼래?”…○○, 가족 성노리개 인증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연인이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게재한 이후로 수개월이 지나서 해당 사진이 신청인 가족에 의해 몰래 촬영된 사진인 것처럼 기사화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748~1749 (정정·손배청구) 박○○ 對 YTN	
조 정 대 상	(1) 뉴스 Q (1부) 프로그램 『의료기기 리베이트 챙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6:00) (2) 뉴스 Q (2부) 프로그램 『의료기기 리베이트 챙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7:00) (3) 뉴스만만 (1부) 프로그램 『78억 리베이트…유흥·외제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0:00) (4) 뉴스만만 (2부) 프로그램 『78억 리베이트…유흥·외제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1:00)
신청인주장	병원장인 신청인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유흥과 외제차 구입같은 호화생활에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제주조정2~3 (정정·손배청구) 한동주 對 제주의소리	
조 정 대 상	(1) 『한동주 시장, 우근민 제주지사 노골적 지지유도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2) 『내가 당선되면 너는 시장 더해, 거래하고 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3) 『한동주, 우지사지지 발언 반나절 만에 ‘직위해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4) 『선관위, 한동주 선거법위반 조사...“소환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5) 『한동주 후폭풍 확산...몸통 우근민 지사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6) 『시장이 ‘학연’ 이용 서귀포사회 분열, 갈등 조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7) 『드디어 입 연 우근민 “공무원 중립 훼손 도민께 송구”』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8) 『선거 거래설 파문 한동주 시장 무슨 말 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9) 『10개월짜리 시장? 수군거릴 분위기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서귀포시 시장이었던 신청인이 우근민 제주 지사를 노골적으로 지지 유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50~1751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도서출판 ○○○○ 對 EBS-TV	
조 정 대 상	EBS 뉴스 프로그램 『교육청 추천도서?·알고 보니 거짓』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7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가 발간한 도서가 서울시 교육청의 추천도서가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EBS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EBS 뉴스 프로그램 『교육청 추천도서’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17일자 20:00)

2013서울조정1752~1753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 사장에게 직언했던 직원 ‘해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직원이 사장에게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결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미디어스에 반론보도를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반론 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직원 해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5일자)
2013경기조정188~191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고등학교 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찜질방 전전... “퇴사조치 부당” 반발』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1월 14일자 23면, 인터넷 경기신문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자율학습시간에 음악을 들은 여학생을 기숙사에서 쫓아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찜질방 전전... “퇴사조치 부당” 반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2월 23일자 23면, 인터넷 경기신문 12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754~17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직업전문학교 對 TIN뉴스 ⁽¹⁷⁵⁴⁾ , 인터넷 TIN뉴스 ^(1755, 1754와 병합) , 코리아패션뉴스 ^(1756, 1754와 병합)	
조 정 대 상	• TIN뉴스 : 『비싼 입학금과 학비만 받으면 끝? 입학생이 봉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11면) • 인터넷 TIN뉴스 : 『패션 전문학교 입학생이 봉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일자) • 코리아패션뉴스 : 『비싼 입학금과 학비만 받으면 끝? 입학생이 봉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과목 부족으로 타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채워야만 졸업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TIN뉴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코리아패션뉴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TIN뉴스 : 『『○○○○○○○○○직업전문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21면) • 인터넷 TIN뉴스 : 『『○○○○○○○○○직업전문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 코리아패션뉴스 : 『『○○○○○○○○○직업전문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757 (정정청구) 서영교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1) 『공식회의장서 “닥쳐” 부끄러운 막말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A1면) (2) 『“돼지 눈엔 돼지만” “뚝 건방지게” ... ‘거친 입’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A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막말 국회의원 1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동아닷컴에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서영교 “국회의원 발언 공개되기 마련 좋은 언어 써야 한다는 데 공감”』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5일자)
2013경기조정192~19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주)○○○○○ 對 연수신문,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조 정 대 상	『상수도사업본부 토지 ‘임대계약서’ 논란』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3년 7월 24일자 1면,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2013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편법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50~1761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한○○ 對 조선닷컴, 티브이데일리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 정○○ 결혼, 예비신부 뒷모습 공개 “척 보니 미인이겠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 티브이데일리 : 『정○○ 결혼, 예비신부 뒷모습만 봐도 미인 예감? 과거 방송 ‘눈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가수와 결혼할 예비 신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티브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정정보도] 홈페이지 연례섹션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 티브이데일리 : [정정보도] 홈페이지 주요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 정○○ 예비신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 티브이데일리 : 『○○ 정○○ 예비신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2013광주조정77 (정정청구) 허남석 對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허남석 곡성군수, 사전 선거운동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군수인 신청인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762		(반론청구) 서울시○○구○○○○공단노동조합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공기업마저 ‘노조 탄압 시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사측의 어용노조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사회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구○○○○공단노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763		(정정청구) 정○○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월회비 150만 원’ ○○○○○ 아동 폭력사건 뒷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의 한 지점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1주일간 게재 후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삭제하여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교육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764		(손배청구) 1. (사)대한○○○○협회, 2. 표○○ 對 인터넷 국토일보
조 정 대 상	『진정한 勝者は 누구인가 !』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 협회의 회장인 신청인 2가 선거 과정에서 마치 대의원들과 부정한 결탁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 기타 합의사항 [국토일보에 정정보도] 국토일보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해당 신문은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신청인 회원들(약 250명)에게 피신청인 부담으로 배포함 [코스카저널에 정정보도] 신청인 단체가 운영하는 코스카저널에 정정보도문을 전재하여 편집, 발행, 배포하는 데 동의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뉴스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정정보도문은 1주일간 게재 후, DB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토일보 · 국토일보 : 『대한○○○○협회 중앙회장 선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국토일보 2014년 1월 20일자, 국토일보 1월 20일자 1면) 	

2013서울조정1765 (정정청구) 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뉴스쇼 판 프로그램 『[TV조선 단독] 카메룬 도피 ‘○○○ 핵심’ 영상』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7일자 21:40)
신청인주장	본인이 소액주주로 있는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는 신청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사항이 언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도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3서울조정1766~1767 (정정 · 손해청구) 1. 최○○, 2.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新풍속도.. 월세살며 벤츠탄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30일자 19:55)
신청인주장	젊은 세대의 新소비풍속도를 전하면서, 신청인들이 월세를 살면서 빚을 내어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신청인별 각 손해배상 2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니며 인터뷰에 응한 신청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의 불만제기 후에 iMBC 및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를 삭제하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2013서울조정1768 (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644회 - 낚새 맡는 犬 [영애]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8일자 09:25)
신청인주장	TV 예능프로그램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769 (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644회 - 낚새 맡는 犬 [영애]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8일자 09:25)
신청인주장	TV 예능프로그램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770 (정정청구) 구○○ 외 27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91회 - 개똥썩, 기적의 향암 약초인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일자 23:00)
신청인주장	개똥썩이 아닌 다른 풀의 복용자 사례를 개똥썩 부작용 사례라고 보도해 개똥썩 재배 농민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인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71~177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경찰청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저널 : 『[단독보도]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 소나무 썼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20~24면) • 인터넷 시사저널 : 『[단독]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 소나무 썼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송례문 복원 공사에 러시아산 수입목재가 사용되었다는 의혹건과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준 바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에 반론보도] 시사저널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저널 :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35면) • 인터넷 시사저널 :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2013전북조정38~39 (정정·손배청구) 1. 대한○○○○협회 ○○○○회, 2. 신○○ 對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 파행운영... 회원사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1면) (2) 『○○협 ○○○회 회장직 ‘사고 파나?’』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차기 회장 선거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파행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773~1774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81회 - 수상한 법인카드』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8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회원들이 가족들을 동반하여 해외 연수를 갔으며, 매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눈먼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iMBC 홈페이지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화면 하단에 48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 iMBC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775 (정정청구) 장○○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大 ‘시험의 神’ 비법은 교수실 문제 도둑질』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A12면)
신청인주장	모 대학 수의학과생 시험 부정행위 적발건과 관련해 신청인도 공범인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A10면)

2013서울조정1776~1777 (정정·손배청구) ○○○○○○○○○○○모임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대선전 보수단체 국가지원금, SNS 여론조작에 사용됐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념 편향적인 단체로 국가 보조금을 편중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78 (정정청구) 김○○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조폭 두목 조양은 필리핀서 검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폭력조직인 양은이파의 간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79~1783 (매체별 추후청구) ○○수산(주) 對 연합뉴스 ⁽¹⁷⁷⁹⁾ , 한경닷컴 ⁽¹⁷⁸⁰⁾ , NSP통신 ⁽¹⁷⁸¹⁾ , 쿠키뉴스 ⁽¹⁷⁸²⁾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¹⁷⁸³⁾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로 만든 가공식품 적발·회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한경닷컴 : 『○○수산 고등어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 NSP통신 : 『유통기한 지난 제품사용 고등어 가공품 제조판매 ‘물상식’ 식품업체 식약청에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쿠키뉴스 : 『○○수산,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재포장해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 『○○○ 다시마 간고등어 등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사용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유통한 것으로 적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은 받았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한경닷컴 · NSP통신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쿠키뉴스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 『○○수산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식품 판매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 한경닷컴 : 『○○수산(주)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사용은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 NSP통신 : 『○○수산,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식품 판매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2013대구조정48 (정정청구) 박○○ 對 대구KBS-1TV	
조 정 대 상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4회 - ○○학원의 파행』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0일자 19:30)
신청인주장	학원 이사회의 파행 원인이 전임 이사인 신청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84 (정정청구) ○○대학교병원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이○○ 회장 수술 ○○대병원 의사 환자 사망 의료과실로 2억대 배상』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14면)
신청인주장	대기업 그룹 회장 수술을 집도했던 신청인 병원 의사가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동아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병원 의료과실’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4일자)
2013서울조정1785 (손배청구) 최○○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졸업 미룬다고? 60만 원 내라” 취업난 학생에 甲질하는 대학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취직을 못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786~1787 (정정·손배청구) (주)한국○○○○○○사업단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아역배우’로 키워주겠다더니...』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5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아역배우로 키워 준다고 계약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88~1794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TV조선 ^(1788-1789 정정·손배청구) , MBN ^(1790-1792 정정·반론·손배청구) , 세계닷컴 ^(1793-1794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TV조선 뉴스9 프로그램 『‘철도 마피아 폭주’... 기관사가 파업 주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08:50)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철도 마피아’ 폭주... 그들은 누구』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20:00) • 세계닷컴 : 『대화 귀담은 政 VS 조합비 막강 勞... ‘파국열차』』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모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 출신 기관사들로 구성된 속칭 ‘철도마피아’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MBN · 세계닷컴 : 각 취하 ※ 이행방법 • TV조선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TV조선 뉴스 9>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 TV조선 뉴스9 프로그램 『철도노조 “철도고·철도대 출신 파업참가 10% 미만』』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2일자 08:50)

2013서울조정1795~179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평택시청 對 KBS-1TV, KBS미디어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1) 취재파일 K 프로그램 『[기자가 간다]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22:50), (2) 뉴스 토크 프로그램 『[오늘의 현장]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6일자 15:00) • KBS미디어 : (1) 『[기자가 간다]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기사(2013년 12월 13일자), (2) 『[오늘의 현장]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평택시가 추진하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미디어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KBS-TV에 반론보도] <취재파일 K>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원문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KBS미디어 기사수정]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의 <취재파일 K> 및 <뉴스토크> VOD의 말미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삽입함</p>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 취재파일 K 프로그램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1일자 22:50)

2013광주조정78 (정정청구) 1. (주)○○○○○특화시장, 2. 장○○ 對 KBC-TV	
조정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BC 저녁뉴스 프로그램 『○○○○○특화시장 운영싸고 갈등』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7:15) (2) KBC 뉴스 8 프로그램 『○○○○○특화시장 상가 무단전대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6일자 20:35) (3) KBC 뉴스 8 프로그램 『○○시 아케이드 상가 특혜성 지원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9일자 20:35) (4) KBC 뉴스 8 프로그램 『아케이드, 주식 매개로 한 불법 분양』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일자 20:35) (5) KBC 뉴스 8 프로그램 『○○○○○특화시장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20:3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상가를 무단 전대한 의혹 등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97 (손배청구) 이○○ 對 KBS-2TV	
조정대상	VJ특공대 프로그램 『695회 - 추울수록 대박! 겨울 특수를 잡아라!』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0일자 22:00)
신청인주장	공장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해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800~180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대학교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정 대상	(1) 『대학이 학생회장 자격제한 못한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1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13일자) (2) 『[단독] 귀막은 ○○대...판결 무시하고 징계 학생 출마 또 막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1월 22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법원이 총학생회장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신청인 대학의 학칙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1월 13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802~1804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머니투데이	
조정 대상	(1) 『KBS, “스마트폰·PC도 수신료”』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2면) (2) 『스마트폰 수신료 불발 KBS 9시뉴스서 거짓말보도 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0일자 2면) (3) 『영세상인·기업 1兆 ‘수신료 폭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1일자 1면)
신청인주장	KBS가 스마트폰, PC 등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인 제안일 뿐이나, 마치 해당 사안에 대해 거짓보도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e머니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e머니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해당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행 결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4년 2월 14일자 2면, e머니투데이 2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805~1806 (매체별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회 對 노컷뉴스, 경향신문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컷뉴스 : 『엄마 노점 때려 부순 용역... 알고보니 같은 반 친구』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 경향신문 : 『“노점 철거 용역에 고교생 알바”』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동원한 노점철거 용역직원 중에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 결과	각 취하

제 2 장 :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3서울중재1~2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박○○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중 재 대 상	『감옥서 18개월 기른 둘째와 헤어지던 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못한 엄마 되지말자고』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14일자 11면, 조선닷컴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여성 재소자인 신청인이 수감 중 출산한 자녀를 친정으로 보낸 사연을 보도하면서 자녀이름 등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2013서울중재3~4		(정정 · 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디지털강서양천일보
중 재 대 상	『양천시설관리공단, 부당하고 · 모해위증 ‘소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치색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1개월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양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2013서울중재5~6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장○○ 對 이데일리(신문), 이데일리(인터넷)
중 재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데일리(신문) : 『야후의 쓴소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7일자 1면) • 이데일리(인터넷) : 『“韓 소비자 지나치게 까다롭다”...야후 前 임직원 작심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왜곡 편집하여 기사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화해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7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중 재 대 상	『블랙아웃 사고낸 KBS경인방송, ‘1년’ 재허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경인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 블랙아웃 사고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미디어뉴스면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블랙아웃 사고낸 KBS경인방송, 1년 재허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2013서울중재8 (반론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중 재 대 상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내쫓는 4대강사업 막읍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흑두루미 도래지인 해평습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강정생태하천이 대학교수인 신청인의 자문에 따라 조성된 곳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낙동강 해평습지 대체 생태하천 자문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2013서울중재9~11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네이버⁽⁹⁾, 다음⁽¹⁰⁾, 네이트⁽¹¹⁾	
중 재 대 상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피해구제보도’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지인 돈 뜯은 경찰’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중재12~13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네이버, 다음
중재대상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기재 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기재 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피해구제보도'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추후 보도문』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 다음 : 『추후 보도문』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2013서울중재14~16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네이버 ⁽¹⁴⁾ , 다음 ⁽¹⁵⁾ , 네이트 ⁽¹⁶⁾
중재대상	『조폭 동원하고... 뺑소니 무마하고...』 돈 뜯어낸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뉴스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뉴스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뉴스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뉴스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피해구제보도'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뉴스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뉴스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돈 뜯은 경찰]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중재17~2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고○○, 2. 최○○ 對 네이버, 다음	
중재대상	『‘대낮 폭행신고’... ○○○시청 기자실에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들이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 등을 하여 기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이행결과	『○○○시청 기자실 폭행 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중재21~24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인터넷 MBN ⁽²¹⁾ , 네이버 ⁽²²⁾ , 네이트 ⁽²³⁾ , 동아닷컴 ⁽²⁴⁾	
중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경찰 진화 나서』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네이버 2011년 5월 30일자, 네이트 5월 31일자) • 동아닷컴 :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동아닷컴 :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 기타 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동아닷컴 : [추후보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이상 게재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 기사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 동아닷컴 :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일자)

2013서울중재25~26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다음, 네이버
중재대상	『○○○ 주가조작』 김○○ 전 대사 구속 방침』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한 신청인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발표 직전에 친인척 명의로 회사주식을 사들여 수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로부터 전송받은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미디어 다음>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함께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 네이버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로부터 전송받은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네이버 뉴스>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함께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이행결과	『[알려왔습니다]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2013서울중재27		(반론청구) ○○상조○○○(주) 對 조선비즈닷컴
중재대상	『선수금 속이고 피해보험계약 건너뛴 상조업체 3개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처리결과	<p>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p> <p>※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책분석섹션 중 산업·통상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p>	
이행결과	『‘○○상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서울중재28~29, 36~3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 지주단체 對 네이트,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중재대상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니 코레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대해 무리한 지원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기타 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네이트 등 중재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중재대상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네이트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인터넷 아주경제))로부터 전송받은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 게재함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반론보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섹션(뉴스(한국어))부동산)교통)에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게재하되, 기사순서는 최초에는 위에서 첫 번째에 등재하고 새로운 다른 기사 업데이트에 따라 차례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함 	
이행결과	『(반론보도문) ‘기차여행 B카페의 금품수수 및 무리한 협조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2013서울중재30~35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엄○○ 對 YTN ^(30~31) , 인터넷 YTN ^(32~33) , 뉴스1 코리아 ^(34~35)	
중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1) 뉴스오늘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7:58) (2) 뉴스오늘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8:58) (3) 뉴스현장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0:58) (4) 뉴스12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1:58) (5) 뉴스&이슈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2:58) (6) 뉴스&이슈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3:58) • 인터넷 YTN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 뉴스1 코리아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냐”』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의붓딸이 신청인한테 성폭행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인터넷 YTN :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 뉴스1 코리아 :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YTN24>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또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함 • 인터넷 YTN :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 보도문을 1개월 이상 게시함, 또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YTN의 중재 대상보도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함 • 뉴스1 코리아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 : YTN24 프로그램 『‘10대 의붓딸 성폭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7일자 20:58) • 인터넷 YTN : 『‘10대 의붓딸 성폭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 뉴스1 코리아 :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013서울중재38~4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對 네이버 ⁽³⁸⁻³⁹⁾ , 네이트 ⁽⁴⁰⁻⁴¹⁾ , 다음 ⁽⁴²⁻⁴³⁾
중재대상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경의선 서강역의 명칭을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 받은 정정보도문을 뉴스 홈의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년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 받은 정정보도문을 뉴스 홈의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년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 받은 정정보도문을 뉴스 홈의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년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함 	
이행결과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서울중재44~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네이버, 다음
중재대상	『[집중취재]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एं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든 오존살균기가 제 역할을 못할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기 까지 하는 엔터리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뉴스>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년에 반론 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미디어 다음>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년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एं터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네이버 2013년 4월 8일자, 다음 4월 9일자)	
2013서울중재48~75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주)○○○○○○○ 對 뉴시스 ⁽⁴⁸⁻⁴⁹⁾ , 연합뉴스 ⁽⁵⁰⁻⁵¹⁾ , 뉴스1 코리아 ⁽⁵²⁻⁵³⁾ , 디지털 세상신문 ⁽⁵⁴⁻⁵⁵⁾ , 스타뉴스 ⁽⁵⁶⁻⁵⁷⁾ , 미디어스 ⁽⁵⁸⁻⁵⁹⁾ , 노컷뉴스 ⁽⁶⁰⁻⁶¹⁾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⁶²⁻⁶³⁾ , 오마이뉴스 ⁽⁶⁴⁻⁶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⁶⁶⁻⁶⁷⁾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⁶⁸⁻⁶⁹⁾ , 온라인 중앙일보 ⁽⁷⁰⁻⁷¹⁾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⁷²⁻⁷³⁾ , 인터넷 기자협회보 ⁽⁷⁴⁻⁷⁵⁾
중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연합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뉴스1 코리아 : 『MBC 노조 김○○ 사장 상대 손해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디지털 세상신문 : 『MBC 노조, 김○○ 사장 등 상대로 손해소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 스타뉴스 : 『MBC 노조 "사측 해킹프로그램 유포"..7 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p>중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스 : 『MBC노조, 김○○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노컷뉴스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MBC노조, ‘해킹 피해’로 사측에 손배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오마이뉴스 : 『회사가 조직원 해킹?...MBC 노조원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손해배상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천만 원 손배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MBC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7000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MBC 노조, ‘○○○○’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악성 해킹프로그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결과</p>	<p>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시스 :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포토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연합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뉴스 코리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디지털 세상신문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스타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방송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미디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미디어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노컷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오마이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인터넷 미디어오늘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치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온라인 중앙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미디어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인터넷 기자협회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기자협회보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이 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시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연합뉴스 : 『〈MBC 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뉴스1 코리아 : 『〈MBC 노조, 김○○ 사장 상대 손해 청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디지털 세정신문 : 『〈MBC 노조, 김○○ 사장 등 상대로 손해소 제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 스타뉴스 : 『〈MBC노조 “사측 해킹프로그램 유포”..7천만 원 손해소’ 기사관련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 미디어스 : 『〈MBC노조, 김○○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 노컷뉴스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MBC 노조, ‘해킹 피해’로 사측에 손해소송 제기〉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문] ‘회사가 조직원 해킹?...MBC 노조원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손해배상 제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MBC 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MBC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7000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MBC 노조, ‘○○○○’ 손해배상 소송 제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2013서울중재76~77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네이버
중 재 대 상	<p>(1)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3일자)</p> <p>(2) 『○○ 스님, ‘불자가 술·담배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려 들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p> <p>(3) 『○○사 부주지 등 살인혐의로 고발한 ○○ 스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p>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찰 소속 부주지와 승려들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p>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p> <p>※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뉴스시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게시함</p>
이 행 결 과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p>2013서울중재78~81</p>	<p>(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對 네이트, 다음</p>
<p>중 재 대 상</p>	<p>『“벽보고 움직이지 마”...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p>
<p>신청인주장</p>	<p>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각 중재결정 (내용 : 기사삭제)</p>
<p>2013서울중재82~88, 93~94</p>	<p>(매체별 추후청구) 최○○ 對 인터넷 경향신문⁽⁸²⁾, MK뉴스⁽⁸³⁾, e머니투데이⁽⁸⁴⁾, 인터넷 문화일보⁽⁸⁵⁾, 환경닷컴⁽⁸⁶⁾, 인터넷 YTN⁽⁸⁷⁾, 인터넷 MBN⁽⁸⁸⁾, YTN⁽⁸³⁾, 연합뉴스TV(뉴스Y)⁽⁸⁴⁾</p>
<p>중 재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국내산 고급 홍삼 알고봤더니... 중국산 수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MK뉴스 : 『중국산 수삼을 홍삼으로 속여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e머니투데이 :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中 수삼을 ‘국산홍삼’ 둔갑 제조·유통시킨 60대 델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환경닷컴 : 『중국산 수삼, 국산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인터넷 YTN : 『중국 인삼 ‘고려 홍삼’ 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중국산 인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자 05:57) • 연합뉴스TV(뉴스Y) : 뉴스 프로그램 『가짜 홍삼 1억 원 어치 판매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자 09:00)
<p>신청인주장</p>	<p>신청인이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표시하여 판매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p>
<p>처 리 결 과</p>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MK뉴스·e머니투데이·인터넷 문화일보·환경닷컴·인터넷 MBN: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인터넷 YTN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추후 보도문을 게시함
<p>이 행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경향신문 : 『‘국내산 고급 홍삼, 중국산 수삼’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 MK뉴스 : 『‘중국산 수삼, 홍삼으로 속여 판매’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 e머니투데이 :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둔갑 제조 유통’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환경닷컴 : 『‘중국산 수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YTN :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 인터넷 MBN : 『‘중국산 인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중국인삼 고려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5일자 05:57) • 연합뉴스TV(뉴스Y) : 뉴스 프로그램 『‘가짜 홍삼 판매 일당 검거’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5일자 09:00)

2013서울중재89~92		(매체별 정정청구) ○○○어린이집연합회 ○○○위원회 對 네이버 ⁽⁸⁹⁾ , 다음 ⁽⁹⁰⁾ , 줌 ⁽⁹¹⁾ , 네이트 ⁽⁹²⁾
중재대상	(1) 『살생부 오른 어린이집 교사 “살려달라”』 제하의 기사 (네이버·다음·줌·네이트 2013년 5월 9일자) (2) 『어린이집, 집단행동 거두고 투명 운영 나서야』 제하의 기사 (네이버·다음·줌·네이트 2013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에 협조한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줌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난에도 게시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도 게재함 	
이행결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2013서울중재95~98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네이버 ⁽⁹⁵⁾ , 다음 ⁽⁹⁶⁾ , 네이트 ⁽⁹⁷⁾ , 줌 ⁽⁹⁸⁾
중재대상	(1) 『○○ 브랜드택시사업, 장비하자 논란에 출발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3일자) (2) 『브랜드택시사업, 악취 진동』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택시 브랜드택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제안요청서와 달리 저가품을 고가에 납품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기사삭제)	
2013서울중재99~10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네이버 ⁽⁹⁹⁻¹⁰⁰⁾ , 다음 ⁽¹⁰¹⁻¹⁰²⁾ , 네이트 ⁽¹⁰³⁻¹⁰⁴⁾ , 줌 ⁽¹⁰⁵⁻¹⁰⁶⁾
중재대상	『자격증 ‘우후죽순’... 돈벌이 전락!』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경영 중인 업체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기사수정)</p> <p>※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YTN)가 신청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 및 수강생의 영상·음성 부분이 삭제된 기사를 전송하면 3일 이내에 이를 게시함</p>	

2013서울중재107~11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문○○ 외 44인 對 네이버 ⁽¹⁰⁷⁻¹⁰⁸⁾ , 다음 ⁽¹⁰⁹⁻¹¹⁰⁾ , 네이트 ⁽¹¹¹⁻¹¹²⁾	
중재대상	『○○○구역 찬성파 “주민투표 실시하라”... 시청 점거농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지역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의 점거농성을 보도하면서 빌라 사업자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빌라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e머니투데이)로부터 정정 및 반론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e머니투데이)로부터 정정 및 반론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e머니투데이)로부터 정정 및 반론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도 게재하도록 함
이행결과	『○○○구역 재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중재113~114, 118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뉴스엔 ⁽⁸³⁵⁾ , 동아닷컴 ⁽⁸³⁶⁾ , 네이버 ⁽⁸⁷⁸⁾	
중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엔 : 『나꼼수, 강○○ 신○○ 검찰소환 예상 “정치비리 은폐카드”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 동아닷컴·네이버 : 『은○○ 前 PD ‘식칼 테러’ 50대는 조폭 두목』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엔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아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엔 : 『뉴스엔은 지난해 7월 25일자 ‘나꼼수, 강○○·신○○ 검찰소환 예상 “정치비리 은폐카드” 주장’ 제하의 기사에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동아닷컴·네이버 :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서울중재115, 119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오마이뉴스, 네이버	
중재대상	『‘검찰소환설’ 신○○, 음모론 피해자가 되선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마이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행결과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중재116, 120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네이버	
중재대상	『강○○에 엄청난 시련 닥치나... 나꼼수 주장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포츠한국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행결과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중재117, 121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중재대상	『‘은○○ 전 PD 불법대출’ 연예계 뒤흔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p>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한국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행결과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중재122	(기사별 추후청구) 은○○ 對 네이버
중재대상	(1) 『○○ 최대 저축은행이 거덜난 까닭』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일자) (2) 『저축은행 수사, 핵심은 다 빠졌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저축은행 수사, 핵심은 다 빠졌네)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 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행결과	『은○○ 전PD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2013서울중재123~18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채○○ 對 서울신문 Boom(봄) ⁽¹²³⁻¹²⁴⁾ , 스포츠서울닷컴 ⁽¹²⁵⁻¹²⁶⁾ , 티브이데일리 ⁽¹²⁷⁻¹²⁸⁾ , 온라인 중앙일보 ⁽¹²⁹⁻¹³⁰⁾ , 오마이뉴스 ⁽¹³¹⁻¹³²⁾ , 엑스포츠뉴스 ⁽¹³³⁻¹³⁴⁾ , 뉴스핌 ⁽¹³⁵⁻¹³⁶⁾ , 인터넷 SBS CNBC ⁽¹³⁷⁻¹³⁸⁾ , Gvalley ⁽¹³⁹⁻¹⁴⁰⁾ , 아시아경제닷컴 ⁽¹⁴¹⁻¹⁴²⁾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¹⁴³⁻¹⁴⁴⁾ , 폴리뉴스 ⁽¹⁴⁵⁻¹⁴⁶⁾ , 인터넷 MBN ⁽¹⁴⁷⁻¹⁴⁸⁾ , 인터넷 엠티엔(MTN) ⁽¹⁴⁹⁻¹⁵⁰⁾ , 컨슈머타임스 ⁽¹⁵¹⁻¹⁵²⁾ , 민중의소리 ⁽¹⁵³⁻¹⁵⁴⁾ , MK뉴스 ⁽¹⁵⁵⁻¹⁵⁶⁾ , 조선비즈닷컴 ⁽¹⁵⁷⁻¹⁵⁸⁾ , TV리포트 ⁽¹⁵⁹⁻¹⁶⁰⁾ , 인터넷 365 ⁽¹⁶¹⁻¹⁶²⁾ , SSTV ⁽¹⁶³⁻¹⁶⁴⁾ , etv ⁽¹⁶⁵⁻¹⁶⁶⁾ , 인터넷 스포츠한국 ⁽¹⁶⁷⁻¹⁶⁸⁾ , 인터넷 한국일보 ⁽¹⁶⁹⁻¹⁷⁰⁾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¹⁷¹⁻¹⁷²⁾ , 인터넷 스포츠동아 ⁽¹⁷³⁻¹⁷⁴⁾ , 세계닷컴 ⁽¹⁷⁵⁻¹⁷⁶⁾ , wow한국경제TV ⁽¹⁷⁷⁻¹⁷⁸⁾ , 이투데이 ⁽¹⁷⁹⁻¹⁸⁰⁾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⁸¹⁻¹⁸²⁾
-----------------	---

중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Boom(봄) : 『어린이집 짐칸, SUV 트렁크 짐칸에서 아이들 우르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어린이집 짐칸에 보호 장구 없이 아이들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티브이데일리 : 『어린이집, 짐칸에 아이들 탑승시켜 귀가?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SUV 트렁크 열자 짐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오마이뉴스 : 『차 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소풍?... 누리꾼들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엑스포츠뉴스 : 『어린이집, 짐칸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뉴스핌 : 『어린이집 짐칸, 트렁크 열자 아이들이 옹기종기... 보호장비도 없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SBS CNBC : 『어린이집 짐칸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Gvalley : 『어린이집 짐칸 실어 ‘분통’... “어린이집이야? 지옥의집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사회] 어린이집 짐칸 파문... 원장 해명에도 네티즌 비난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어린이집 짐칸에 아이들 탑승? “안전장비 하나 없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폴리뉴스 : 『SUV 짐칸 어린이집 아이들, ‘우르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MBN : 『어린이집 짐칸 파문, 네티즌 비난 폭발! 원장 해명 들어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아이들을 SUV 트렁크에? ‘안전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컨슈머타임스 : 『어린이집 짐칸, SUV 트렁크에 ‘우르르’...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민중의소리 : 『어린이집 짐칸, 어이 없는 장면에 ‘당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

<p>중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K뉴스 : 『어린이집 집단 논란, 해당원장 “안전 장치 설치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조선비즈닷컴 : 『어린이집 집단 논란 “해당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TV리포트 : 『어린이집 집단 논란에 원장 해명 “충격흡수 좌석 2개 설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뷰365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소풍? ‘비난 폭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SSTV : 『어린이집 집단 논란, “뒷좌석 개조했다” 해명에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etv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원장 “안전 장치 설치 했다” 해명』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어린이집 집단 파문,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네티즌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선생님은 좌석에 앉고 아이들은 짐칸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어린이집 집단, 아이들을 짐짝같이... ‘누리꾼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세계닷컴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우리 아이가 짐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wow한국경제TV : 『어린이집 집단 파문,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이투데이 : 『어린이집 집단 파문, “아이들은 트렁크에 짐짝처럼... 선생님은 좌석에” 공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어린이집 집단 파문, 트렁크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p>신청인주장</p>	<p>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Boom(붐) · 스포츠서울닷컴 · 온라인 중앙일보 · 엑스포츠뉴스 · 뉴스핌 · 인터넷 SBS CNBC · 폴리뉴스 · 인터넷 MBN · 인터넷 엠티엔(MTN) · 민중의소리 · SSTV · 인터넷 한국일보 · 이투데이 :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티브이데일리 · 오마이뉴스 · Gvalley · 아시아경제닷컴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컨슈머타임스 · 조선비즈닷컴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세계닷컴 · wow한국경제TV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MK뉴스 · TV리포트 · 인터뷰365 · etv :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Boom(붐)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스포츠서울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티브이데일리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문화/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온라인 중앙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오마이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엑스포츠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전체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p>처 리 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핍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에 게시함 • 인터넷 SBS CNBC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속보란에 게시함 • Gvalley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G뉴스 종합섹션에 게시함 • 아시아경제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 섹션에 게시함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게시함 • 폴리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문화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MBN :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인터넷 엠티엔(MTN)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센터 사회섹션에 게시함 • 컨슈머타임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게시함 • 민중의소리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섹션 게시함 • MK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섹션 게시함 • 조선비즈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TV리포트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종합 섹션에 게시함 • 인터뷰365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게시함 • SSTV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전체기사 섹션에 게시함 • etv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사회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스포츠한국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라이프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한국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이슈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스포츠동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이슈 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세계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게시함 • wow한국경제TV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한국경제TV 와우스타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게시함 • 이투데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홈에 게시함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사회 섹션에 게시함
----------------	--

이 행 결 과

- **서울신문 Boom(붐)**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4일자)
- **스포츠타일즈** : 『‘어린이집 집간에 보호 장구 없이 아이들이?! ‘충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티브이데일리**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탑승시켜 귀가?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 SUV 트렁크 열자 집간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 **오마이뉴스** : 『‘차 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소풍’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엑스포츠타일즈**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 **뉴스핌**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 **인터넷 SBS CNBC** : 『(정정보도)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Gvalley** : 『[정정보도문] 어린이집 집간 실어 ‘분통’.. “어린이집이야? 지옥의집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탑승? “안전장비 하나 없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 **폴리뉴스**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어린이집 차량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컨슈머타임스**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 **민중의소리** : 『“어린이집 집간, 어이없는 장면에 ‘당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MK뉴스** : 『‘어린이집 집간 논란, 해당원장 “안전장치 설치했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조선비즈닷컴**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TV리포트**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인터넷365**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SSTV**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etv**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어린이집 집간 논란, 알고보니…’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어린이집 집간, 아이들을 짐짝같이… ‘누리꾼 충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세계닷컴** : 『‘어린이집 집간 논란… “우리 아이가 짐짝?”』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wow한국경제TV**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이투데이**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2013서울중재183~186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변○○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쿠키뉴스	
중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법원 “이정희 중복 발언 변○○, 이정희 대표에 1500만원 배상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쿠키뉴스 : 『‘변○○ 대표 어떡해’ 진○○·김○○ 등 줄소송 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중복 주사파로 단정지어 표현한 것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쿠키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이정희 중복 발언 변○○, 1500만원 배상 판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 쿠키뉴스 : 『‘변○○ 대표 어떡해’ 진○○ 등 줄소송 예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013서울중재187~188 (정정·반론청구) 함○○ 외 7인 對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중재대상	『교회를 빼앗으려는 노회 기사분류: 교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교회에서 제명출교 처리를 당한 신청인들이 모 목사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이들이 제기한 목사 면직청원 접수에 적법성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홈페이지 ‘교계’ 코너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행결과	『“교회를 빼앗으려는 노회”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2013서울중재189~190 (정정·반론청구) 재단법인 ○○시청소년수련관 對 구리남양주넷	
중재대상	『○○시청소년수련관, 중증장애인에 “XX욕갑하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인이 주차문제로 항의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련관의 장애인 휴대가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상단에 박스기사 형태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행결과	『“○○시청소년수련관, 중증장애인에 막말’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6일자)

